

제4회 2018 사회적경제 활동가대회

제4회 2018 사회적경제 활동가대회

“연대로 여는 길, 함께 일어서다!”

■ 개요

- 일 시 : 2018년 11월 2일(금) 13:30분 ~ 3일(토) 11:00
- 장 소 : 신협 연수원
- 대 상 : 전국 사회적경제 활동가
- 주 최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 주 관 : 실행위원회
- 실행위원회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신협중앙회,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한살림연합, 한국협동조합연구소
- 후 원 : 신협중앙회,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활성화전국네트워크,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한살림연합,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두레생협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한국대학생활협동조합연합회,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

■ 목적

- ‘논의’에서 ‘행동’으로, ‘고민’에서 ‘결정’으로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이 활발히 전개되고, 지방정부의 약진이 기대되는 2019년이 코앞에 다가옵니다. 자생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정책에 의해 육성/촉진되어온 우리의 현재. 내생적이고 장기적이며 지역사회에 기반한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전략은 우리 안에서 있으며 우리를 통해 실현됩니다. 우리는 만나고, 이제는 하나씩 공동행동을 만들어갈 때 입니다. 연대경제로서의 공동행동 없는 사회적경제란 그 무엇도 아닙니다.

이번 활동가대회는 다양한 의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의 의제에 집중하면서 그러한 의지를 내어놓는 자리가 되도록 기획되었습니다. ‘돈’이 중요해서라기보다 ‘자본연대전략’의 기초를 쌓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의 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로 집중합니다.

또한 이번 활동가대회에 130여개의 거점신협 중 50여 곳이 참여합니다. 신협은 전국의 사회적경제 기업 및 협의회와의 자본연대를 위한 첫걸음으로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관계형성을 위해 ‘사회적경제 거점신협’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사회적경제의 금융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공동유대를 만들어가는 의기투합과 상견례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반가운 얼굴로 인사 나누고, 네트워크 시간에 찼한 이야기 나누시길 바랍니다.

■ 프로그램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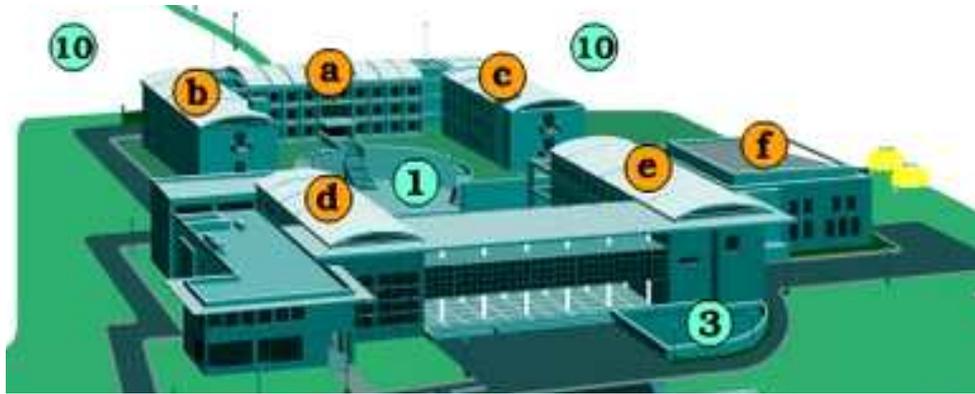
- [SE TED] 생협, 신협,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시민사회 각 부문이 무엇을 위해, 어떤 목적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 내었고, 연대에 기초한 비전은 무엇인지 5분 TED 방식으로 발표됩니다.
- [주제발표] 현장 수요에 기반한 자금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조성 형태와 방법에 대해 제언됩니다.
- [발제] 다양한 자금해결 경험 사례를 통해 우리의 '자금'조성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 [네트워킹] 신협 사회적경제 거점신협과의 만남과 유쾌한 어울림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분임토의] 분임토의를 통해 2019년 우리가 실천할 전략과제가 무엇인지 도출될 것입니다.
- [현장보고서] 2018 사회적경제 중간점검 보고서의 내용이 공개됩니다.
- [우리의선언] 내가 느끼는 사회적경제의 의미를 모아 우리를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 1일차 - 11월 2일(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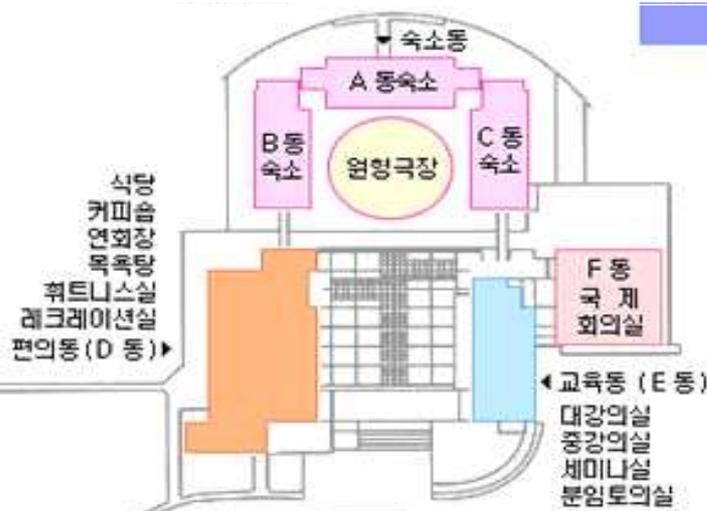
시간	내용	장소
13:30~14:00	○ 참가자 접수	
1부		
14:00~14:20	○ 개회식	
14:20~14: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 TED] 사회적경제의 지향과 실천 전략의 성과와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 변형석 상임대표 ■ 한국YMCA전국연맹 - 류홍번 정책기획실장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안승용 사회적경제추진반장 	㉔동 국제회의실 (메인행사장)
2부		
14:40~15: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발표] 우리에게 필요한 '자금'은 무엇이며, 어떻게 모을 것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보경 상임이사(사회투자지원재단 상임이사/연대회의 금융TF) 	
15:10~1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제] 사회적경제 안의 자금수요 해결 경험 사례 공유 및 새로운 시도들 성과와 과제 그리고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주민의 든든한 생활안전망 / 유유미 사무국장 (전국주민협동연합회) ■ 기관 및 사업소개 / 김선영 팀장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공제사업단] ■ 설립 및 운영계획 / 김영식 간사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발기인회) ■ 상호부조형 공유기금 공동조성 계획 / 신재민 기획전략실장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사회적금융 추진 계획 및 거점신협의 역할 / 정복수 차장 (신용협동조합중앙회) 	㉔동 국제회의실 (메인행사장)
16:30~17:00	○ 휴식 및 분임토의장 이동	
17:00~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임토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자금들이 어떻게 쓰여야 할까?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모으고, 또 무엇에 쓸 것인가? 	㉔동 교육동 (분임토의실)
3부		
18:00~19:00	○ 저녁식사	
19:00~2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트워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 거점 신협과 지역의 만남 ■ 활동가 교류 프로그램 	㉔동 연회장 (저녁식사, 네트워킹)

○ 2일차 - 11월 3일(토)

시간	내용	장소
8:00~9:30	○ 아침식사	㉑동 : 식당
4부		
9:30~10:30	○ [분임토의 발표] 2019년 실천 과제	㉒동 국제회의실 (메인행사장)
10:30~10:50	○ [현장보고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중간점검, 현장이 말한다 ■ 안인숙(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	
10:50~11:20	○ [우리의 선언] 나에게 사회적경제란? ■ 하재찬(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지역위원장)	
11:20	○ 폐회	



행사장 조감도 (㉑동 : 식당,연회장 / ㉒동 : 분임토의실 / ㉓동 : 국제회의실)



행사장 평면도 (㉑동 : 식당,연회장 / ㉒동 : 분임토의실 / ㉓동 : 국제회의실)



㉑동 : 연회장(저녁, 네트워킹)



㉒동 : 교육동(분임토의실)



㉓동 : 국제회의실(메인행사장)

차 례

□ 축 사

■ 주제발표 : 사회적경제의 자본연대 활성화를 위한 제언

- 문보경 상임이사 [사회투자지원재단]

□ 발 제 : 사회적경제 안의 자금수요 해결 경험 사례 공유 및 새로운 시도들 성과와 과제 그리고 전망

- 저소득주민의 든든한 생활안전망 / 유유미 사무국장 [전국주민협동연합회]
- 기관 및 사업소개 / 김선영 팀장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공제사업단]
- 설립 및 운영계획 / 김영식 간사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발기인회]
- 상호부조형 공유기금 공동조성 계획 / 신재민 기획전략실장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사회적금융 추진 계획 및 거점신협의 역할 / 정복수 차장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현장보고서 :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중간점검, 현장이 말한다

- 안인숙 집행위원장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 부록

- 2018 사회적경제 보고서 [대구 사회적경제 박람회 추진위원회]
- 2018 사회적경제 활동가 인재상 정립을 위한 설문조사

축사

한국사회 희망을 밝히는 사회적경제가 되길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임종한

교착상태에 이른 북미회담, 고용 불안과 소득 격차 확대 등 우리사회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기에, 제 4회 사회적경제활동가대회를 엽니다.

바쁘신 중에도 사회적경제활동가대회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대회 준비를 맡아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경제활동가대회는 ‘사회적경제 활동가의 정체성 확인 및 결속력의 강화’, ‘사회적경제영역의 현안과 이슈에 대한 공유와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2년마다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회적경제활동가대회가 연대로 가는 길,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계소득 쇼크’가 또 덮였습니다. 고소득층은 사상 최초로 두 자릿수 소득증가율을 보인 반면 저소득층은 두 분기 연속 소득이 급감했습니다. 소득 양극화는 한층 심해졌습니다. 올해 2분기 소득분배 지표는 10년 만에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영똥하게 소득주도성장의 과실이 고소득층에게만 집중되면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지고 있습니다.

대안이 되는 정책의 준비가 잘 되어있지 않고, 한반도 평화 정착도 녹록하지 않은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분야도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 야당의 비현조로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차원에서 사회적금융 역할을 수행해줄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한국사회가 10년동안이나 갈길을 찾지 못해 헤메이다가, 새정부가 들어섰다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긴 어렵습니다. 물론 과거 정권의 탓만 할 순없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가장 짙어진 후 비로소 새벽이 온다고 합니다. 한국사회에서의 희망을 굳건히 해야 할 때입니다. 남북관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당면과제입니다. 신뢰와 상생 가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이전 시대로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평화, 협동과 연대는 이제 새 시대의 아이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 북미관계를 평화의 시대로 과감히 나아가게 하고, 경제도 혁신의 동력을 마련하고 성장의 과실을 과감히 나누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할 때입니다. 새로운 질서가 자리잡기 까지 그만큼 진통이 큰 것입니다. 혁신의 에너지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회적경제가 시민들의 에너지를 모아 우리사회의 새 발전소가 되게 힘을 모아 주셨으면 합니다. 상생의 길을 찾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사회적경제가 어떻게 든 그 길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번 사회적경제활동가대회를 통해 사회적경제의 새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진솔한 소통시간을 통해 한국사회에 새 희망을 전하는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주보고 활짝 웃자!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공동대표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장 박준홍

2018 사회적경제 활동가대회에 참석하신 지역과 부문의 모든 분들께 환영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함께 연대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소중한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활은 사회적경제의 말형으로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공동대표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대표 송병주

안녕하십니까? 사회적 경제 활동가 대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노고를 위로하고, 성과를 공유하며, 과제를 토의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적 경제는 한 걸음 더 진전하리라 기대합니다.

지금 한국사회는 저성장, 실업난, 빈부격차, 지방소멸 위험 등 다양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해결할 방안으로 사회적 경제가 모색되고 실천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동안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 등 사회적 경제 조직은 지역을 기반으로 공동체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 활동을 하면서 우리 사회와 지역문제 해결을 해왔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우리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사는 가운데 저 성장과 양극화라는 암초를 만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사회와 지역공동체에 새로운 변화가 일길 기대해 봅니다.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건강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 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공동대표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임대표 변형석

오랜 사회적경제 진영의 노력이 바야흐로 한국에서도 사회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의 부속물 정도로나 여겨져왔던 이 오래되었으면서도 새로운 경제 모델은, 주류 경제학과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발생시켰던 수차례 자본주의의 위기를 오히려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세계적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기도 합니다. 사회적경제는 사실 오래전부터 파국적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적 경제모델을 구성해오고 있었습니다.

대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사회적경제가 사회의 극히 일부 제한된 틈새가 아닌 인류적/지구적 삶의 혁신적 대안으로 발전하기를 함께 기원하고 노력하는 분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사람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지구 환경의 훼손과 파괴를 막아내기 위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며 지구의 모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저개발 국가의 극심한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성평등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평등을 위해, 인류의 문명과 문화와 예술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또 우리 스스로 돕고 연대하며 실천하는 건강한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우리 각자가 이 모든 것을 해낼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는 같은 방향으로 노력해 왔음도 분명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그 어떤 공동의 정치적 강령도 없이, 그러나 모두 같은 방향으로 사회를 바꾸기 위해 노력해온 사회적경제 활동가들 중의 일부가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를 일부라 표현한 것은, 아직 더 많은 활동가들을 함께 초대하지 못한 미안함이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기위해 노력하자는 다짐인 동시에, 진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이름조차 서로 들어본 적 없는 수많은 사람과 조직들이 한국의 사회적경제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는 자부심 때문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는 일부이지만, 이곳에 모인 우리들이 복잡한 사회네트워크의 다차원적 거점이되어 서로를 연결하고, 공유하며, 함께 큰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음 또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회기간 동안 우리 각자의 한 시간이, 백 명, 또 천 명의 한 시간인 것처럼, 치열하게, 행복하게 함께 어울리기를 기대합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뒤늦은 국제사회의 어젠더는 사실 사회적경제에게는 그저 상식적인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사회적경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꿈꾸어왔습니다. 다른 이들은 이제부터 시작하는 모양입니다. 우리는 오래전에 시작했으니, 그 지혜와 경험을 소중히 나누어, 새로운 사회의 비전을 사회적경제의 것에서 우리사회 모두의 것으로 확장시켜갑시다. 이번 활동가대회에서의 교류가 그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열망합니다. 활동가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제발표

사회적경제의 자본연대 활성화를 위한 제언

- 문보경 상임이사 (사회투자지원재단)

사회적경제의 자본연대 활성화를 위한 제언

2018. 11. 2

문보경

(사회투자지원재단 상임이사/사회적경제연대회의 금융 TF)

목 차

하나. 지금은 자본연대의 시대

둘.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공유

셋. 자금에 대한 SE 공동의 욕구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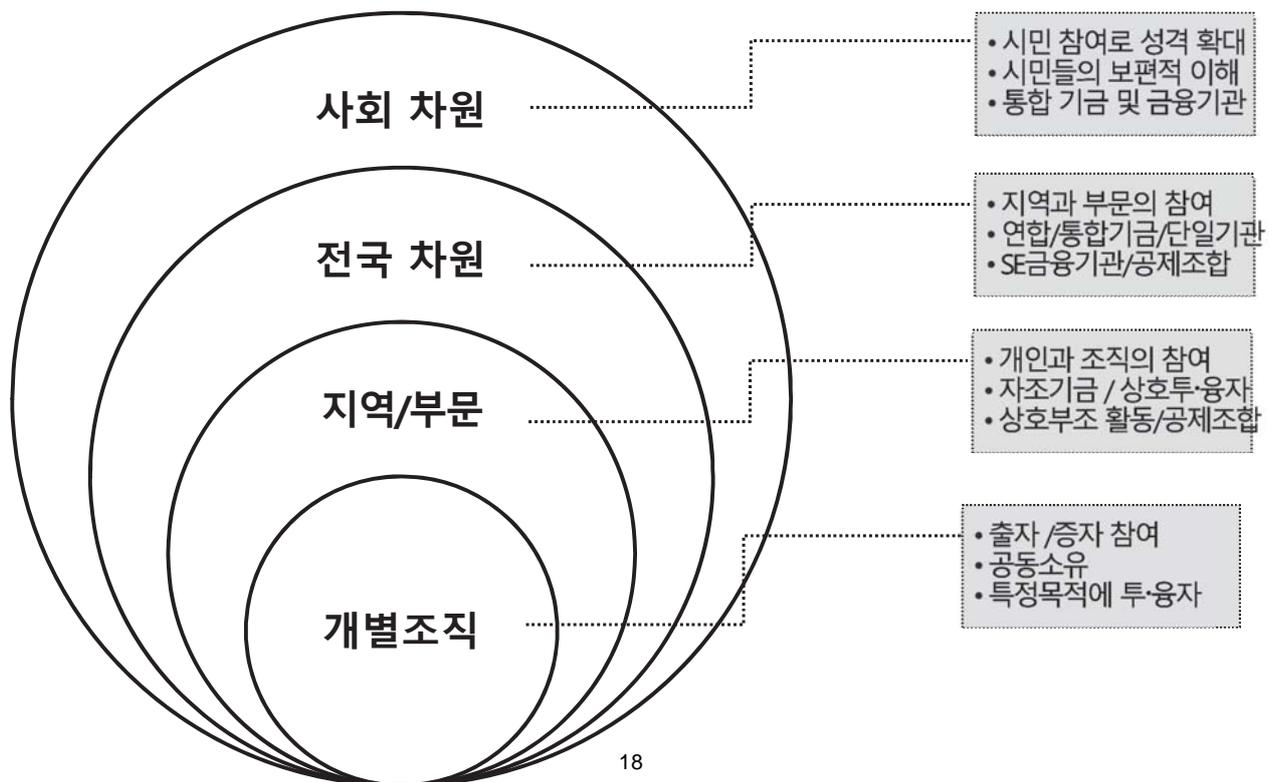
넷. 자본연대 활성화를 위한 실천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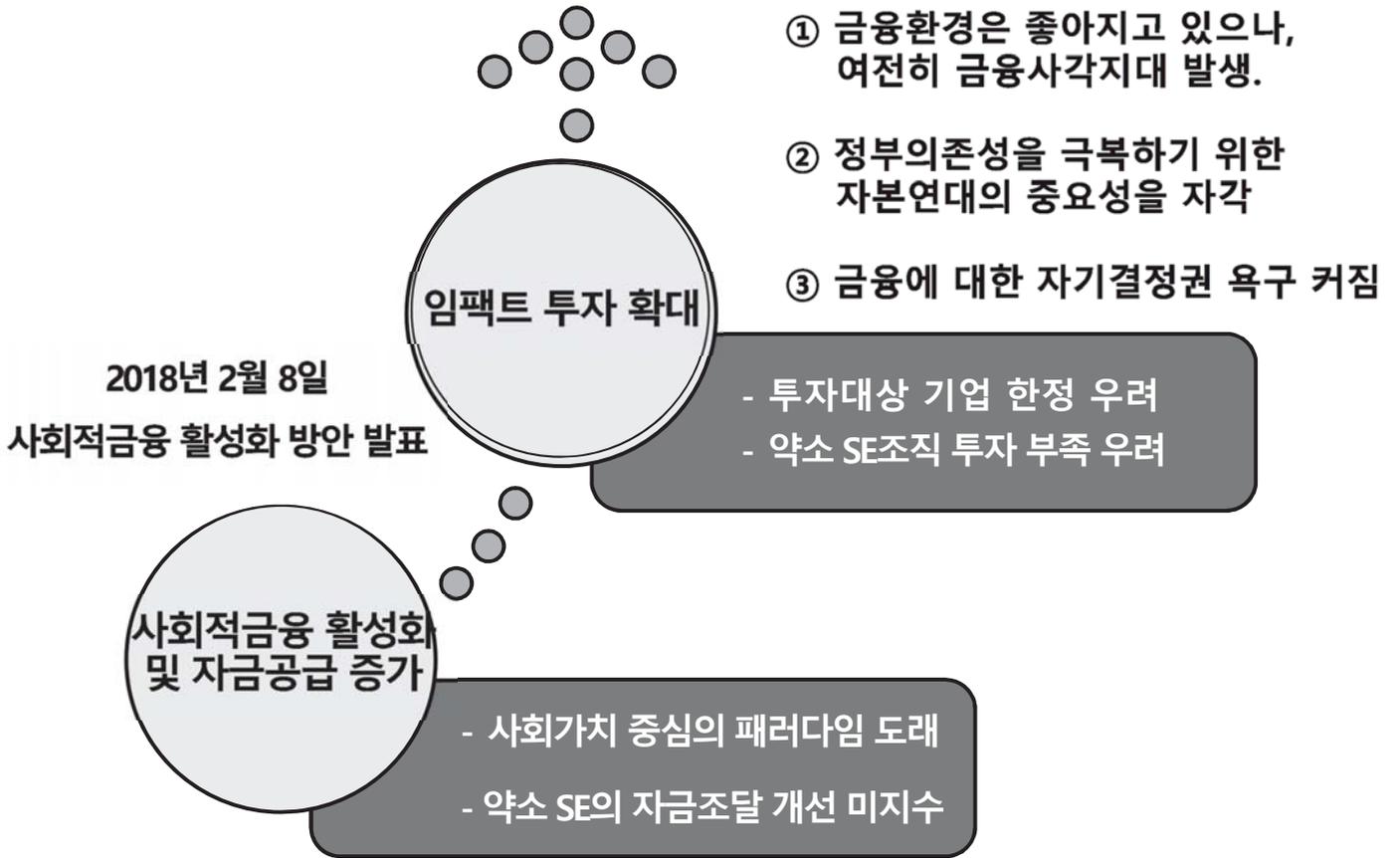
하나 지금부터 자본연대 시대 !!

1. 자본 연대의 정의

자본 연대란 ?

공동의 필요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 및 조직들이 출자·출연을 하는 활동.





3. 자본 연대의 흐름과 주요 현황 *

구분 ¹⁾	현황	총규모 (운용규모)	지원대상	
			법인	개인
1	기업공제기금 •사회혁신기금(한국사회혁신금융) •사회적기업연대공제기금(한기협공제사업단) •서울협동조합협의회 등	60억 (70억 이상)	○	
2	지역기반의 자조기금 •광진구 SE 협동기금 •노원구 SE 협동기금 •주택기금, 대동계(서울시 마포구) 등	3억 이내 (1억 이상)	○	○
3	자활공제기금 •전국주민협동연합회 소속(40개)	40억 이내 (기업만 6억)	자활 기업 일부	○
4	개인공제기금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청년자조기금 : 청년연대은행 토닥, 키다리은행 등	10억 이내 (5억 이상)		○
5	마을기금 •완주군 등	5억 이내 (파악안됨)		○
6	지역 (공동체)기금 지역재단 : 부천희망재단, 충북지역재단, 풀뿌리희망재단, 성남이로운재단	50억 이내		○

*참고: 이상진(2018) '지역기금 조성을 위한 제언' 지역기금 현황(p15) 재구성

주 1) 사회적경제 기업 및 종사자들을 위해 투자, 용자, 보조금 형태로 자금을 공급하는 기금을 대상으로 함, 사회적협동조합 등 조합원들을 위한 상호부조기금은 제외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공유

(정부의 2.8 활성화 방안)

1. 사회적금융의 정의(Social Finance)

Olaf Weber & Sven Remb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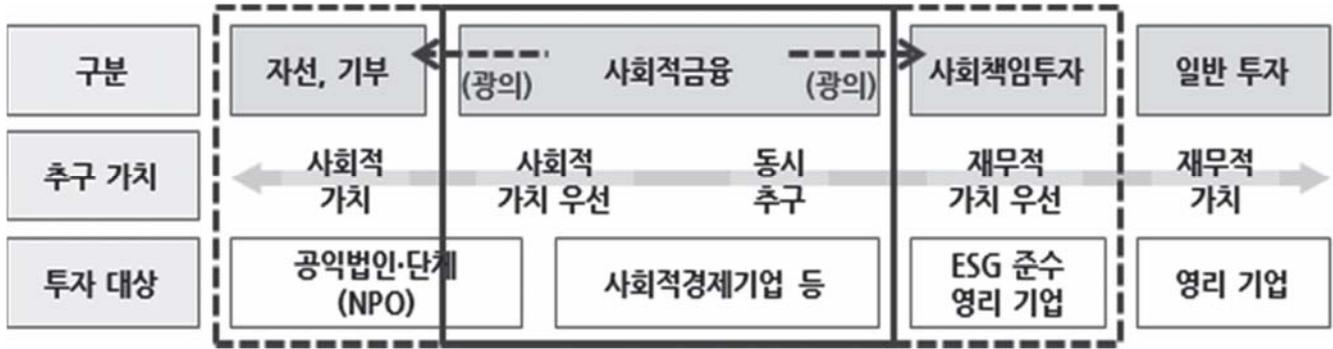
- 예금, 대출, 투자, 기부금을 포함한 기타 금융상품 및 서비스 등의 수단을 통해 사람, 환경, 문화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금융

기획재정부(사회적금융활성화방안)

-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실현을 재무적 이익(Financial Return)과 함께 추구하는 금융

일반금융	사회적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 자본에 기여할 수 있는 대상과 방법을 중시 - 금융 이용 주체의 재무적 신용과 담보능력 중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상과 방법을 중시 - 금융 이용 주체의 사회적 가치를 고려/부족한 재무적 신용을 창출

2. 사회적 금융의 범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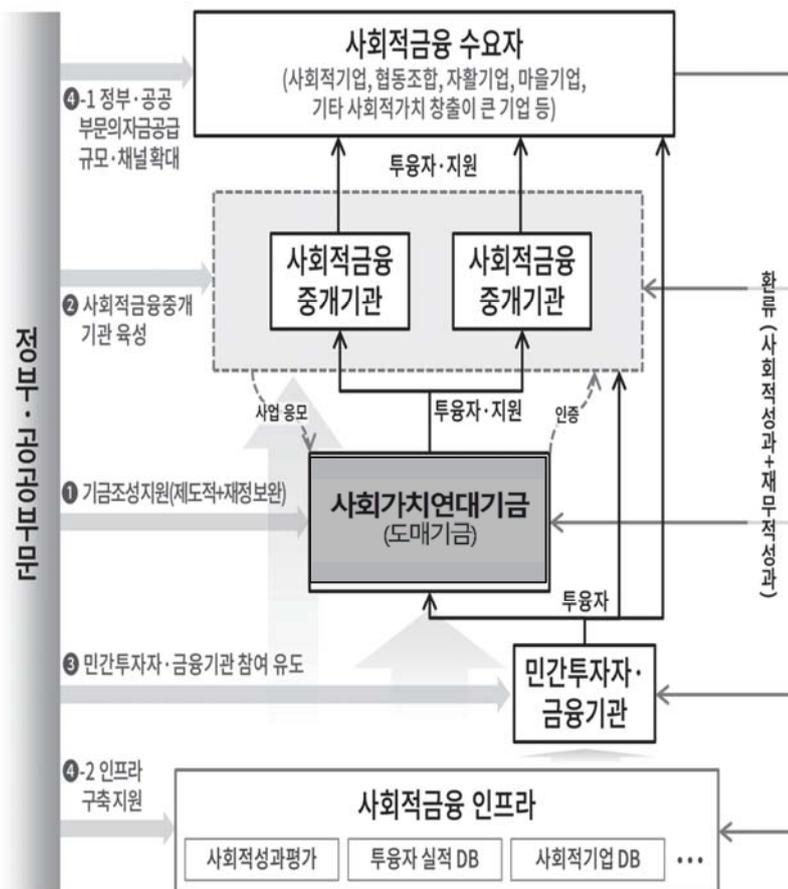


- 협의의 개념: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투자·용자·보증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
- 임팩트투자(Impact Investing)는 상업성에 기반을 두고 투자 방식으로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비교적 발전된 형태
- 광의의 개념: 추후 회수를 전제로 하는 투자·용자·보증뿐 아니라 보조금(Grant)과 자선행위(Philanthropy)도 포함
- 사회적 가치를 넓게 적용하여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우수기업에 투자하는 사회책임투자(SRI)까지 포괄

출처: 2.8 사회적금융활성화 방안, p.3

8

3. 2.8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요지



1. 정부·공공부문을 통해 자금공급규모 및 채널 확대

2. 민간 사회적금융생태계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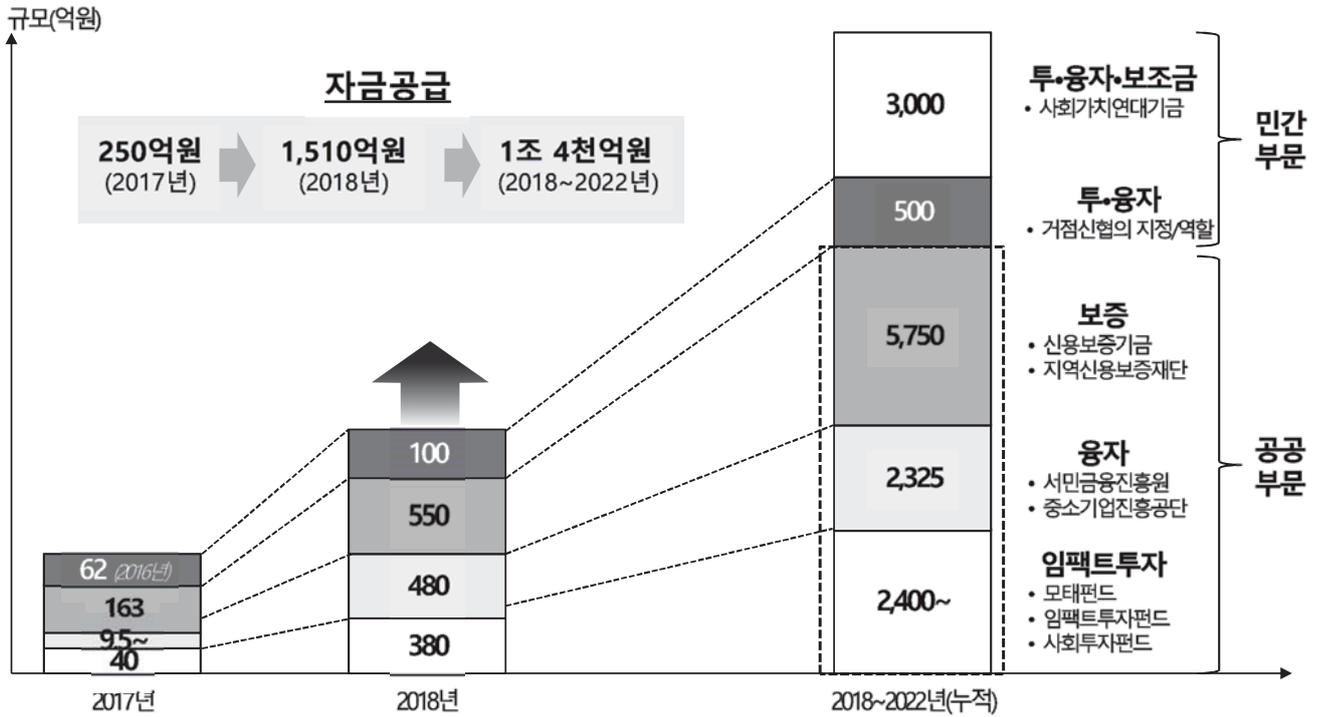
- 민간 주도의 도매기금조성
-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육성

3. 실질적 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

- 정보비대칭성 해소
- 민간투자자, 금융기관 참여 유도

출처)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1828)

정부 및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5년간 3천억원 이상의 도매기금(사회가치연대기금)을 조성합니다.

<사회가치연대기금 추진 동향>

- 1) 2018년 2월 28일 추진단 운영 개시(단장:송경용 신부)
 - 2) 2018년 10월 현재 재단법인 설립 준비 중(출연자 및 설립일자 미정)
 - 3) 재원의 성격 : 민간 기금으로 공적 기금이 협력
 - 4) 주요사업 영역
 - ① 사회적경제조직에 인내자본 공급
 - ② 高 임팩트 사회적목적 프로젝트 투자
 - ③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육성 · 시장기반 구축
- => 연간 600억원 사용

1. 사회적금융 활성화 환경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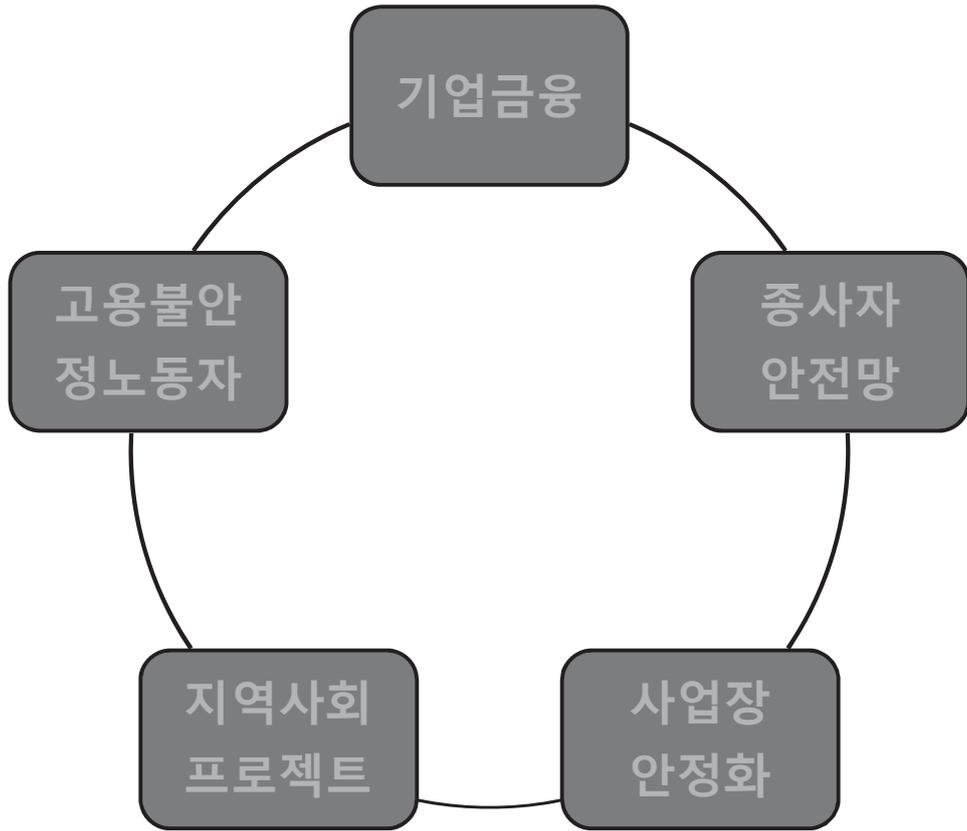
- 지역 차원의 사회적금융 계획 수립을 위한 전제 확보
: 필요성 확인, 금융 수요 파악, 금융 접근성의 문제점 도출 등
- 지역 차원의 사회적금융 계획의 수립
: 주요 목적, 주요 대상, 용도 등의 확립
: 자원 공급 방안, 자원 유통방식(중개기관, 신탁 등)
: 평가와 성과관리 방안 등

지역
SE의
도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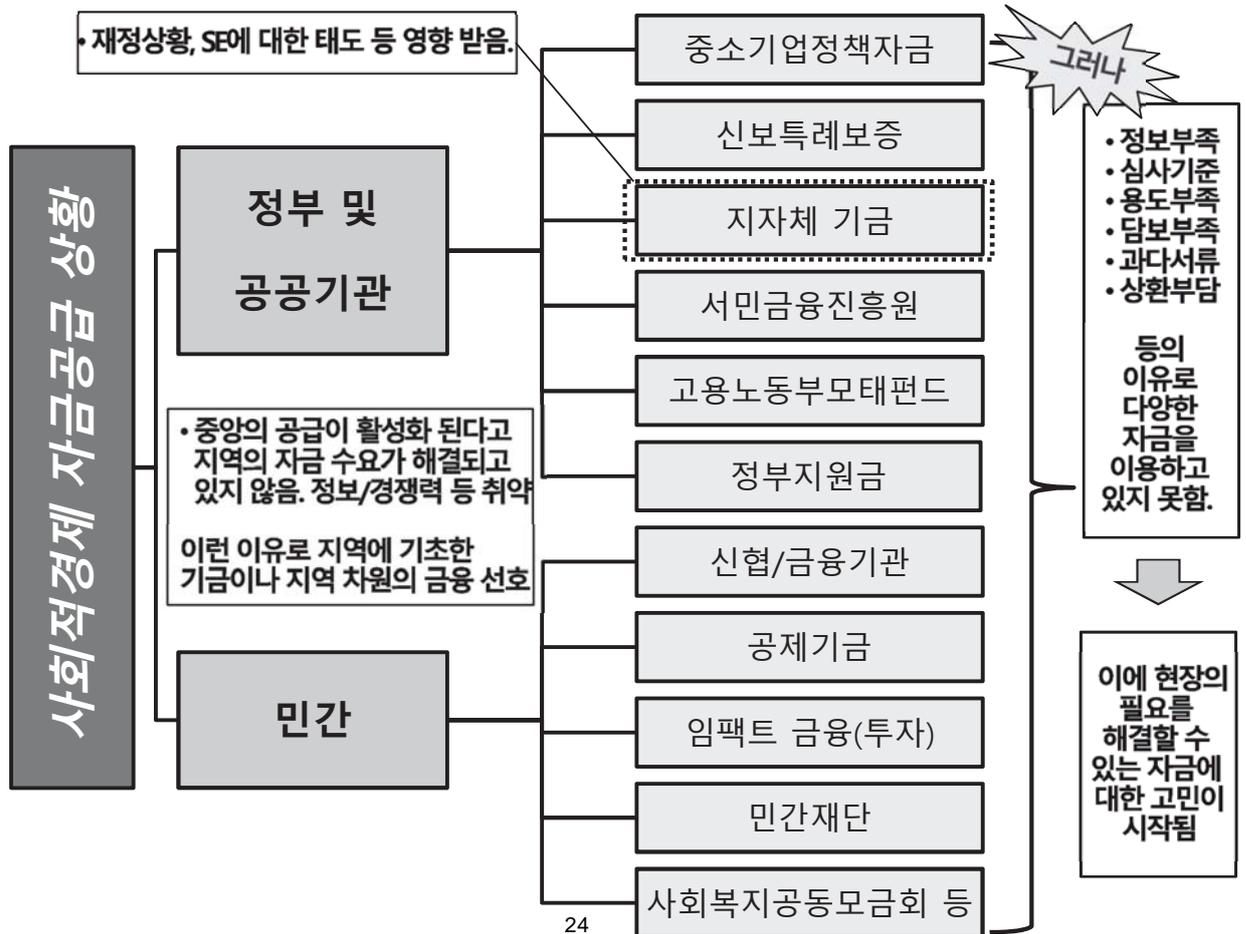
2.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육성

- 지역단위 중개기관 육성 필요성 확인
- 지역단위 중개기관 육성 방안 수립
: 맨땅에 헤딩 vs 기존 사회적금융 중개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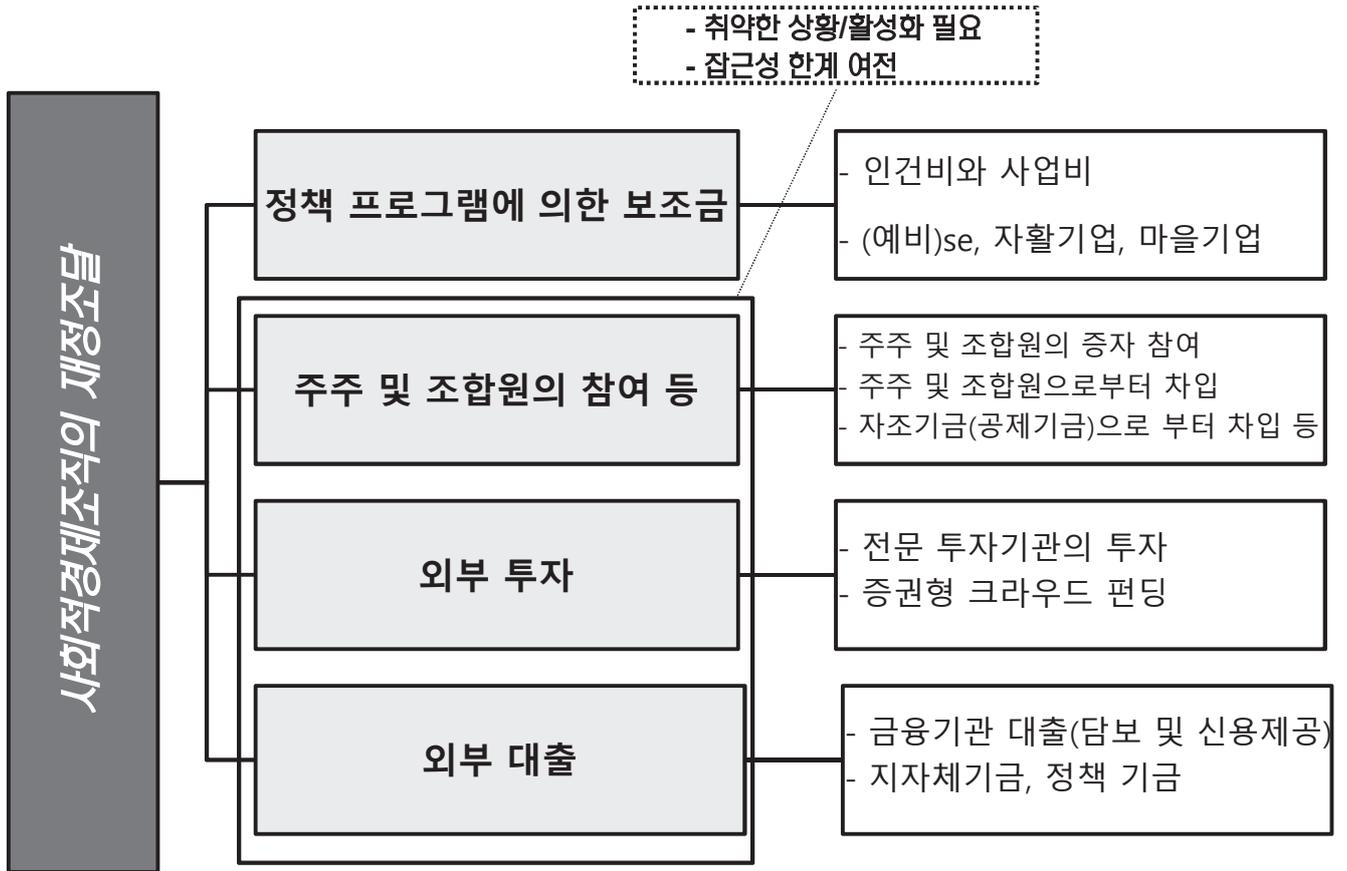
셋.
사회적경제 공동의 필요와 욕구



1. 사회적경제 자금 공급 상황



2. 사회적경제의 재정 조달 현황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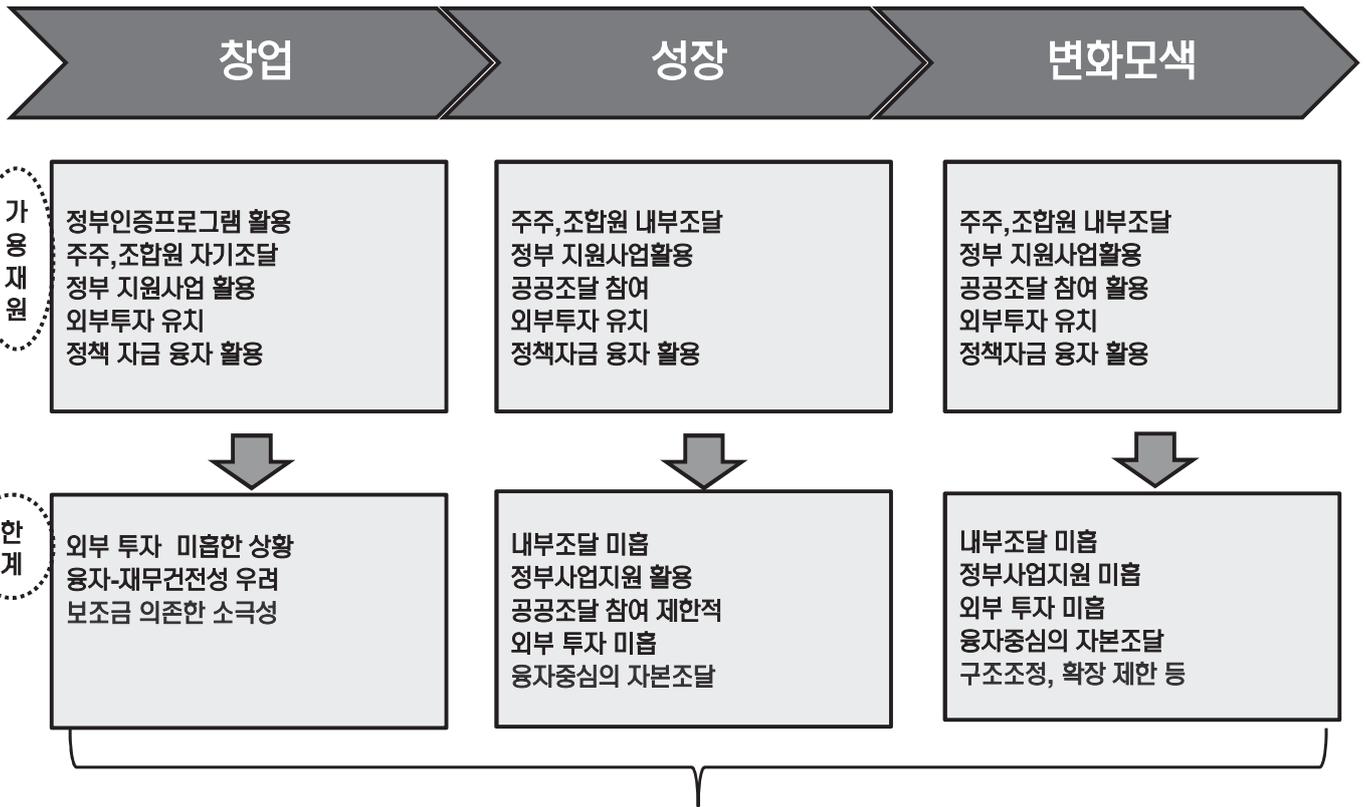


2. 사회적경제의 재정 조달 현황 ②

구분	정부 지원금	정부기금 (용자)	보증특례 (용자)	자활기금	미소금융 (용자)	신협출자 (투자)	투자	연대기금 역활기대	
coop	(예비)se	●	●	●	x	●	●	x	투자확대
	마을기업	●	●	●	x	x	●	x	투자확대
	자활기업	●	●	●	●	x	●	x	투자확대
	coop	x	●	●	x	x	●	x	대출/투자
	s-coop	x	●	●	x	●	●	x	대출/SIB
주식회사	(예비)se	●	●	●	x	●	x	●	투자확대
	마을기업	●	●	●	x	x	x	x	투자확대
	자활기업	●	●	●	●	x	x	x	투자확대
npo	(예비)se	●	▲	x	x	●	x	x	대출/투자
	단체	x	x	x	x	x	x	x	대출/SI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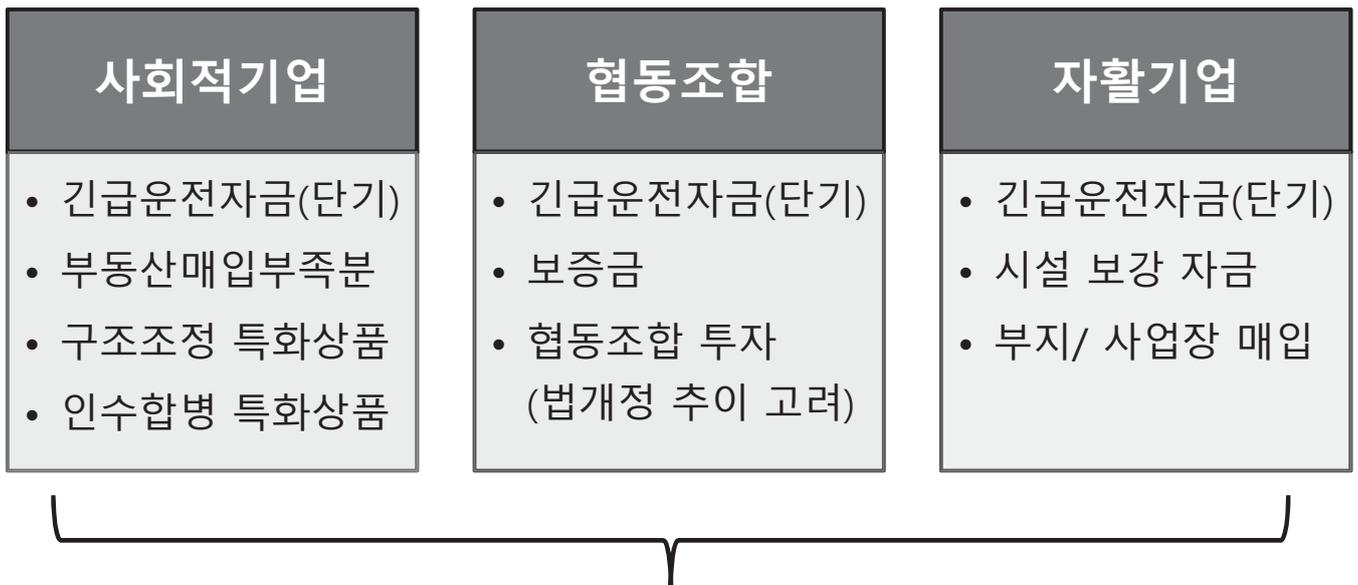
※ (예비)se : 예비사회적기업 / s-coop 사회적협동조합 / SIB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 1) 자활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이 (예비)se 중복지위를 갖고 있는 경우 (예비)se로 함.
- 2) npo 중 단체는 (예비)se가 아닌 사회적경제 활동을 지원하거나 수행하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미간단체, 임의단체 등을 의미. 법인격 없는 네트워크 포함.
- 3) 정부기금 : 중기청, 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기금을 포괄.
- 4) ●과 x를 분류한 기준은 예외적 상황은 배제하고 통례적인 상황을 반영.
- 5) 신탁출자(투자)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개정안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함.
- 6) 가치기금의 투자는 비영리조직의 SIB를 포함하며, SIB는 보조금 또는 지원금을 내포하는 개념이며, 보조금과 SIB로 분리할 수 있음. 보조금을 분리할 경우 보조금이 투입되는 대상은 사회 가치가 높은 기업으로 제한함.
- 7) 정부기금은 중기청과 자치단체 사회적경제기금이 조금 상이함. 대부분 같으나 중기청, 시장진흥공단 등의 지원 대상층을 중기법에 기본을 둔 곳은 npo이면서 SE를 포함하지 않으나 지자체의 사회적경제기금은 대부분 이경우도 포함함. 이런 이유로 ▲으로 표기.
- 8) 법인격이 협동조합이면서 다른 인증이나 지정을 받지 않은 일반 협동조합인 경우 s-coop와 비교하여 대부분 같으나 미소금융의 용자만 차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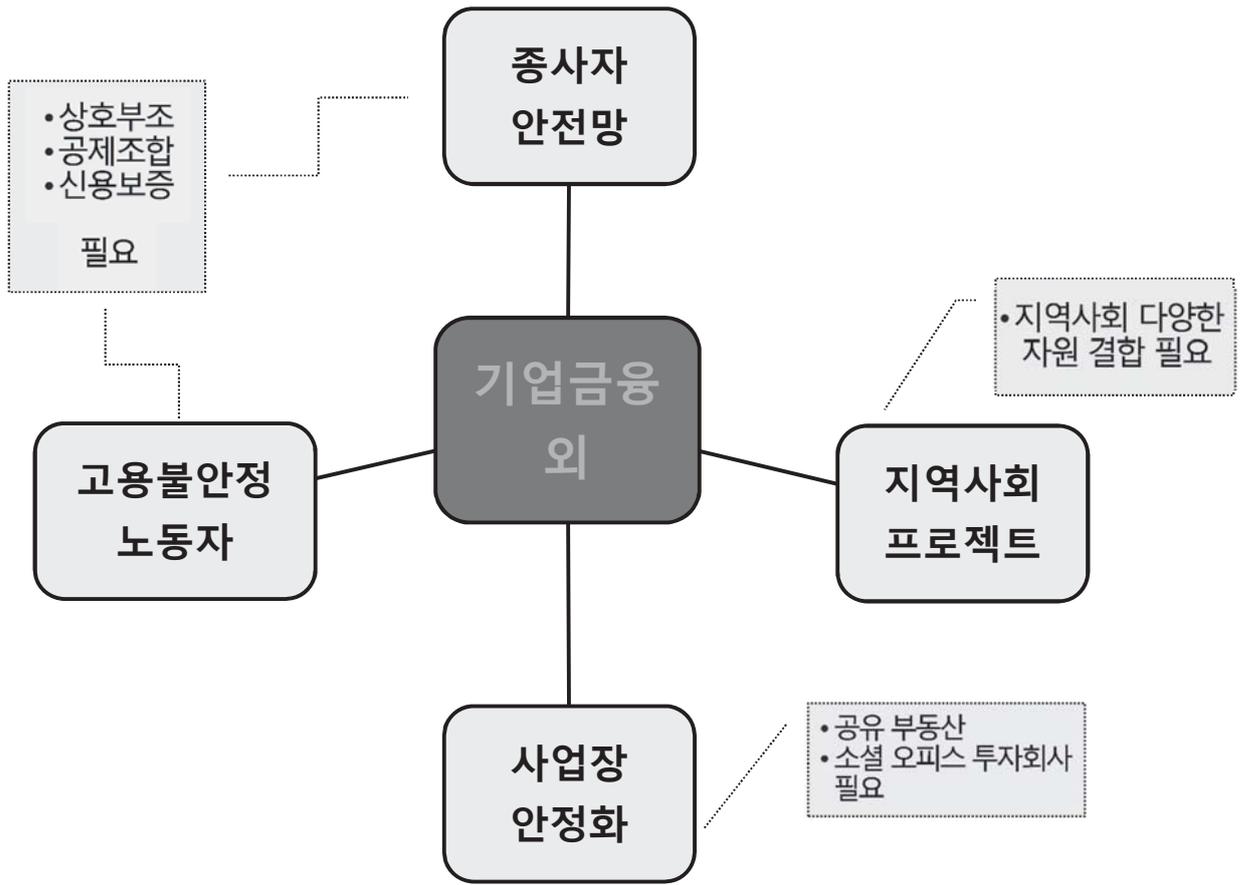


사회적경제 성장단계를 고려한 자금조달 체계는 있으나 진입장벽 존재

3. 충족되지 않는 사회적경제의 자금 수요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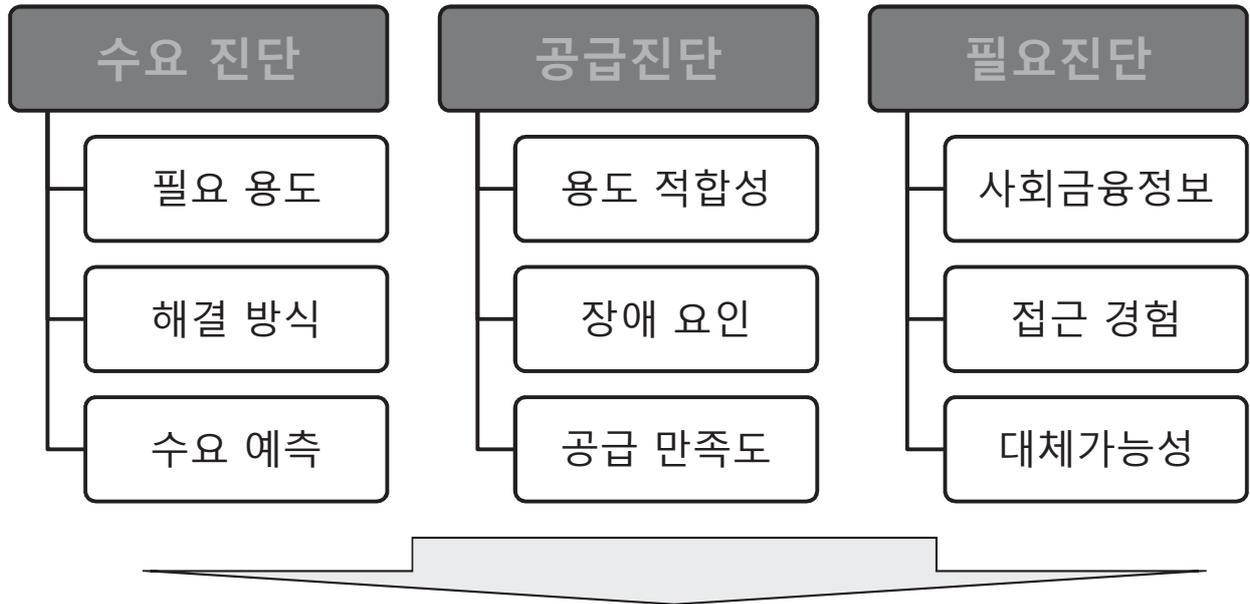


- 위의 3개 부문은 정부정책자금 활용 대상이며 자조기금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음.
 - 정책 자금활용이나 자기조달로 충당되기에 부족한 부분에 대한 수요임.
 - 위의 수요는 상품의 부재 또는 미흡, 상품의 조건의 불충분 등에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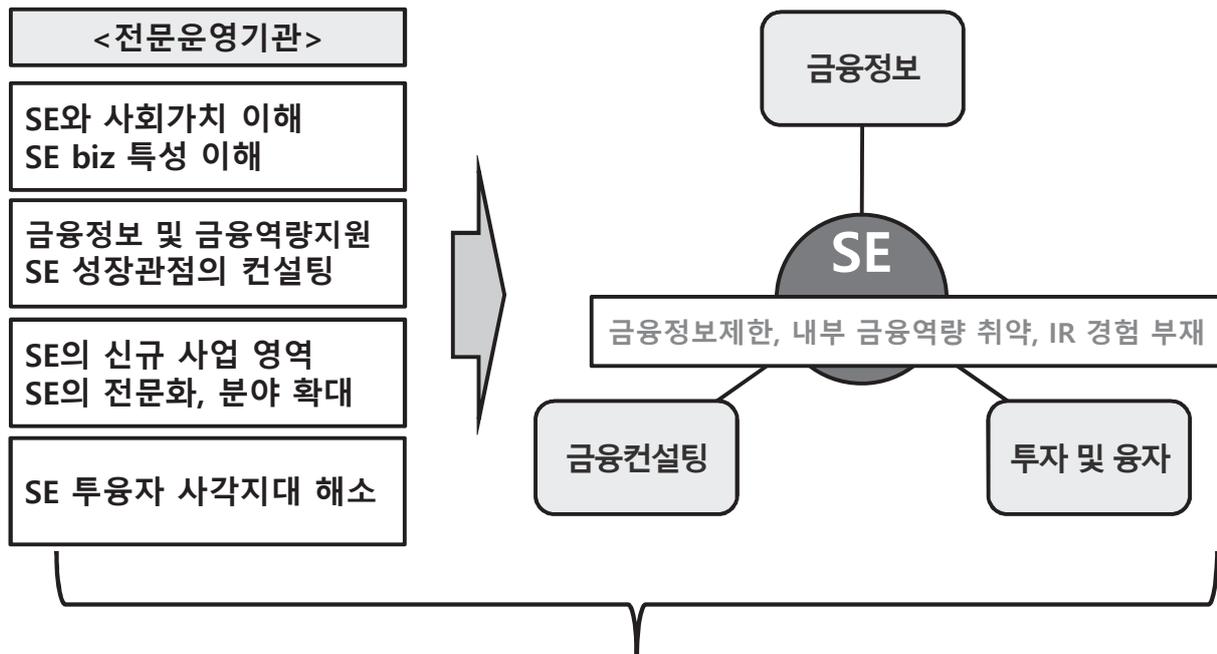
넷.
사회적경제 자본연대
활성화를 위한 실천 과제

개인과 조직의 자금 조달 상황 진단 필요



개인과 조직의 자본 연대 필요성과 자본 참여 의지 확인

2. 전문운영기관 등의 직접 설립 지향



기능	• 사회적경제 CFO	• 전문 투자회사	• 사회금융 지원 기관
이슈	• 전문 기관 설립	• 외부 전문 기관 협약	• 실험에 역할 부여

• 중장기 관점 / 효과성과 효율성 고려 / SE의 성장과 자기 발전계획에 근거해 판단

사회적경제 주체의 필요성	협력 파트너의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연대를 통한 자본 축적 기간 필요 - 자본의 규모화 필요 - 금융 전문성 습득 기간 필요 <p>⇒ 시간·자본·전문가의 진입장벽 존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의 정체성과 당파성 - 사회금융의 전문성 보유 - 지식의 이전 / 인큐베이팅 가능 <p>⇒ 진입장벽 해소를 지원</p>

실험

- 사회적경제 및 사회금융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
- 물리적 접근성과 정서적 공감대 형성 용이

중개 기관

- 사회적경제의 자금 수요를 해결해 온 전문기관이 존재
- 지역 차원의 전문기관 성장 전략을 함께 도모 가능

투자 회사

-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전문 투자회사 존재
- 투자 기준에 대한 협의

24

4. 자본연대의 구체성 확보 - 선택과 집중

무엇을 선택 할 것인가 ?	어떻게 집중할 것인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 연대를 조직하고 실현 - 협력 파트너의 발굴과 관계 발전 <p>⇒ 금융 자기결정권의 실현 / 자조 금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본연대 조직화 : 공감대 형성 - 협력 주체와 소통, 공동사업 시도 <p>⇒ SE 자조금융 발전전략 수립</p>

연대회의의 사회금융 TF의 실험

• 공제조합간의 공동사업 모색 : 공동 공제 상품 개발

• 전문 투자회사 설립 모색 : 사회적경제 전문기관들의 합작회사

• 지역단위 자조금융 발전전략 수립 지원(예정) : 지역의 요청 시 함께 고민

• 중앙 및 지역 실험과 협력 사업 개발(예정) : 실험 중앙회와 협의 제안

감사합니다.

발제

사회적경제 안의 자금수요 해결 경험 사례 공유 및 새로운 시도들 성과와 과제 그리고 전망

- 저소득주민의 든든한 생활안전망 / 유유미 사무국장 [전국주민협동연합회]
- 기관 및 사업소개 / 김선영 팀장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공제사업단]
- 설립 및 운영계획 / 김영식 간사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발기인회]
- 상호부조형 공유기금 공동조성 계획 / 신재민 기획전략실장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사회적금융 추진 계획 및 거점신협의 역할 / 정복수 차장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설립 및 운영계획

Korea Social Value & Solidarity Foundation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활동가대회

November 2018

사회적경제의 기대효과

사회적경제는 사회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활동으로, 고용창출과 양극화 완화, 미래 복지자산 · 사회안전망 구축, 지역공동체 강화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주목되고 있음

사회적경제

정의

- 구성원 협력 · 자조 바탕으로 재화/용역 생산 및 판매하여 **사회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활동¹⁾

특징

- 상업적 목표보다 **사회가치** 우선 추구
-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시장실패 및 정부 공공기능 보완
- 정부 또는 시장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취약계층과 연대 · 협력**
- 효율 경영보다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한 자율경영

주요 기대효과

고용창출 및 안정, 소득양극화 완화 기여

- 일반법인 대비 높은 취업유발 효과²⁾, **안정적 고용, 높은 기업 생존율** 유지

일반기업	38%
마을기업	87%
사회적협동조합	99%
사회적기업	92%
- 경력단절 여성, 은퇴자, 청년,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기회 확대

미래 복지자산 확보, 사회안전망 강화

- 국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주거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복지자원 부족문제 해소를 위한 **공공자산 확보**
- 보건, 문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사회성과연계채권** 등 혁신적 시도로 새로운 복지 자원 전달체계 구축

지역구성원 참여, 공동체 복원 및 강화

- 지역주민의 직접 참여** 촉진, 구성원 간 장기적 신뢰관계 회복과 **공동체 문화** 형성에 기여

1)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주요 사회적 경제기업은 총 14,948개 운영 중이며 총 91,100명을 고용(16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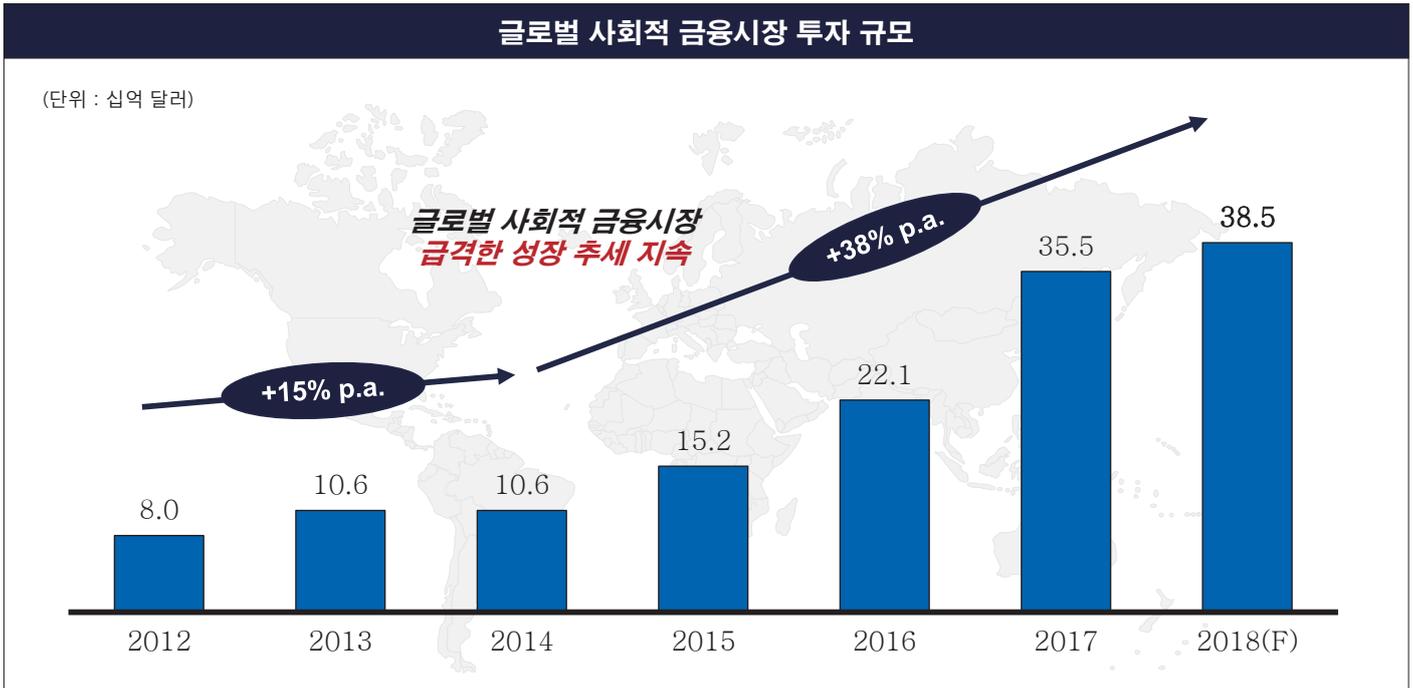
2) 산출액 10억 원 당 취업유발계수 : 전 산업 12.9명, 협동조합 38.2명

3) 기업생존율 기준 : 사회적기업(인증 후 3년), 마을기업(정부지원 종료 후), 사회적협동조합(등록 후 3년), 일반기업(창업 후 3년)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일자리위원회 · 관계부처 합동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글로벌 사회적 금융시장 확대

사회적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금융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지속 확대 추세로, 2018년 투자 규모는 약 43조 원(~385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됨



자료 : J.P. Morgan; GIIN

2

한국 사회가치연대기금 출범 배경

한국도 사회적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적 금융 생태계 구축방안 논의를 지속해 왔으며, 이러한 논의는 민간 주도의 사회가치연대기금 설립으로 이어짐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18.2.8) 주요 내용

文 대통령,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 논의
2018년 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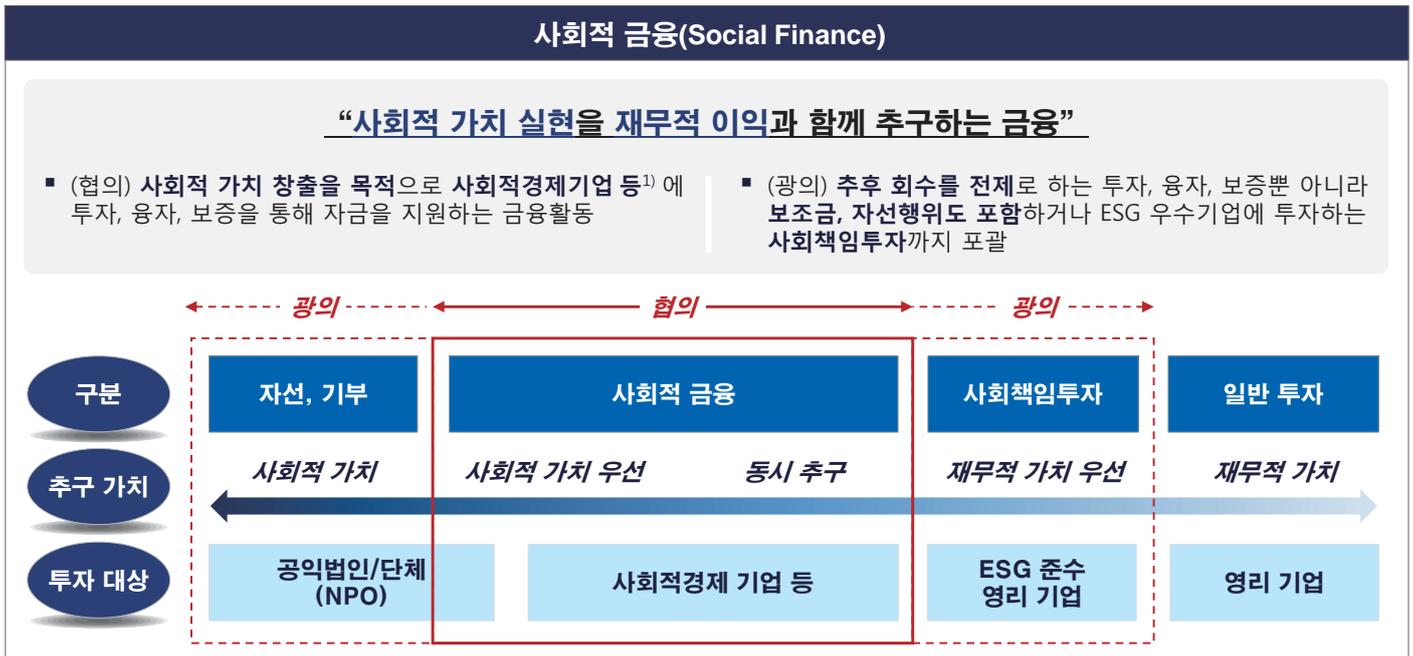
한국 정부 사회적 금융 활성화 위한 본격적 지원방안 마련, 정부 차원의 강력한 드라이브 가동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관계부처 합동(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 IBK 경제연구소; 언론 기사

[참고] 한국 정부의 사회적 금융(Social Finance)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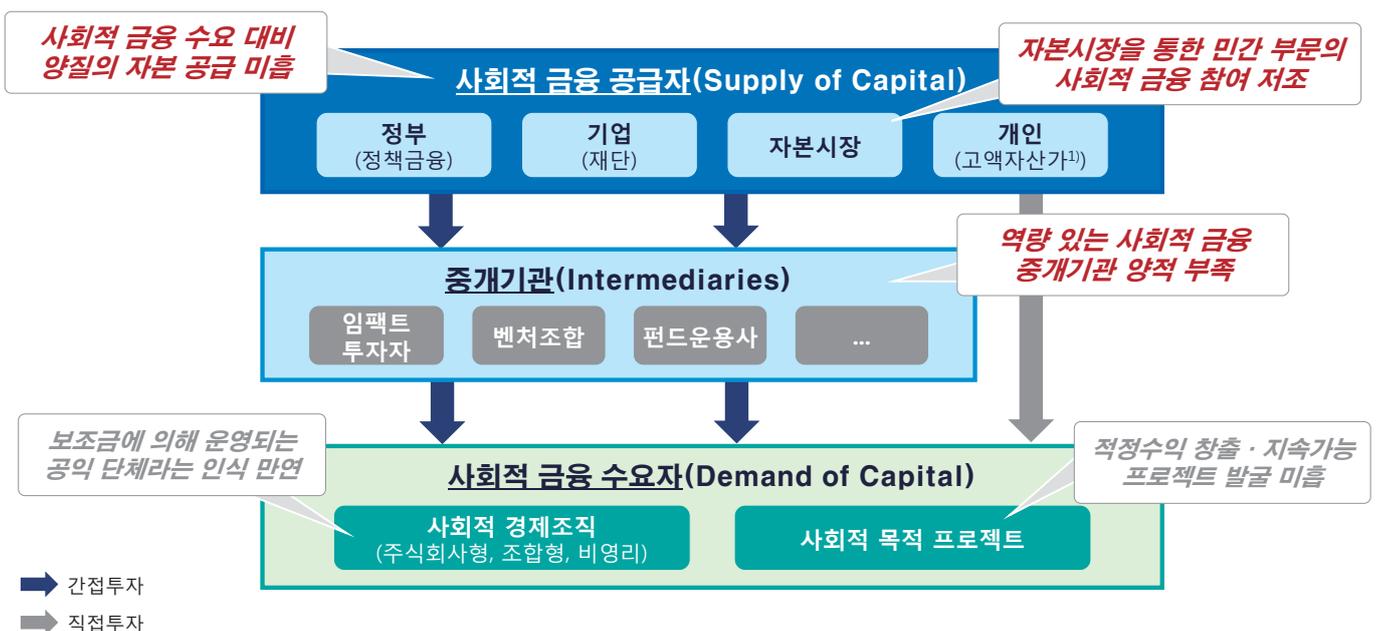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수적인 사회적 금융은 사회적 가치와 재무적 이익을 함께 추구하는 금융으로 정의



1)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및 사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활동(공공성이 큰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활동)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관계부처 합동(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국내 사회적 금융 현황(Landscape)

사회적 금융 주요 구성원은 사회적 금융 공급자, 중개기관, 수요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국내의 경우 각 영역별 다음과 같은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되고 있음



1) 고액자산가로 HNW(High Net Worth Individual, 고액순자산보유자), Family Offices(가문자산가) 등이 해당되며 HNW는 보유자산 중 부동산 자산을 제외한 금융자산 및 투자가능 자산이 100만 달러 이상인 부자를 의미하고, Family Offices는 최소 1백만 달러에서 1억 달러를 보유한 고객으로 록펠러, 케네디, 로스자일드, 에드워드 존슨 등의 유명 가문 등이 해당
 자료 : 일자리위원회(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Social Finance

한계 및 도전과제

국내 사회적 금융은 자금 수요와 공급 형태 간 미스매치, 지역적 기반의 중개기관의 양적 부족, 자본시장을 통한 민간 부문 참여 저조라는 한계와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음

국내 사회적 금융의 한계 및 도전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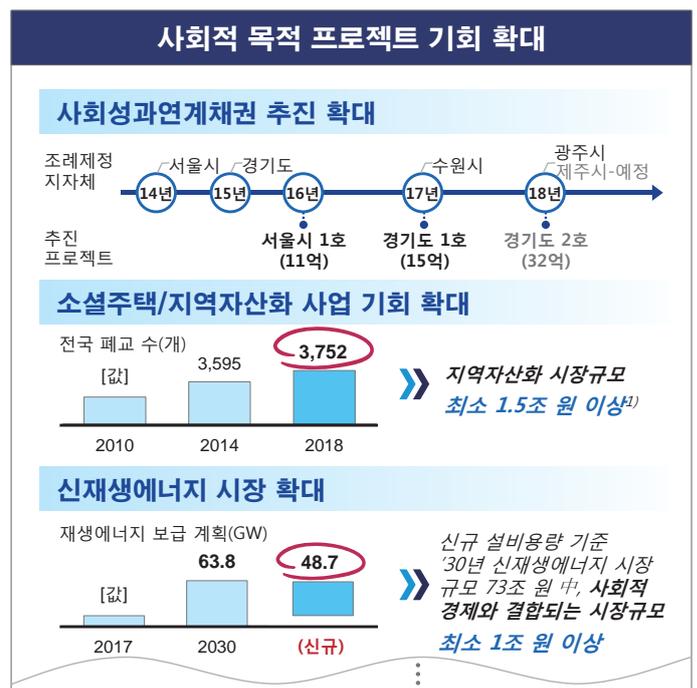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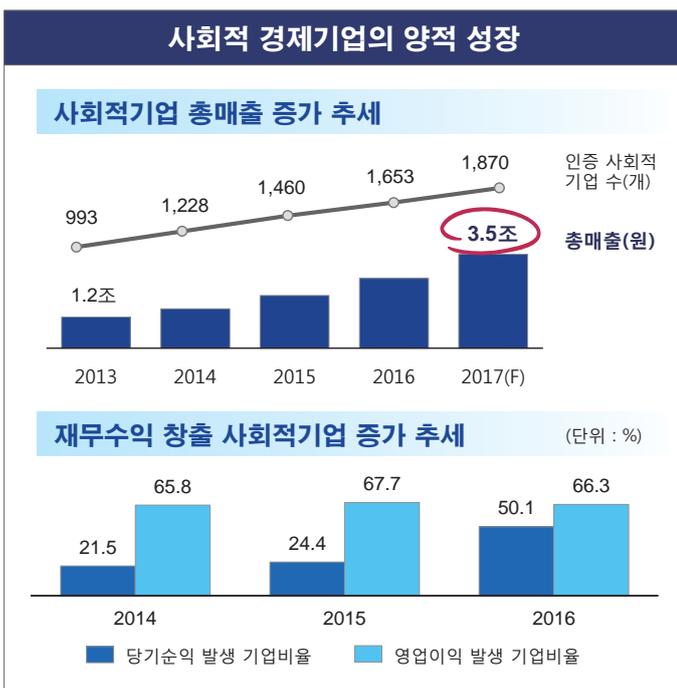
- 1 **사회적경제 자금 수요-공급 형태 간 미스매치**
 - 공공부문 주도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증대되는 사회적경제의 자금 수요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
 - 사회적경제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만기, 지원수단 등에서 수요-공급 간 형태 간 미스매치 발생
- 2 **지역 기반의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양적 부족**
 -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은 대부분 자금조달 및 관리 역량 미흡, 사회적 경제기업 대상 금융교육·컨설팅 제공 육성 필요
 -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대부분이 서울에 밀집, 역량 있는 지역 기반 중개기관 육성 필요
- 3 **자본시장 통한 민간의 사회적 금융 참여 저조**
 - 정부·공공재원 중심 정책금융 사업 대비 자본시장을 통한 민간 부문의 자발적 금융지원 부족
 -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 부족,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 목적 프로젝트의 재무적 수익이 낮다는 인식 등이 민간 참여 저해

“
해당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금융 전문
도매기금 조성이
필요함

자료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관계부처 합동(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장 잠재력 및 기회요인(1/2)

한편 국내 사회적 경제기업의 양적 성장세와 다양한 사회적 목적 프로젝트 기회 확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사회적 금융시장의 성장 잠재력은 충분할 것으로 전망되며...



1) 2018년 기준 폐교 3,752개 중 지역자산화 추진 가능한 폐교(지자체 보유 폐교, 매각 제외) 1,413개의 장부가격 1.5조 원을 지역자산화 사업 규모로 추정

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고용노동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가 인터뷰

시장 잠재력 및 기회요인(2/2)

... 해외에서도 한국 사회적 금융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크고 적시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빠른 속도로 발전하여 성숙해질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BSC 설립 6년 만에 영국 사회투자에 유입된 투자액이 6배 증가했으며, 영국 **사회투자 생태계는 매년 평균 20%씩 커지고 있다...**

... 한국은 사회적 금융시장이 전 세계 그 어느 나라 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인 만큼 **잠재력이 매우 크다**. 적어도 한국의 사회적 금융시장은 **영국보다 빠른 속도로 성숙해질 것**이라 확신한다.

- 영국 BSC 대표 클리프 프라이어, 2018년 7월



“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처음부터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주저할 필요가 없다. 규모는 투자를 성공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기에 한국 역시 **투자 규모를 키우기를 권한다...**

... **임팩트 분야 생태계는 전 세계 모두가 리더가 될 수 있으며, 어떠한 국가든 임팩트 국가가 될 수 있다. 한국은 적시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 GSG¹⁾ 의장 로널드 코헨 경, 2018년 2월 / 9월

1) GSG : Global Steering Group for Impact Investment

자료 : Big Society Capital; 언론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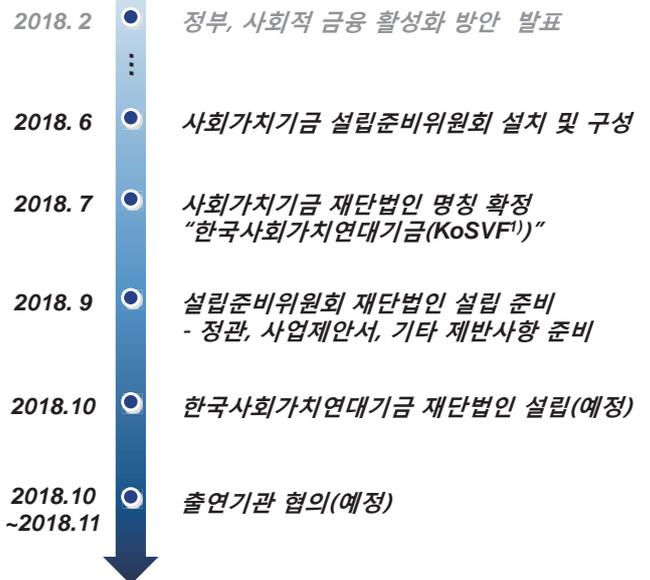
사회가치연대기금 개요

사회가치연대기금은 지속가능한 사회적 금융시장 조성을 위한 대한민국 최초 민간 주도 사회적 금융 도매기금으로, 2018년 10월 재단법인으로 설립 예정임

대한민국 최초 민간 주도의 “사회적 금융 도매기금”



- 상임이사 : TBD
- 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 설립일 : 2018년 10월(예정)
- 법인형태 : 재단법인²⁾
- 조성규모 : 3,000억 원(예정)



1) KoSVF : Korea Social Value and Solidarity Foundation

2) 현행법 상 사회적 금융의 탄력적 자금운용과 실현가능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하였으며, 장기적으로 사회적 금융업을 법제화하여 새로운 법적 형태로 전환을 모색할 필요

자료 : 사회가치연대기금추진단 내부자료

중장기 전략 방향 Overview

본 기금은 국내 사회적 금융시장 조성 및 사회가치 투자 확대 촉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 금융 생태계 발전과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자료 : 사회가치연대기금추진단 내부자료

사회가치연대기금, 무엇이 다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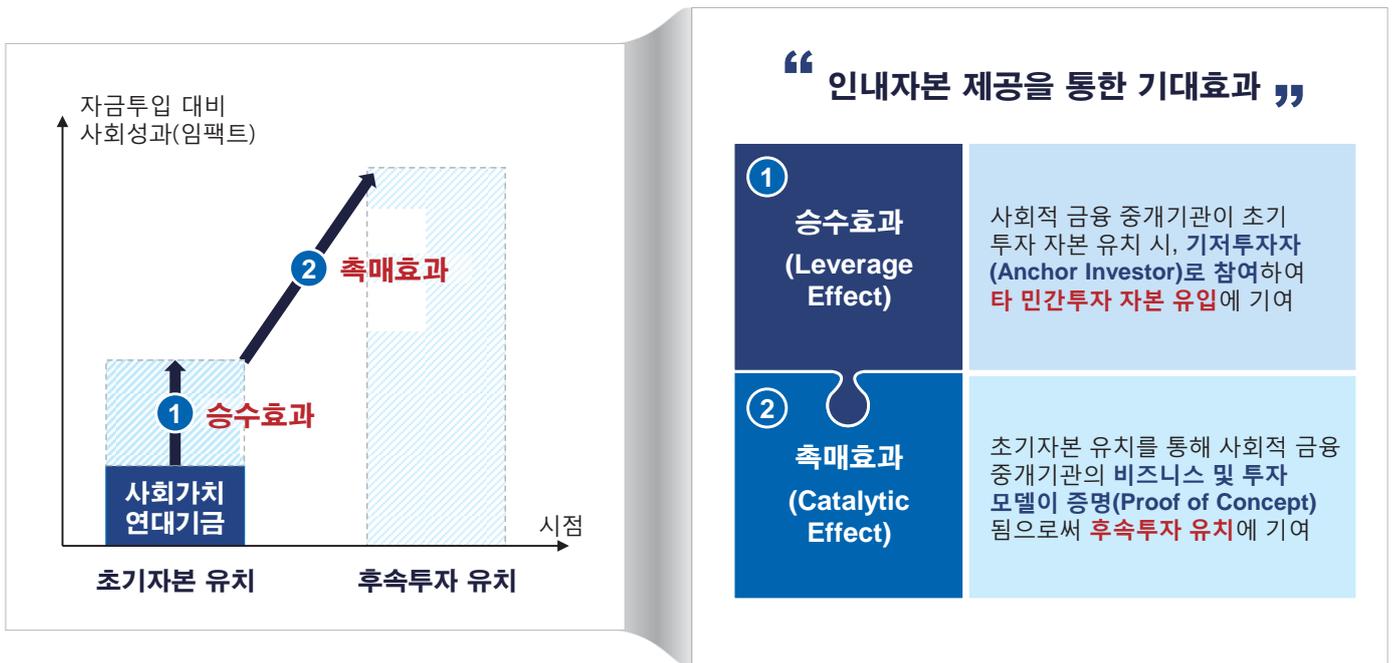
본 기금은 최종 위험을 부담하고,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차별화 Pricing¹⁾을 적용하는 국내 최초의 사회적 금융 도매기금이라는 점에서 기존 여타 기금과 차이가 있음



1) 재무적으로 튼튼한 사회적 경제조직은 적정 수익률을, 재무적으로 약한 조직에는 낮은 수익률을 부담하는 연대의 원칙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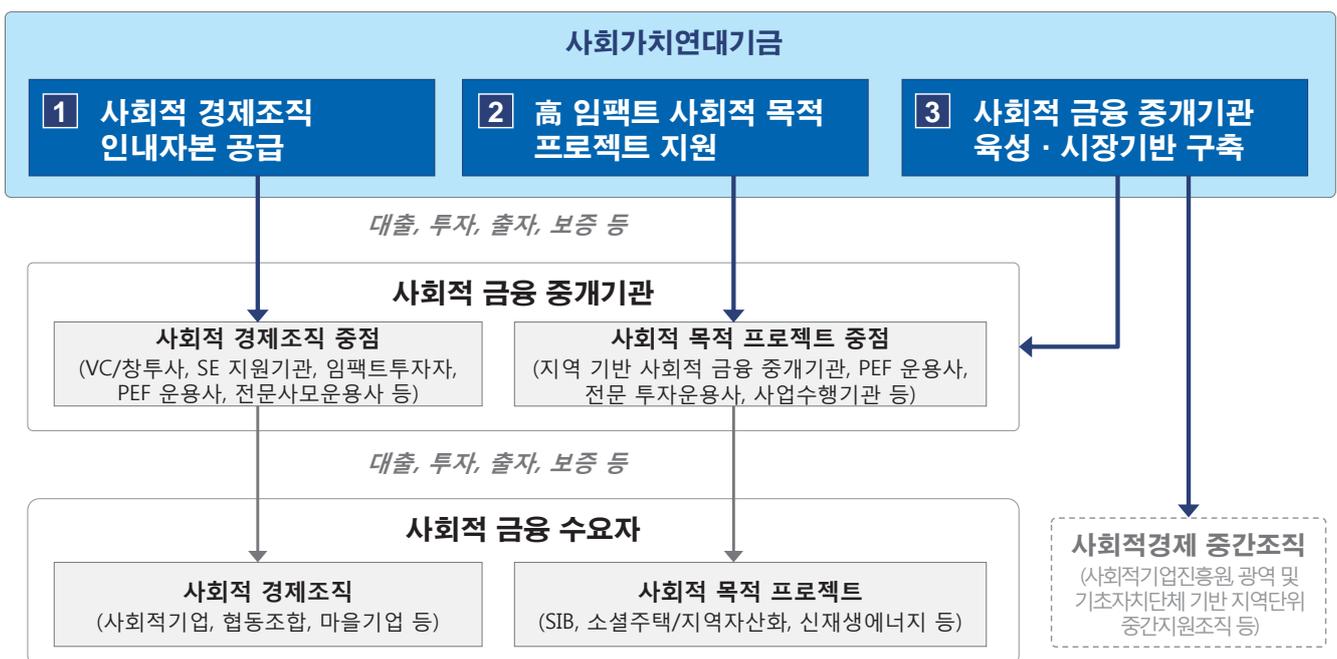
[참고] 승수효과 및 촉매효과

사회가치연대기금의 인내자본 제공을 통해 승수효과와 촉매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핵심 사업활동 Overview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을 통해 수요자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1, 2 사업활동과 사회적 금융 생태계 전반에 기여하는 3 사업활동을 전개할 계획임



파트너십 및 협력 방안(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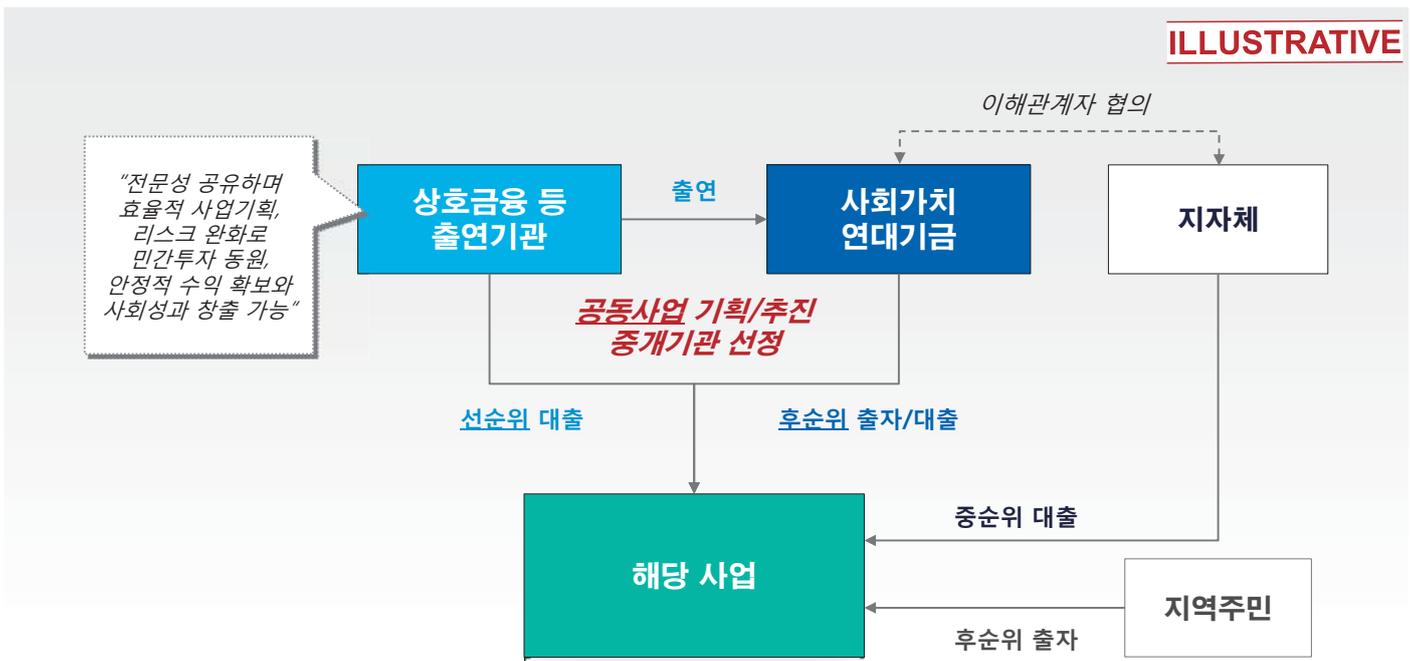
출연기관, 지자체, 상호금융기관을 포함한 다양한 파트너와 사업추진 단계별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시너지를 창출, 공동 목표 달성과 성과 극대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추진 단계	1 사회적 경제조직 인내자본 공급	2 高 임팩트 사회적 목적 프로젝트 지원	3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육성 · 시장기반 구축
발굴 ·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트너 해당 지역 내 유망 사회적 경제조직 공동 발굴, 파이프라인 상호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트너 해당 지역 프로젝트 공동 개발 및 기획, 사업구도 설계, 이해관계자 협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트너 해당 지역 내 기존/신규 중개기관 육성 및 역량 강화 사업 공동 기획 및 추진 지역 기반 연구 및 교육, 각종 행사 등 공동 기획 및 운영 관리
재원조달 ·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순위 인내자본으로 리스크 완화 및 투자 동원, 해당 지역 기업 일정 배정 지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순위 참여로 프로젝트 재원 구조 안정화, 민간 투자 촉진, 프로젝트 규모 확대 용이 	
운영 및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성 및 노하우 공유를 통해 효율적 운영 관리, 사회성과 측정 및 관리 지원, 홍보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별 상호금융/지자체 협업 통해 운영 효율성 제고, 지역 구성원 참여 촉진, 홍보 효과 	

“ 파트너(출연기관, 지자체, 상호금융기관, 시민사회조성기금 등) 특성별 맞춤형 협력으로 시너지 창출, 공동 추구 목표 달성 및 성과 창출 극대화 ”

파트너십 및 협력 방안(2/2)

잠재파트너/출연기관 공동사업 추진 구도 예시



사회가치연대기금의 포지셔닝 및 협력 구조도

핵심 사업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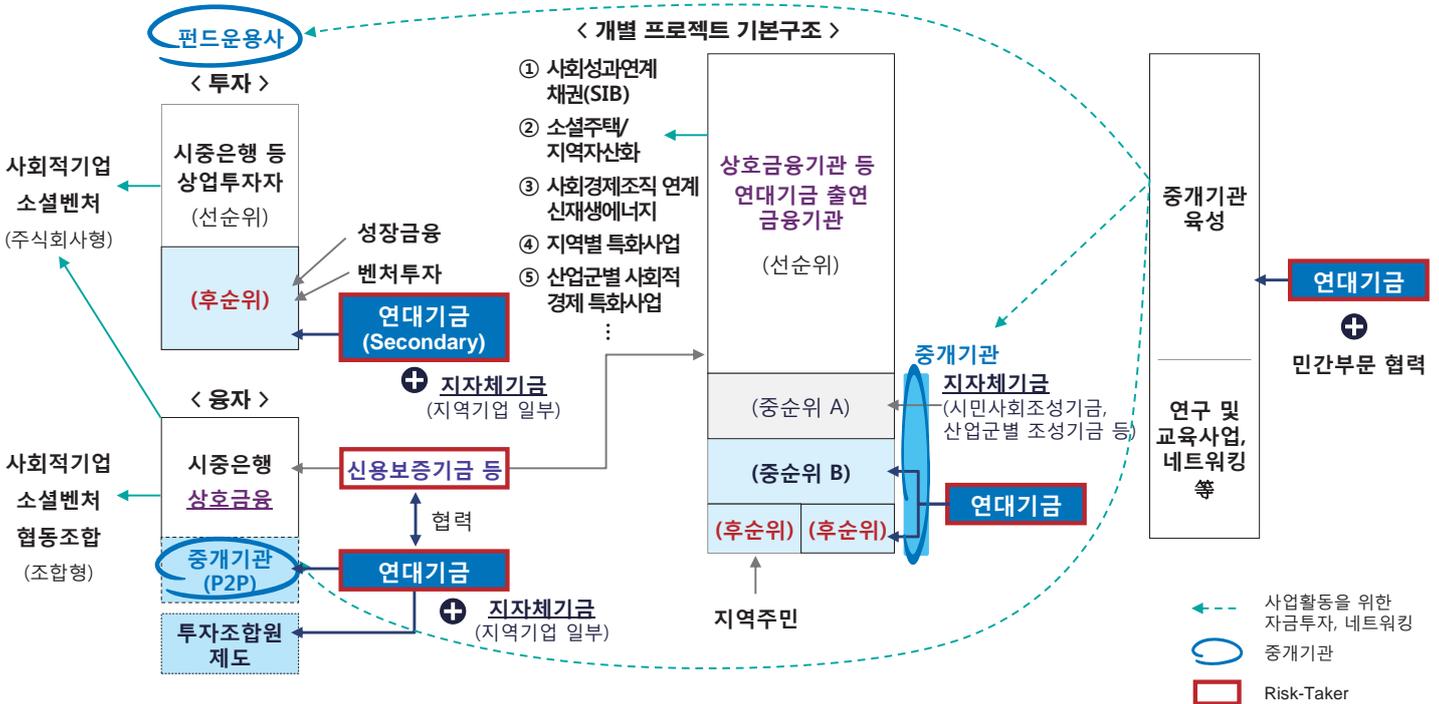
사회적 경제조직 인내자본 공급

핵심 사업 2

高 임팩트 사회적 목적 프로젝트 지원

핵심 사업 3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육성 · 시장기반 구축



핵심 사업활동 1 : 사회적 경제조직 인내자본 공급(1/4)

사회적 경제조직에게 필요한 자금을 다양한 중개기관을 통해 최적 맞춤형으로 제공, 후순위 참여 등 자본시장의 Final Risk-Taker로서 인내자본을 확대 공급함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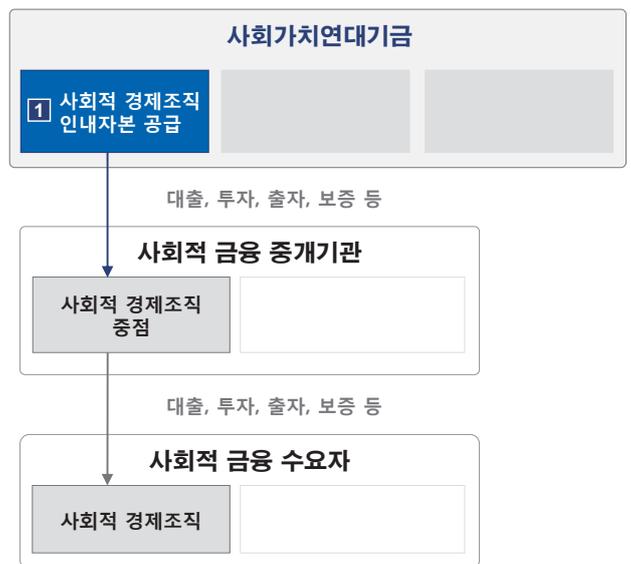
- 사회적 경제조직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본 공급

주요 내용

-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을 통한 자금 공급
 - 중개기관이 발굴한 사회적 가치 기여도가 높은 사회적 경제조직에 우선 자금 배분
- 다양한 지원수단 활용, 사회적 경제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내자본 공급
 - 인내자본을 대출/투자/출자/보증 형태로 제공
 - 사회적 경제조직 맞춤형 금융 제공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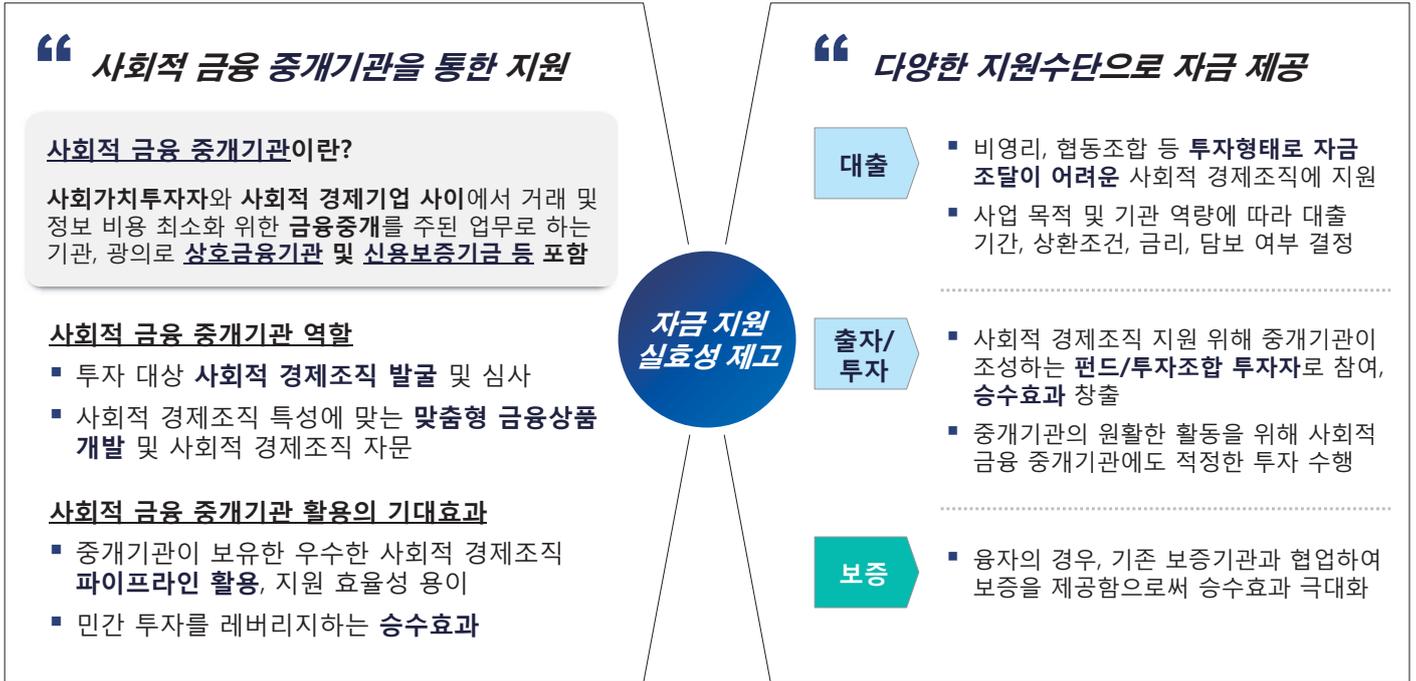
- 다양한 역량 및 지역 커버리지를 보유한 중개기관을 육성하고 긴밀히 협력하며 수행, 사회적 경제 조직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적정 보수¹⁾ 제공



1) 건 별, 금액별 운용보수 차등 지급, 회수실적에 대한 보수 유보 및 경영지원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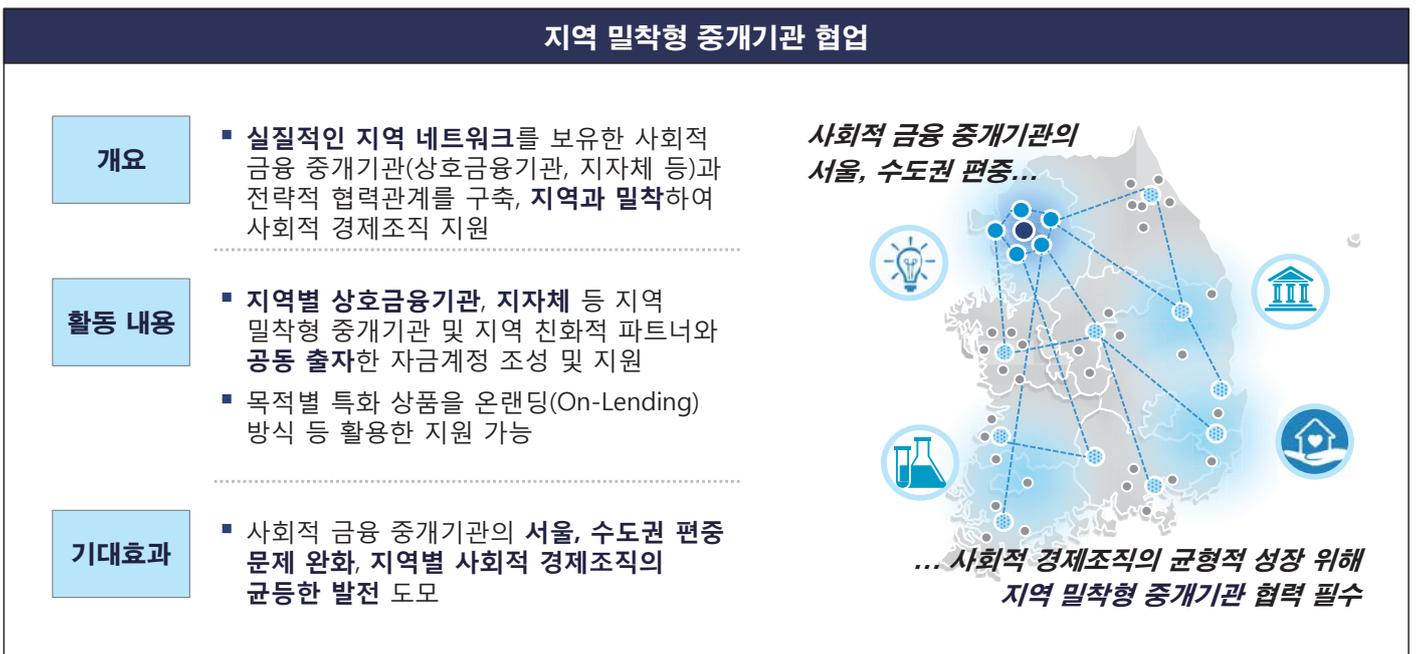
핵심 사업활동 1 : 사회적 경제조직 인내자본 공급(2/4)

지역적 기반 사회적 금융 전담 중개기관을 육성하고 긴밀히 협력하여, 사회적 경제조직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원수단 활용, 자금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임



핵심 사업활동 1 : 사회적 경제조직 인내자본 공급(3/4)

특히, 사회적 경제조직의 균형적 성장을 위해 실질적인 지역 네트워크를 보유한 지역 밀착형 중개기관과 활발한 협업을 추진, 지역 편중 문제 완화에 기여할 것임



핵심 사업활동 1 : 사회적 경제조직 인내자본 공급(4/4)

보증의 경우 신용보증기금 등과 보증협약을 체결, 긴밀한 협력으로 시너지를 창출하겠음

신용보증기금 등 위탁 보증

개요

- 신용보증기금 등과 보증협약(MOU) 체결, 사회적 가치 연대기금 보증 계정에서 신용보증기금 등 특별 계정(사회적경제 지원)에 출연

활동 내용

- 보증 신청 : 사회적 경제조직이 신용보증기금 등에 보증 신청서 제출
- 보증 심사¹⁾ : 신용보증기금 등이 보증 신청서 심사
- 보증서 발급 : 신용보증기금 등이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에 보증서 발급
- 대출 실행 : 사회적 경제조직에 자금 대출
- 보증 손실 : 연대기금-신용보증기금 등 공동 부담

기대효과

- 사회적 가치연대기금의 보증 출연금 대비 큰 승수 효과(최소 7~13배) 창출 가능

보증 구조 예시

1) 보증 심사는 신용보증기금 등과 연대기금간 사전 합의된 여신심사기준에 기반하여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실시할 예정

핵심 사업활동 2 : 高 임팩트 사회적 목적 프로젝트 지원

사회문제 예방·해결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한 프로젝트에 인내자본을 제공하여 승수 효과 및 촉매효과를 창출하고, 임팩트가 큰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육성할 계획임

목적

- 임팩트가 큰 분야의 지속가능한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집중 육성, 성과 극대화
- 사회적 취약계층이 보호되는 사회
- 미래 복지자산이 구축되는 풍요한 사회
-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을 통한 안전한 사회
- 지역공동체 간 활성화된 사회
- 사회계층 간 갈등이 완화된 사회

주요 내용

- 다양한 유형의 중개기관을 통해 프로젝트 지원
 - 중개기관이 기획·개발한 사회적 목적 프로젝트 중, 임팩트가 큰 프로젝트에 우선 자금 배분
 - 사회적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민간 금융 주도 프로젝트 참여 가능
- 다양한 지원수단과 방법으로 인내자본 공급
 - 후순위 참여, 인내자본을 대출/투자/출자/보증 등으로 제공하여 승수효과 및 촉매효과 창출

특징

- 민관협치 실천을 통해 공공 복지자산 확충
- 지역 내 다양한 민관 파트너십 추진과 혁신적 방법으로 지역의 미래 공공 복지자산 구축

핵심 사업활동 2 : 高 Impact 사회적 목적 프로젝트 – 사회성과연계채권(1/3)

민간 자본과 전문성을 동원하여 공공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지원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는 사회성과연계채권(SIB¹⁾) 활용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임

SIB 프로젝트 개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간 자본으로 공공사업 수행,
사회성과 목표 달성 시 정부가
민간 투자자에 보상하도록 하는 계약

성과 중심의 사전예방적 특징



1) SIB : Social Impact Bond
자료 : Goldman Sachs;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요 이해관계자 기대효과

정부/지자체

- 예산집행 효율성 증대
 - 사회성과 목표 달성 시에만 예산 집행, 예방적 사업을 통한 행정비용 감소
- 사회 복지서비스 영역 확장
 - 예산 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예방적 사회 복지서비스 제공

투자자

- 투자 안전성 제고
 - 사회가치연대기금의 후순위 참여로 투자자 수익 안전성 제고
- 사회적·재무적 성과 동시 창출

지역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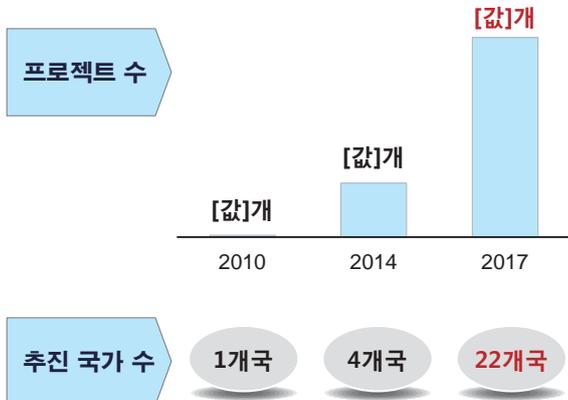
- 사회 복지서비스 영역 확장
 - 사전예방적 복지서비스 접근성 제고
- 사회 복지서비스 질, 효과성 향상
 - 사회성과에 집중함으로써 효과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사회문제 해결 가능

핵심 사업활동 2 : 高 Impact 사회적 목적 프로젝트 – 사회성과연계채권(2/3)

전 세계적으로 SIB 프로젝트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SIB 프로젝트를 주목, 관련 제도의 도입과 함께 본격적인 추진 확대가 예상됨

글로벌 SIB 추진 확대 추세

“ 영국에서 최초 시작된 후, 7년 만에 107개 프로젝트가 22개국에서 추진되며 확산 중 ”



국내 SIB 시장 성장동인 및 잠재력

정부 SIB 사업 활성화 추진

-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일자리정책 5개년 로드맵에 SIB 활성화 명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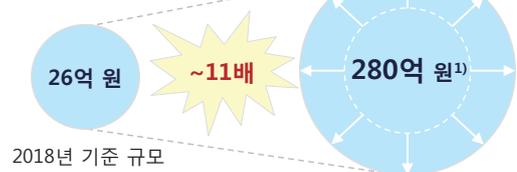
SIB 특별 조례 확산

- SIB 특별조례 제정 지자체 확산
 - 완료 : 서울시, 경기도, 수원시, 광주시
 - 예정 : 부산시, 제주시

SIB 개별법 제정 TFT 가동

- '19년 초 목표, SIB 개별법 입안 추진

시장 잠재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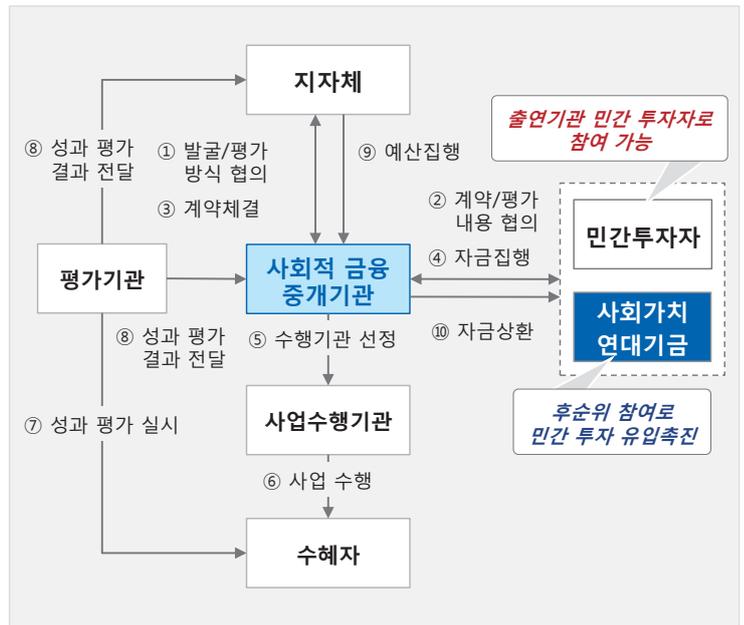
1) 현재 도입 및 도입 예정인 국내 SIB 프로젝트의 예산규모(평균)를 기준으로 추산하였으며, 향후 개별법 제정 등으로 인한 사업기간 확대 시 시장규모는 확대될 수 있음
자료 : SIB Database(Social Finance UK); 사회가치연대기금추진단 내부자료

핵심 사업활동 2 : 高 Impact 사회적 목적 프로젝트 – 사회성과연계채권(3/3)

사회가치연대기금은 지자체, 중개기관이 발굴한 SIB 프로젝트에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함으로써 민간투자자 참여를 촉진, 보다 안정적인 구조로 효과적 사업 추진이 가능함

SIB 프로젝트 지원 예시

사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해 지자체, 중개기관이 발굴한 SIB 프로젝트 지원 효율적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지방정부 협의회'와 포괄적 MOU 체결 추진 가능
기금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순위 참여로 프로젝트 재원구조를 보다 안정화, 민간 부문의 참여 촉진 SIB 사업 수행기관에 투자하여 사업수행 안정성 도모 및 중개기관 역량 확대 계약/평가 내용 협의 시, 사회성과 지표 설정 등 기술적 지원 가능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 재정 절감 보다 효과적/효율적 방법으로 양질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지원 범위 확대 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



핵심 사업활동 2 : 高 Impact 사회적 목적 프로젝트 – 소셜주택 및 지역자산화(1/3)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여 공공 복지자산을 축적하는 소셜주택 및 지역자산화 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임

소셜주택 및 지역자산화 프로젝트 개요

소셜주택 및 지역자산화 프로젝트는 유휴자산을 활용하여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

지역 공동체 구성원 중심으로 추진

- 소셜 주택**
 - 민간 사회적 경제조직이 공급하고 운영하는 주택을 의미, 시장 대비 임대료가 저렴, 안정적 거주기간 보장
- 지역 자산화**
 - 지역 자산을 공유 자산으로 전환해가는 일련의 과정, 자산의 '소유-개발-이용-자금조달' 전 과정에 지역 공동체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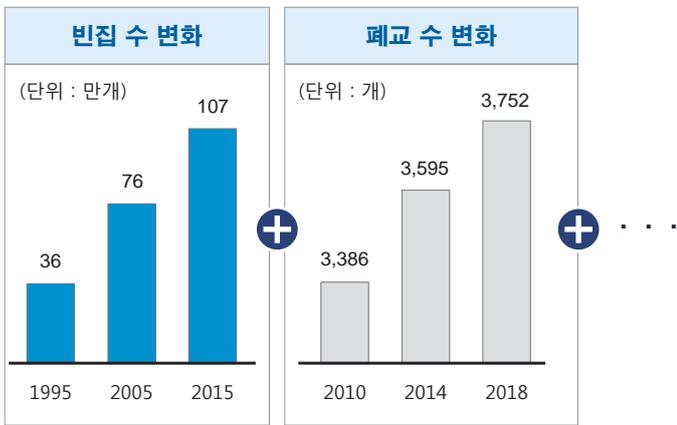
주요 이해관계자 기대효과

- 정부/지자체**
 - 재정 부담 경감
 - 유휴자산의 효율적 활용
 - 관리가 어려운 유휴자산을 사회적 경제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 투자자/대출자**
 - 투자 안전성 제고
 - 사회가치연대기금 후순위 참여로 투자자 수익 안전성 제고
 - 지역친화적 이미지 제고
 - 상호금융기관의 경우,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역 이미지 제고 및 사업 안정성 확보
- 지역사회**
 - 지역 내 사회적 문제 예방 및 해결
 - 인구구조 변화 및 도시 축소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 문제 예방 및 해결
 - 지역 공동체성 강화
 - 지역 공동체를 위한 주거 및 복지공간이 확보됨으로써 지역 내 연대 강화

핵심 사업활동 2 : 高 Impact 사회적 목적 프로젝트 - 소셜주택 및 지역자산화(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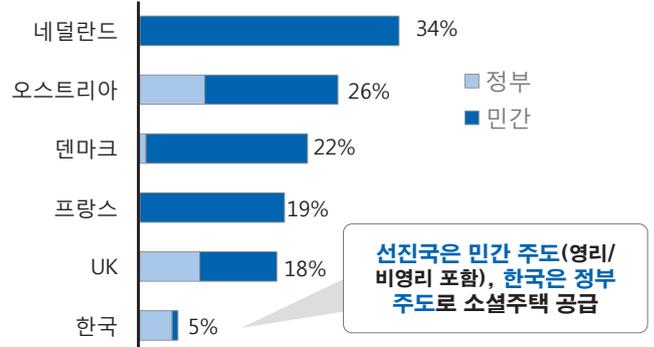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공공 복지자산을 확충하는 소셜주택 및 지역자산화 프로젝트 추진 지원, 지역의 성장기반 구축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국내 유휴공간은 지속적으로 증가...



... 소셜주택은 현저히 부족

주요 선진국의 자국 소셜주택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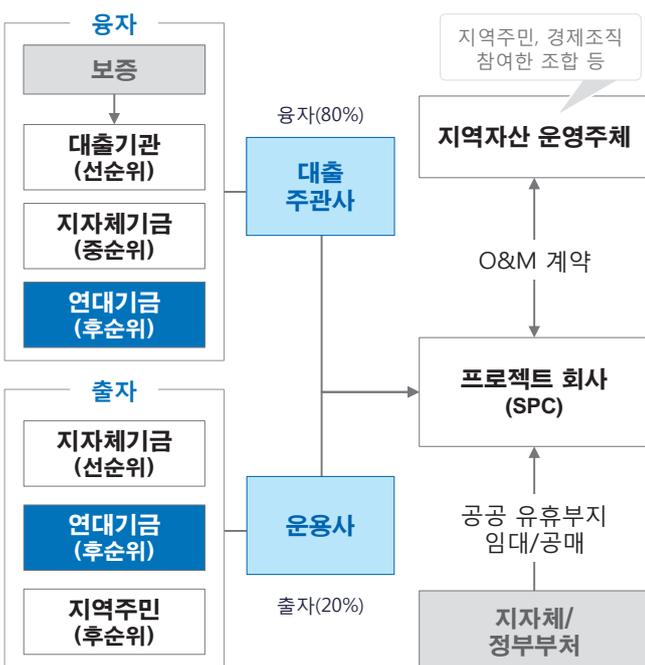


“ 지속 증가하는 유휴공간을 지역사회 성장 기회로 활용하여 공공 복지자산 축적 필요, 사회가치연대기금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민간 주도의 사업기획 활성화 및 민관협력 구축 가능

자료 : 국토연구원, 한국주택금융공사

핵심 사업활동 2 : 高 Impact 사회적 목적 프로젝트 - 소셜주택 및 지역자산화(3/3)

사회가치연대기금은 지역구성원 및 사회적 경제조직이 주관하는 프로젝트에 후순위로 참여하여 프로젝트의 타당성을 제고, 안정적인 사업구조 구축에 증추적 역할을 수행함



자료 : 사회가치연대기금추진단 내부자료

핵심 사업활동 2 : 高 Impact 사회적 목적 프로젝트 – 신재생에너지(1/3)

사회적 경제조직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지속가능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

사회적 경제조직 참여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역주민과 상생하고 지역에 이익이 환원되도록 사회적 경제조직¹⁾이 참여하여 추진 및 투자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지속가능한 프로젝트 수익으로 지역 공동복지재원 확보



1)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의 형태로는 협동조합, 시민참여 펀드 등 가능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에너지경제연구원

주요 이해관계자 기대효과

정부/지자체

- 지역경제 성장기반이 되는 복지자산 구축
- 한정적인 지자체 기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미래의 공공 복지자산 확보

투자자/대출자

- 안정적 사업구조에 참여 및 수익 확보
- 지역주민 참여로 원활한 사업 추진
- 선순위 확보로 안전하게 투자금 회수

지역사회

- 지역 에너지 자립성 확보
-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에너지 보급 가능

핵심 사업활동 2 : 高 Impact 사회적 목적 프로젝트 – 신재생에너지(2/3)

신재생에너지는 정책적 유인이 제공되어 규모 확대가 예상되는 시장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이 참여하는 사업기회 규모와 성장잠재력 또한 충분할 것으로 전망됨

사회적경제 연계 신재생에너지 사업 성장동인

재생에너지 보급 비중 확대

- '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수준으로 확대
- '16년 비중인 7% 대비 약 3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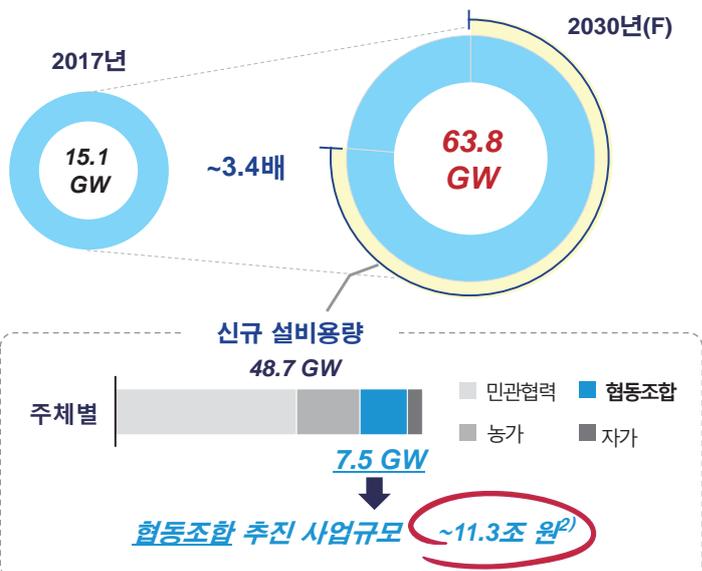
인센티브 확대

- 주민 참여 사업 인센티브 확대
- 제도 간소화 및 안정적 수익 보장¹⁾

국·공유자산 활용여건 개선

- 국·공유재산 활용제도 개선
-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용이성 제고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설비용량 확대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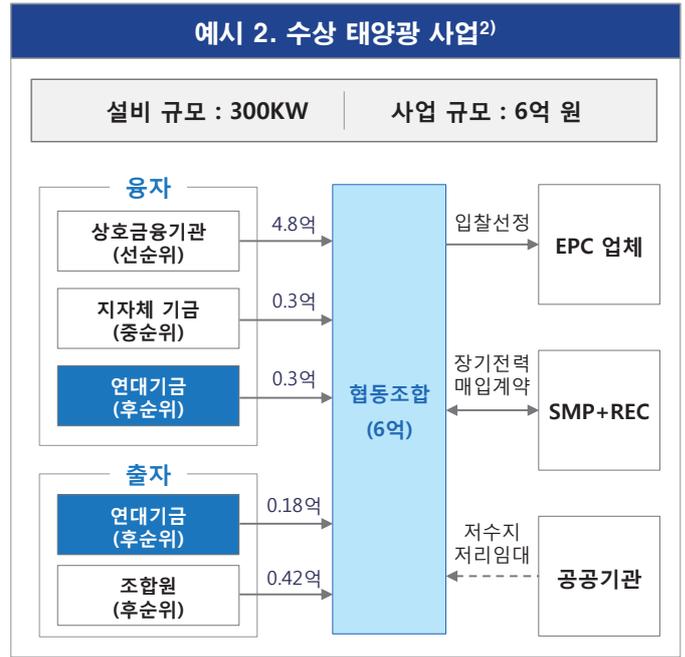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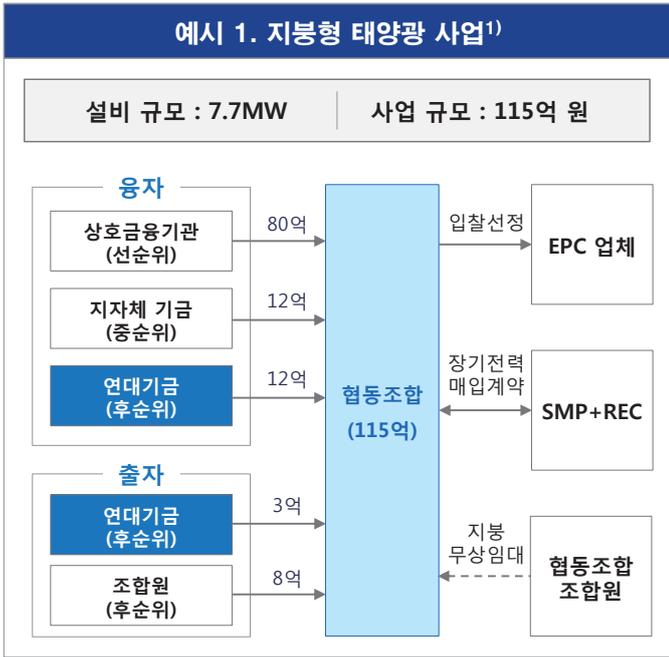
1) 100KW 미만 및 개인사업자 30KW의 경우, 발전 6사 의무구매로 20년 간 안정적 수익 보장, REC 발급 및 입찰 생략

2) 사회적 경제조직(협동조합) 추진사업 규모는 7.5GW로, 약 11.3조 원 자금 필요 예상(일반 태양광 시설규모 1GW(=1,000MW) 사업비 약 1.5조 원 가정)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전문가 인터뷰

핵심 사업활동 2 : 高 影響 社會적 目的 프로젝트 - 新 再生 에너지(3/3)

사회가치연대기금은 기본적으로 후순위로 참여하여 승수효과 및 촉매효과를 창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특성에 따라 규모와 지원 수단은 다양할 수 있음



1) 일반적으로 태양광 시설규모 1GW(=1,000MW)에 약 1.5조 원 사업비 소요
 2) 수상 태양광의 경우, 시설규모 100KW 약 2억 원 사업비 소요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전문가 인터뷰

핵심 사업활동 3 :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육성 · 시장기반 구축(1/4)

지속가능한 사회적 금융시장 조성을 위해 중개기관의 양적 · 질적 육성 지원사업과, 사회적 가치 증진에 필요한 시장기반 구축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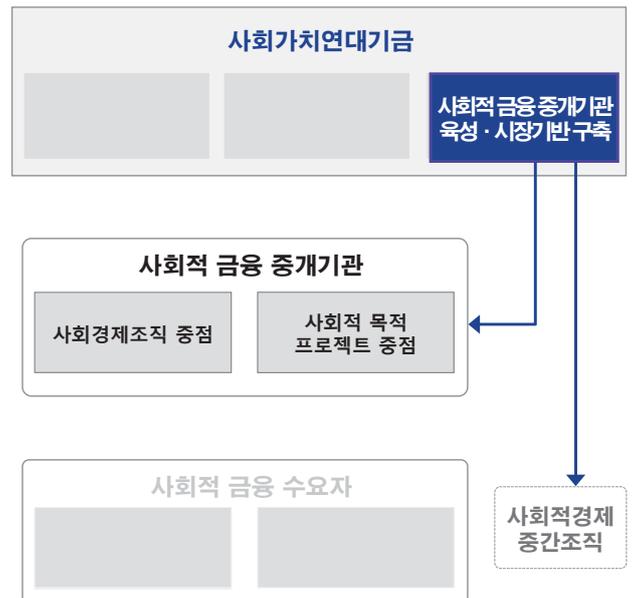
- 역량 있는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의 부족 문제 해소, 지속가능한 사회적 금융 시장기반 구축

주요 내용

- 중개기관의 양적 · 질적 육성 지원
 - 투자금 및 역량강화 지원
 -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네트워크 구축 지원, 인증제도 통한 신규 중개기관 발굴 지원
- 사회가치 증진 위한 시장기반 구축활동 지원
 - 생태계 육성을 위한 연구 지원
 - 사회적 금융 활성화 제도개선 제안
 - 각종 교육 및 행사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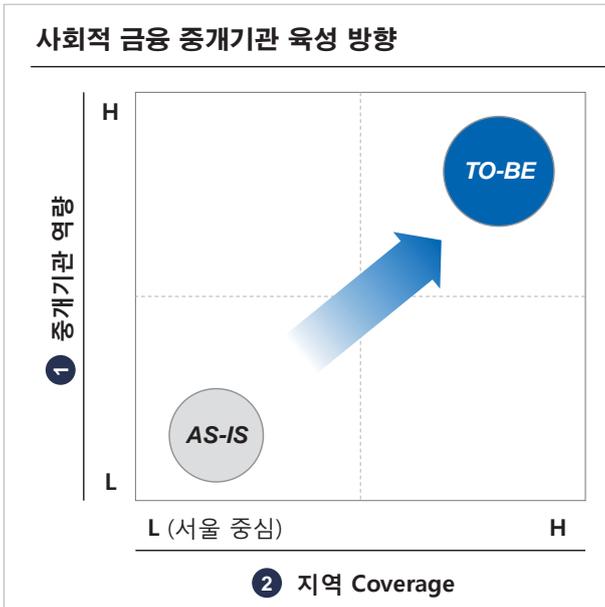
특징

- 생태계 구성원의 필요(Needs)와 수준 고려한 지원, 구성원들 간 협업과 공조 필수



핵심 사업활동 3 :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육성 · 시장기반 구축(2/4)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투자금 및 역량 강화 지원, 네트워크 구축, 인증제도 도입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유연하고 효과적으로 전개할 것임



1 중개기관 자생적 성장 역량 증대

투자금 지원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투자금 지원
- 업무수행을 위한 적정 운용수수료 지원¹⁾

역량 강화 지원

- 사회성과 측정 및 관리 가이드
- 금융실무 교육훈련 지원
- 사회적 금융상품 및 서비스 개발 지원 등

2 중개기관 지역 확대

네트워크 구축

- 보다 적극적이고 활발한 사회적 경제조직 발굴/지원 위해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인증제도 도입

- 중개기관 인증제도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여 지역 사회적 금융 소매기관 육성 지원

1)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이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해 금융교육, 컨설팅 등을 통해 투자기업 지속가능성을 증대하고, 전담인력의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운용보수 지원

핵심 사업활동 3 :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육성 · 시장기반 구축(3/4)

관련 연구 활동과 제도적 기반 구축 지원, 각종 교육 및 행사 지원 활동을 수행하며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한 지속가능한 시장기반 구축에 기여하겠음



핵심 사업활동 3 :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육성 · 시장기반 구축(4/4)

[참고] 중개기관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안 예시

ILLUSTRATIVE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업무 가이드라인 개정	창업 · 벤처전문 PEF 제도 개정	사회적경제전문 PEF 제도 신설
<p>“ 중개기관이 전문운용사 자격을 받거나, 기존 운용사가 사회적 금융에 참여할 경우를 대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가이드라인 제4조 2항 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금전을 대여한 차주가 사회적경제 기본법상 열거된 사회적 경제조직인 경우' 신설 기존 가이드라인 제4조 '투자자의 제한' 내용을 삭제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법인, 재단, 개인이 출자한 경우라도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출 가능하도록 개정 	<p>“ 사회적 금융 자금공급에 장애요인이 되는 원칙 완화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에 참여해야만 하는 제도¹⁾ 완화 필요 특정 출자자가 일정비율 이상 출자하거나 전체 구조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동 PEF가 해당출자자의 계열회사로 연결되는 조항 부담 존재 	<p>“ 사회적 경제조직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출자자 다양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제도 신설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 및 운용대상을 사회적경제 기본법상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규정 대출로 운용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규정 필요 동 PEF의 한 출자자가 1/3이 넘지 않도록 규정하며, 이 경우 연결 이슈 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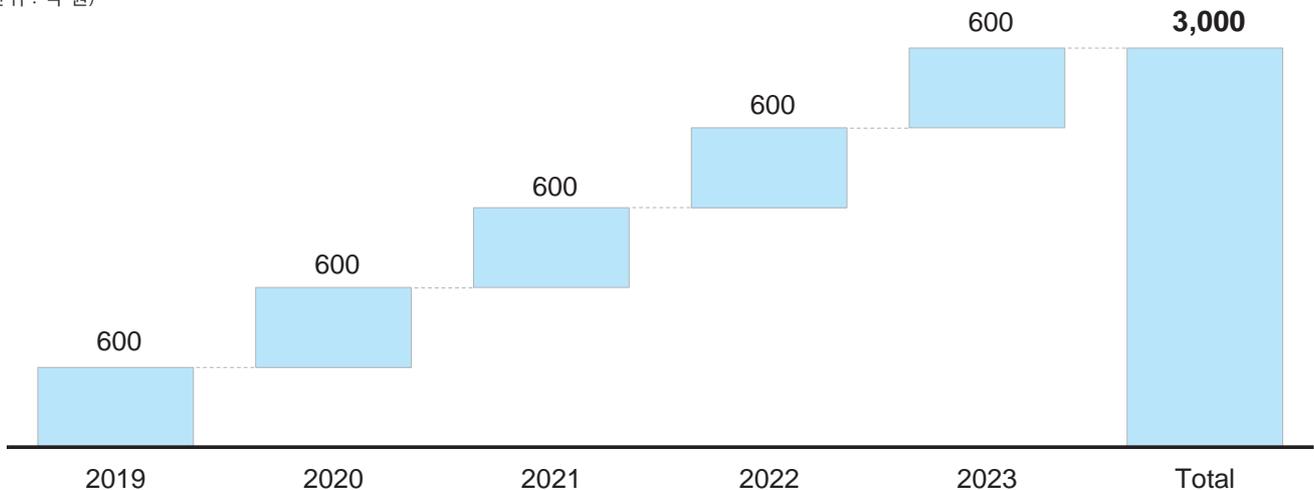
1) 지분 10% 이상 투자하거나, 해당회사에 이사를 파견하여 경영에 참여

재무계획 - 자원조달 계획

사회가치연대기금의 사업활동 추진 및 운영에 필요한 자원은 향후 5년 간 총 3,000억 원 규모로 조달할 예정이며...

자원조달 계획(2019~2023년)

(단위 : 억 원)



2018년 연말까지 3,000억 원 출연 약정 확정, 매년 평균 600억 원 규모 콜 실행

향후 일정(Immediate Next Ste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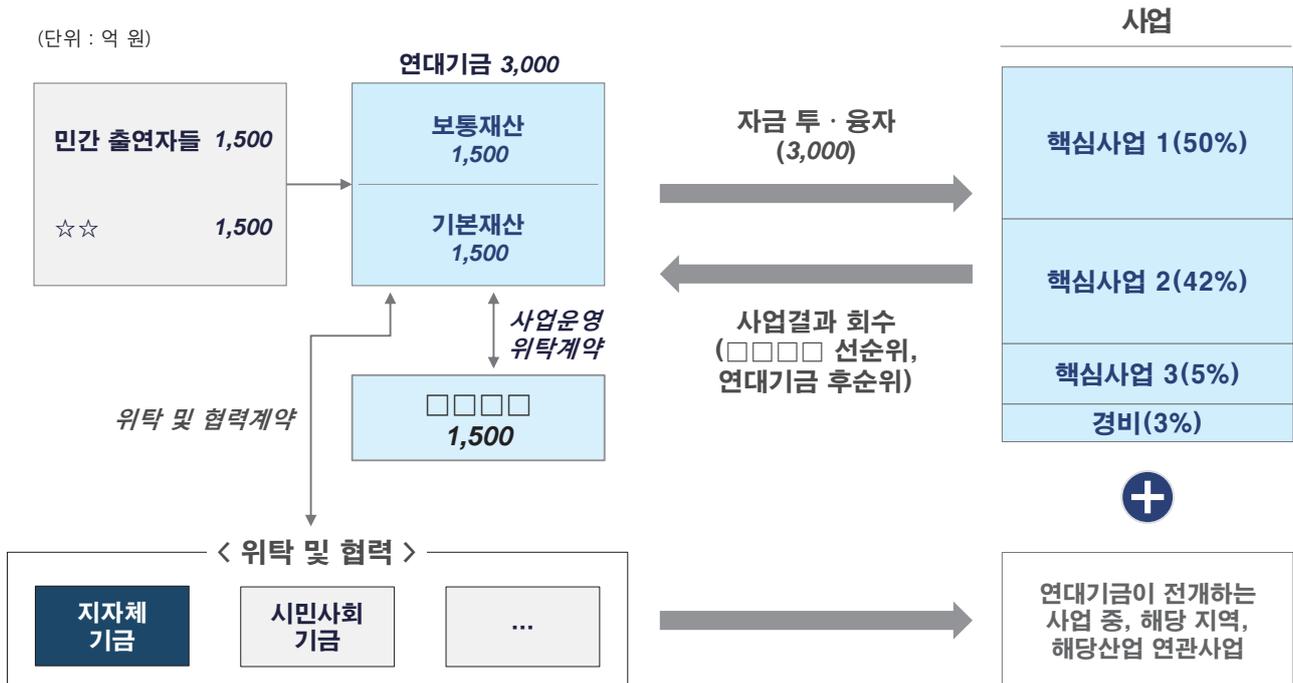
사회가치연대기금추진단은 연내 재단법인 설립 및 등기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활동 추진과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임



1) 2차 재산 출연 확정, 등기사항 보고, 재산이전 보고 및 신고

지자체(기금)등과 협업 제안 - 실행구조

연대기금과 지자체 기금이 별개의 독립된 주체로서, 연대기금이 전개하는 사업 중 해당지역 연관사업에 대한 위탁 또는 협력 사업 실행



지자체(기금)에 대한 기대효과

연대기금과의 공동협력사업 수행 시, 지자체기금은 지자체내 미래복지자산 축적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최소한의 관리 비용을 들여 수행함은 물론 기금 자체의 선순환 달성

01

활용자금을 키우는 효과 : 승수효과

- 안정적 재무수익(5년 만기 국채수익률 이상 수준) 확보는 물론, 지역내 미래 복지자산을 축적하고 사회안전망 구축, 지역공동체 강화, 고용창출, 양극화 완화 등 지역내 다양한 사회적 성과 창출에 기여하는 활동을, 지자체 자기자금규모 보다 승수로 활용

02

기금사업 운영 효율성 및 효과성 극대화

- 연대기금과 다양한 파트너(중개기관, 상호금융기관, 지자체 등)의 전문성 및 경험 등을 활용하여 사업발굴/기획-재원조달/투자-운영 및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되는 동시에, 기금의 자체 운용인력을 과다하게 투입할 필요성 감소

03

기금 자원 선순환 촉진 : 촉매효과

- 청산 시 사회가치연대기금의 세컨더리 역할로 기금 투자자금의 회수를 촉진함으로써 기금재원의 선순환 촉진(촉매효과)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공제사업단 소개

[2018. 10]

기관소개-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자조·협력·연대에 기초한 약 1,000개 사회적기업으로 구성된 전국네트워크조직



공제기금의 기능

사회적경제 손실방지기능	사회적기업의 부도 방지 및 국가 경제적 손실 예방
사회보장적 기능	다수의 취약계층 종사자의 일터인 사회적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고용 안정화 및 긴급 생계 안정 등 사회보장 기능수행
사회적기업 자조 실현	공제부금 납부라는 자조적 노력으로 재원을 조성함으로써 외부 지원에 의존하는 도덕적 해이 방지
영세사회적기업자금지원	신용력 및 담보취약으로 기존 제도금융권에서 소외된 영세 사회적기업을 지원하여 국가경제 하부기능 수행



공제기금의 목적

<p>상호부조정신 고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 및 종사자 스스로 납부한 부금을 재원으로 조성해 사용함으로써 상호부조의 정신을 이어나감 	<p>경영안정 도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 경영 자금 및 상해 보상 자금 등의 필요 시 적립된 재원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도움 	<p>정책기반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 공제기금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을 이끌어냄으로써 지원 정책의 실효성 강화
--	---	---

2014

- 공제 규정 마련
- 부금납입 개시
- 수출입은행 후원 개시
- 기금 운영 사무 위탁

2016

- 장기대출상품 개시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개시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 희망씨앗, 희망일터 사업 개시
- 사회적경제종사자 소액대출 개시

2015

- 공제회원 100개 기업
- 기금 사무위탁중료, 직영 개시(공제사업단 발족)
- 수출입은행 3년 후원 협약

2017

- 미혼모 소액대출 개시
- 사람마중(사회적기업) 복지기금 위탁 운영
- 은평구 사회적경제 활성화기금 심사운영기관 선정
- NH - 서대문 청년상가 컨설팅 기관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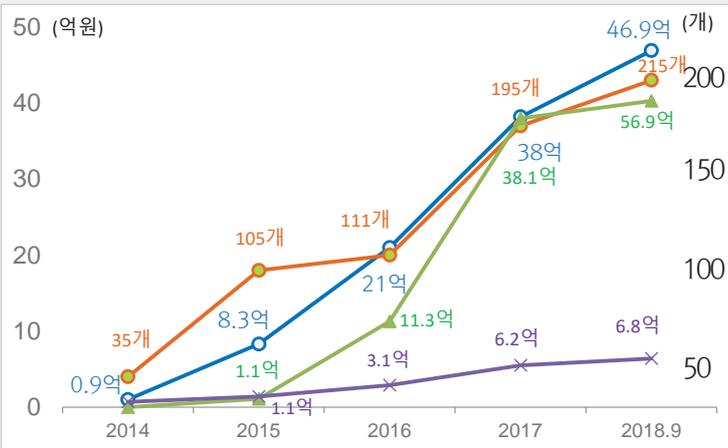
외부기관명	활동기간	활동내용	금액	비고
수출입은행	'15.11~현재	사회적기업 연대공제기금 5년 5억 기부 신사회구성원 사회적기업 지원 (희망씨앗, 희망일터)	5년간 16억	MOU체결
고용부-금감원-전국은행연합회	'15.07	사회적기업 금융지원 및 판로확대 업무협약	1억	MOU체결
우리은행	'15 ~ '16년	사회적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	2년간 2억	MOU체결
한국크레딧뷰로(KCB)	'16 ~ 현재	신용정보 조회 업무 지원	무료사용	MOU체결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16 ~ 현재	종사자/미혼모 소액 대출, 연합모금 매칭 기부	2년간 4억	MOU체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1 ~ 현재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지원 기관	3년 18억	MOU체결
서대문구청/한국토지주택공사	'17.10 ~ 현재	서대문구 청년창업 육성 컨설팅	2년 1.8억	MOU체결
한국임팩트투자네트워크(KIIN) 회원활동, 사회가치기금 추진단 추진위원, 임팩트금융국가자문위원회(NAB) 위원, 원주협동기금토론회(2015.9), 광주사회적금융토론회(2017.1) 등 각종 사회적금융 토론회/포럼 등에자문, 패널 등으로 토론회 참여				

주요 사업 및 실적

기금사업	공제회원가입 및 부금관리	공제회원기업 대출 지원	(취약계층) 중사 자소액대출	미혼모 소액대출
창업육성 성장지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나-서대문 청년상가 육성	희망씨앗 전파사업	64개 창업팀 육성, 30개 사회적기업 성장지원, 2016년 서울지역육성기관평가1위, 2017년 우수육성기관 선정, 지원금약18억연계
일자리창출	희망일터 지원사업	19개 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단체에 41명 다문화, 난민, 탈북자, 중도입국청소년 등 신사회 구성원 인턴연계, 고용 훈련하여 17명 고용연계		



기금규모 (2018.09)



조성규모 2014년 1.5억 2015년 8.3억 2016년 21.3억 2017년 38.2억 2018.4 46.9억	공제회원수(누적/연말) 2014년 35개 2015년 105개 2016년 111개 2017년 195개 2018.9 215개
대출규모(누적) 2014년 0원 2015년 1.1억 2016년 9.6억 2017년 36.3억 2018.9 56.8억	결손보전기금(누적) 2014년 0.6원 2015년 1.1억 2016년 3.1억 2017년 6.2억 2018.9 6.8억 (15%)

공제기금 조성 현황 (2018.09 단위: 천원)

합계	회원 부금	기부금	서울사투기금 서민금융진흥원
4,697,689	2,736,500	686,189	1,275,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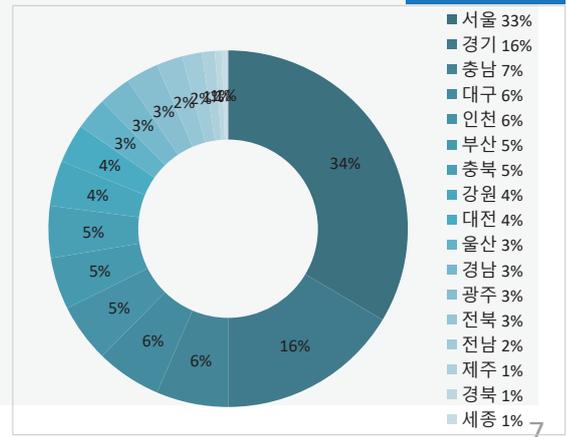
기금소개

공제 가입 및 부금 현황 (2018.4)

- 가입대상: 예비/인증 사회적기업, 기타 사회적경제조직, 소셜벤처 등
- 부금납입: 월 10만원 ~ 100만원 (10만원 단위), 3년/4년/5년
- 가입기업: 174건 (누적 206건, 해지 32건)
- 기업당 평균 가입금액: 약 68만원 (174건의 월 납입부금 총액 약 1억)
- 기업당 평균 가입기간: 약 43개월

월부금액 및 약정기간	36개월	48개월	60개월	합계
100 만원	65	12	31	108 (50.2%)
60~90 만원	2	1	0	3 (1.4%)
50 만원	18	5	6	29 (13.5%)
10~40 만원	54	11	10	75 (34.9%)
합계 (비율)	139 (64.7%)	29 (13.4%)	47 (21.9%)	215 (100%)

지역 분포



기금소개

기업 대출 (2018.09, 천원)

- 대출자격: 공제부금 4회 차 납부 후 (상시접수)
- 대출기간: 최대 6년 이내
- 대출한도: 부금 3배 이내 신용
부금의 5배 이내 담보 대출
- 이자율: 최고 3.75% (부금내 2%)
-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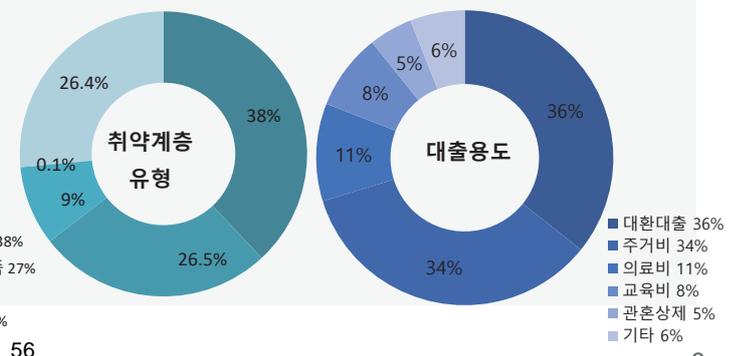
(단위: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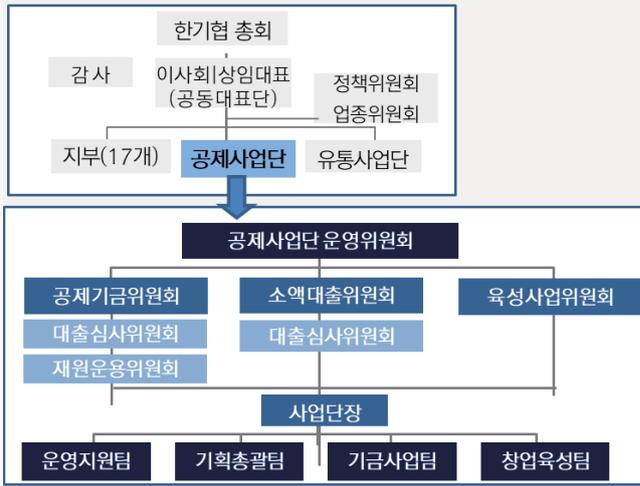
대출 총액 (261건)	상환 총액	대출 잔액	연체금액
5,687,239	2,803,762	2,883,477	43,336(1%)

구분	기업대출 (184건)		개인대출 (77건)	합계
	단기	장기		
건수	95건	89건	77건	261건
총액	1,925,400	3,280,199	481,640	5,687,239
	4,348,320		481,640	

개인 대출 (2018.09, 천원)

- 대출자격: '서울소재' 사회적경제 종사자 (상시접수)
'서울소재' 미혼모/한부모 (상시접수)
- 용도/한도: 긴급생활자금 500만원(2.5%, 저소득층무이자)
대환대출 1,000만원 (이자율 3.5%)
- 상환방법: 원금균등분할상환, 만기일시상환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책
공제사업단 운영위원 (기금위원)	하정은	공제사업단 단장
	변형석	(사)한기협 상임대표
	민동세	(사)한기협 부문 대표
	이준호	삼우세무회계
	강우석	한국수출입은행사회공헌팀장
	이해정	법무법인 동화 변호사
	최병권	EY한영 어드바이저리 상무
	최은숙	사회복지공동모금회기조실장
	장대철	KAIST 경영학부 교수
	이은애	서울사회적경제센터센터장
공제대출 심사위원	신민욱	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이사
	이영기	법무법인 자연 변호사
	이강은	한국수출입은행사회공헌팀 차장
소액대출 심사위원	황정은	송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김인선	동부여성발전센터장
	박영미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대표
육성사업 운영위원	김동헌	에피투스 컨설팅 대표
	오호진	(주)명량캠페인 대표
	김준성	제이랩컨설팅 대표
	김정열	(주)리드릭 대표

단장 하정은	現 공제사업단장 / 임팩트투자국가자문위원 / 사회가치기금 추진단 위원 / 서울시사회투자기금 운용심의위원 / 화성시 사회투자기금 운용심위원 /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분과위원 / 서대문구일자리위원회 위원 / 마포구, 양천구, 과천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舊 함께일하는재단(10년) / 대한민국국회 4급 보좌관(1.5년) /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사무국장(7년) / AICPA, 사회복지사, 중등교사				
성명	담당업무	주요경력	성명	담당업무	주요경력
김선영 (42)	사업기획 (3년)	現 공제사업단 기획팀장(3년) / 청년자립지원센터 브리치 이사 / (사)씨즈 이사 / 現국가임팩트자문위원 / 舊 함께일하는재단(8년)	곽도훈 (39)	기업대출 (1개월)	공제사업단 매니저 / KB부동산신탁(10년) 투자자산운용사, 자산관리사, 공인중개사
김규성 (45)	사업운영 (11개월)	現 공제사업단 운영팀장 (1년) / 청년자립지원센터 사업팀장 / 舊 함께일하는재단(9년)	김도연 (20)	회계출납 (1.5년)	現공제사업단 매니저 (1.5년)
양미옥 (29)	개인대출 (1년)	現 공제사업단 매니저 (1년) / 舊 (주)도움과나눔(2년)	김현미 (41)	기업지원 (2.5년)	現공제사업단 사업팀장(2.5년) (재)함께일하는재단(8년)

(1) 신용 리스크 관리

가. 한도관리

- 납부한 부금의 최대 5배까지 (신용 3배, 2천만 원 이내 10배)

나. 신용/담보 가치평가

- **신용**
 - 부금납입기간, 연체, 납입금액
 - 추천서
 - 개인대출 신용등급(KCB) 참고
- **담보(기업대출만 해당)**
 - 부동산, 차량, 저당 설정
 - 보증금, 매출채권 등 채권양도계약
 - 인적 담보
- **경영지원 등 사후관리**
 - 대출기업 재무제표 매년 수집, 추적관리
 - 추가지원/핀로 연계, 세무/회계/법률 경영지원
 - 개인대출자 적정소비노트 배포
 - 무료재무코칭(3년간 13명), 직원전체 재무교육
- **대손충당금설정**
 - 추정,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3~100%)

다. 심사(사전적 리뷰)

- 위원구성: 관련 전문가 등 7인 이내
 - 역할: 대출여부, 대출규모, 대출절차, 조건부 대출 등을 심사하여 결정함
- * 대출수요에 빠른 대응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 (15일 이내)

매 케이스 축적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심사운영 방안을 지속 개선

내용	비고	기간
대출신청 접수	신청서, 첨부자료 보완 등	3일
적격여부 판단	대출자격 여부 확인, 심사위원회 소집	5일 이내
(현장실사)	(필요에 따라)사실관계 확인, 타당성 조사	9일 이내
심사	심사관리위원회 회의	13일 이내
승인, 입금	약정서 체결	15일 이내

(2) 자본관리 및 자산 리스크 관리

가. 자금조달-회수 불일치 조정

- 부금납입기간 60개월 연장
- 부금유지(예금전환)

나. 결손보전기금 9% 관리

연도	자산	결손보전기금	비율
2014	0.9	0.6	33.3%
2015	8.3	1.1	13.2%
2016	21	3.2	15.2%
2017	41	6.3	15.3%
2018	60	6.8	11.8%

다. 지속가능한 수익을 유지

- 2% 초반대 자산운용 수익률 유지
- 조달부채 대비 약 110% 수준에서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
 - 평균 1% 운용: 40% (유동성 포함)
 - 평균 2% 운용: 30%
 - 평균 3% 운용: 40%

라. 대여금 및 부담금리 운영방안

- 3%이상 운용한도 16억, 대출건당 1.5억 이하 한도
- 부담이자 수준 높을 경우, 만기 장려금 수준 조정 (* 부금 이자 기부 약정 체결 등)

(3) 유동성 리스크 관리

- 유동성 비율 15% 관리 (현재 47억 중 6.8억 현금성 유동 자산 유지)

(4) 운영 리스크 관리

- 신용보증보험 의무 가입
- 공제기금 운용요강 지속 개선, 준수
- 운영위원회, 재무위원회, 심사위원회(수시) 정기적 운영, 사업검토
- 전문 대부시스템 개발 업체에 용역 진행 중

공제기금 발전 방향

가. 조직 형태: 기금 ⇒ 사업단 ⇒ 재단설립(2019년)

나. 자산 규모: 8천만 원 ⇒ 10억 원 ⇒ 100억 규모

다. 대상 확대: 사회적기업 ⇒ 사회적경제

라. 상품 확대: 보험공제, 종사자 복지기금, 임팩트투자 등

2014년 공제기금

- 기금관리 위탁운영
- 자산 8천만 원
- 리스크 헷지 자금 확보

2015년 공제사업단

- 독립 조직 준비 (법인 미독립 상태)
- 자산 10억
- 개인 대출 개시
- 보험 개시

2019년 공제조합(재단 설립)

- 법인독립
- 자산 100억 이상
- 사회적경제 전체로 확대



저소득주민의 든든한 생활안전망

전국주민협동연합회

(자활공제협동조합연합회)



목 차



- 01 주민협동회(지역)
- 02 전국주민협동연합회
- 03 지속가능한 자조금융



PART 1. 주민협동회



PART 1 주민협동회 출범배경

1990년대의 생산공동체운동부터 이어진 주민자치조직

01 생산공동체

1970's 이후 빈민밀집지역에서 조직되어 온 주민운동

02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을 통해 가난한 주민들의 경제공동체 구현/탈 빈곤을 넘어선 공동체적인 사업과 조직화

03 주민협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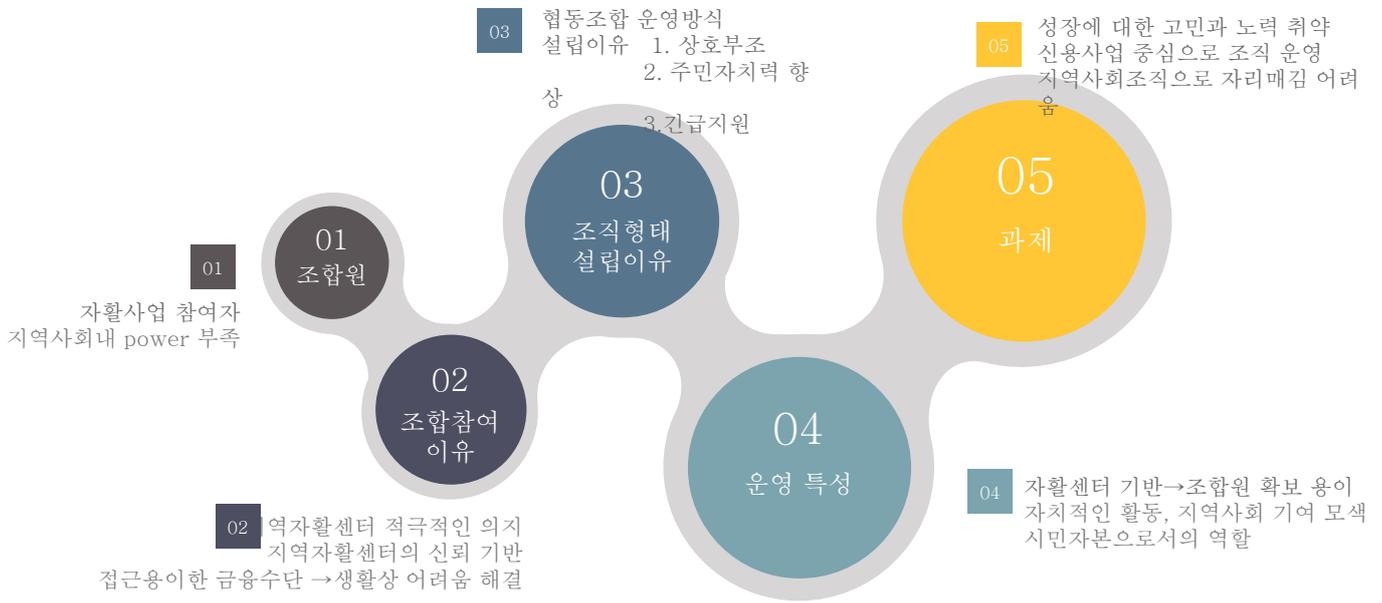
신용조합이나 상조회 등의 주민자치조직



PART 1

지역주민협동회 특성

지역자활센터의 주민조직화 사업의 시작



PART 1

지역주민협동의 정의

- 주민협동회는 **지역자활센터 참여 주민들과**
- **지역의 저소득주민들이 중심(취업상조회, 동자동, 청년연대)**이 되어 출자금을 조성하고
- 긴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할 때 신용으로 대출하여
- 어려움에 처한 조합원을 협동으로 도우려는
- 자조운동입니다

PART 1 지역주민협동회 사업내용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1. 조합원 출자와 여신사업을 전개
2.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생활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 확장
3. 다양한 영역에서 협동조합들과 협동하고 연대 → 지역자원의 협동운동으로 성장



출자금과 대출

- (출자)
매달 출자금 납부 → 계획경제 실천
자조금융활동 근간
- (대출)
조합원의 긴급한 생활자금의 필요를 해결



교육훈련

조합운영능력 향상과 민주적 운영을 위한 교육 진행
공평한 교육훈련 기회 제공
조합원이 주인되어 운영되는 협동조합 원리가 실천으로 연결되어 지도록 노력

PART 1 주민협동회 사업내용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들



조합원 소모임 활동

조합원간 교류확대와 조합활동 활성화
조합원간 친밀감 도모, 협동정신 → 조직력 강화
지역사회 기여활동으로 발전



공동구매

자활상품 또는 건강한 먹거리를 적정가격에 공동구매
물품이 필요한 조합원에게 구매기회 제공
자활생산품 유통구조 → 전국적 협동경험



지역사회와의 협동과 연대

더 큰 힘을 만들어가는 협동조합의 협동 "연대"

PART 1 지역주민협동회 신용사업

지역 출자금 규정 표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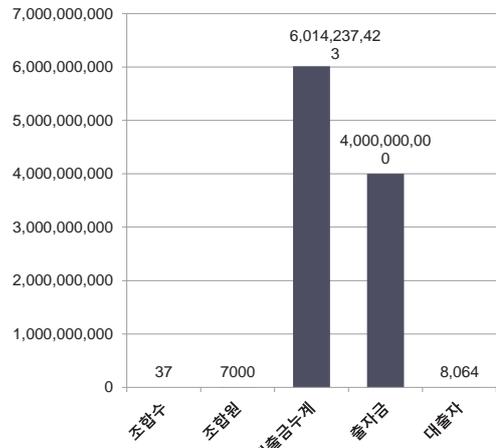
출자 1좌의 금액은 5,000원으로 하며, 매일 최대 5좌수 25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대출금

한 조합원에 대한 일반대출금의 최고한도는 50만원 이하로 한다. 단 본인 출자금이 50만원 이상일 경우, 최고한도는 100만원, 100만원 이상일 경우 150만원, 150만원 이상일 경우 200만원 이하로 한다.

□ 대출분류

- ① 일반대출 : 조합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6개월 10좌수 이상 출자한 조합원에게 대출 (10개월~20개월 이내)
- ② 범위내대출 : 조합원의 출자금 90% 한도내 대출(10개월~20개월 이내)
- ③ 긴급대출 : 조합원 또는 조합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이 재해와 불의의 사고로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때의 대출(6개월 이내)
- ④ 소액대출 : 출자금액에 관계없는 3개월 이내의 회전성 소액자금의 대출
- ⑤ 특별대출 : 조합의 목적에 동의하는 법인 및 단체에 대한 특별대출
- ⑥ 주거대출 : 연합회와 매칭하여 조합원에 대출



PART 1. 주민협동회 동연합회

참여와 연대로 행복의 버팀목을 만드는 자활공제협동조합
자활공제협동조합연합회 제8차 정기총회

일시 : 2018년 11월 26일(금) ~ 27일(토) 장소 : 경천매인 농촌사립학교 주관 : 자활공제협동조합연합회



PART 2

전국주민협동연합회 결성과정

지역자활센터 참여주민의 생활안전망, 조직화를 통해 전국연합회 창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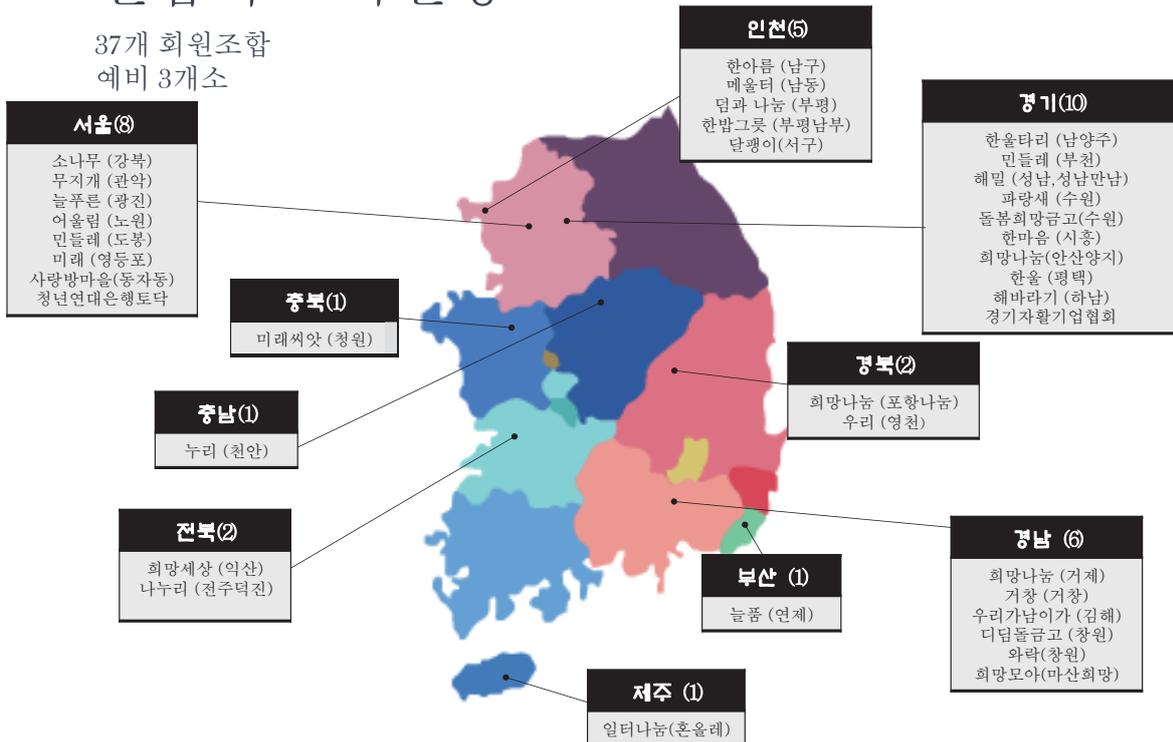


- ◆ 지역자활센터의 관심사 중 하나, 참여주민의 생활안전망
⇒ 자연스러운 주민자치조직 출현
- ◆ 2009. 한국자활협회에서 자활공제협동조합연합회 결성 추진, 추진단 구성
- ◆ 2010. 순회간담회, 자활공제협동조합 아카데미 개최
- ◆ 2010. 6월 23일 창립총회

PART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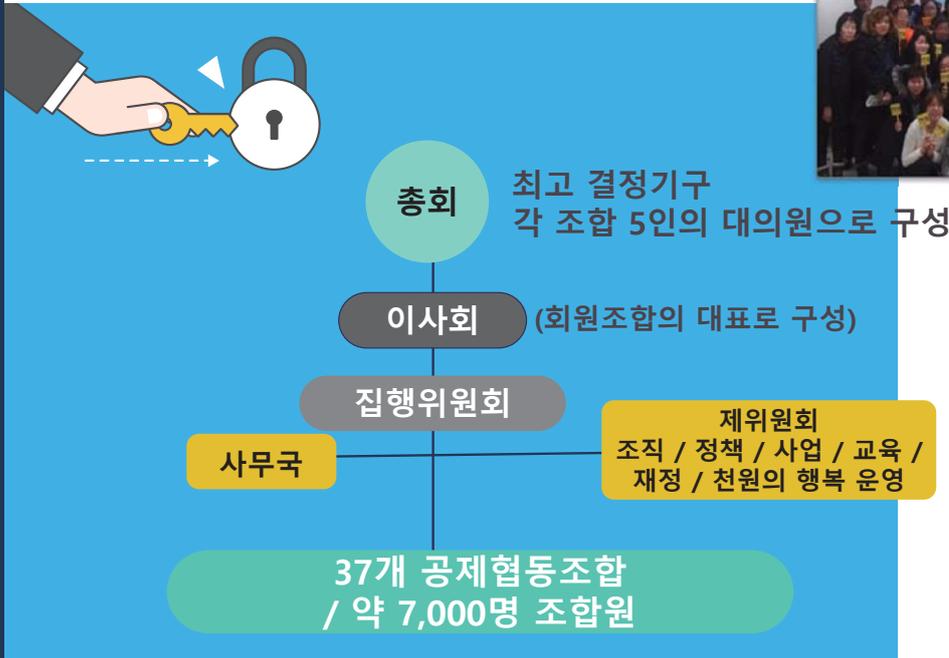
연합회 조직현황

37개 회원조합
예비 3개소



PART 2 조합원 참여구조

<총회-이사회-집행위원회> 의사결정 구조



PART 2 전국주민협동연합회 주요사업

공동체적 조직사업을 바탕으로 일군 자조금융

기금운용

지역출자금 중 10%를 연합회로 출자하여 기금으로 조성,
자금이 필요한 사회적경제기업에게 대출하여 어려움을 함께 해결

교육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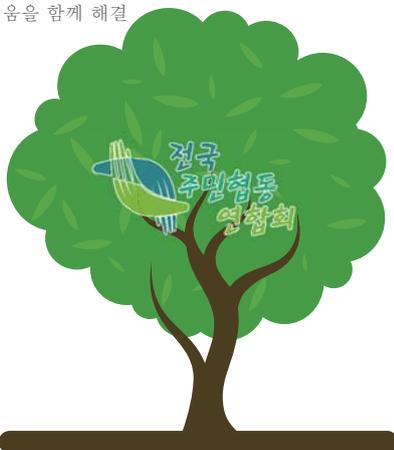
자활협동운동 아카데미
주민협동회 설립과 확산
-> 지역별 아카데미
-> 센터장과 실무자 아카데미
-> 참여주민 지도자 아카데미

상호부조사업

조합원 의료비 지원사업<천원의 행복>
2016년 시작,
조합원 118명에게 의료비 지원

정책활동

사회적경제 토론회 참여 및 박람회 참석
사회적협동조합 <우리함께> 설립



공동구매

안전하고 믿을수 있는 상품, 자활생산물, 사회적경제기업 생
산물등
생산자-소비자 직거래 원칙

지역조합 회계프로그램 전산화

투명하고 체계적인 조합 회계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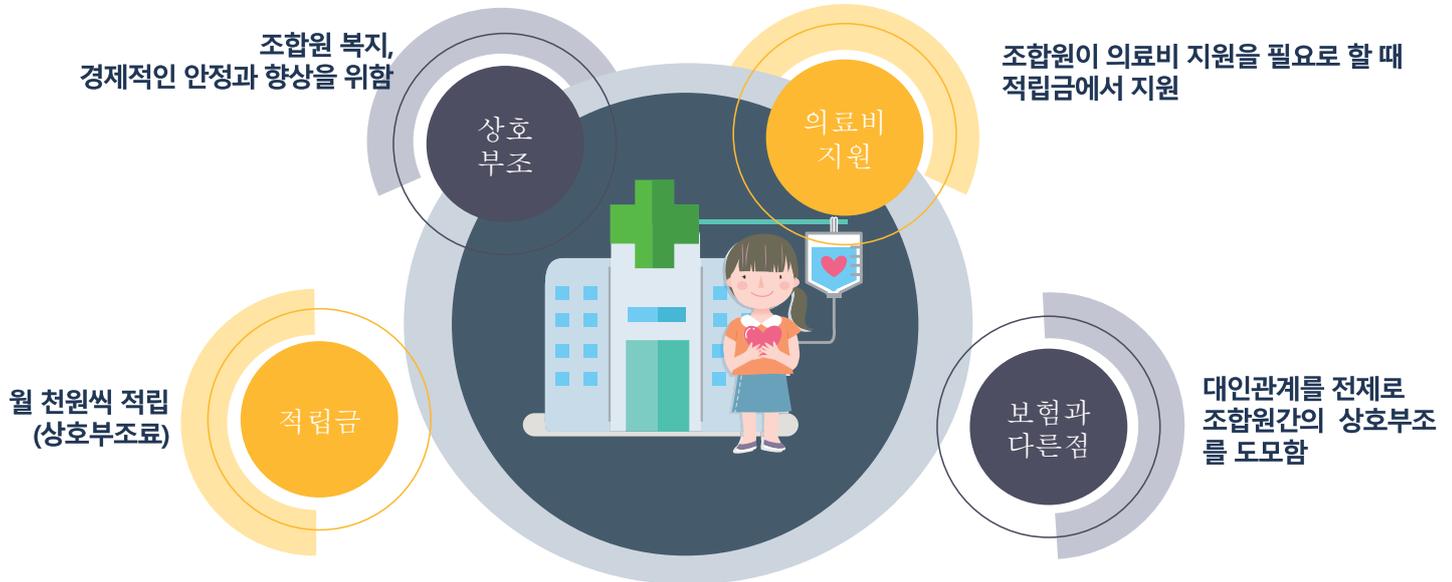
연대활동

한겨레두레 더불어살
사회적경제연대회의 회원단체
일본노동자협동조합 및 위키즈공제 연대
활동

PART 2

의료상호부조사업 『천원의 행복』

아픈 조합원 위해 전국 주민협동회가 함께 하는 상호부조 협동운동



PART 2

의료상호부조사업 『천원의 행복』

협동으로 만드는 생활안전망



3년간

1,400명의 조합원이

협동하여 만든 공제기금 4,000여만원

117명의 조합원에게 의료비 2,900만원 지원

PART 2

회비 납부

조직력을 위한 모금

조합원의 멤버십 강화를 통한 연합회 내부 조직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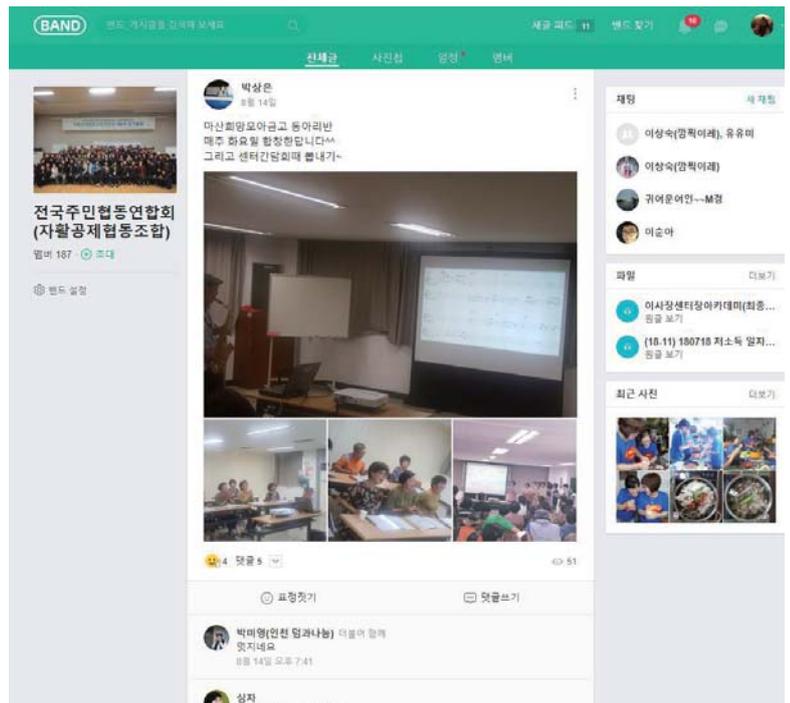
- 2013년 정기총회에서 의결
- 연 1,300만원이 납입
- 조직력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는 사업 집행



PART 2

소통채널

일상적 소통을 통한 결속력 강화



PART 3. 지속가능한 자조금융



PART 3

출자금 운용-신용사업 : 지역조합 출자금(매년 10%)으로 연합회에서 운용 출자금은 '서로 돕는 돈'이다



1

일반대출

회원조합의 설립과 운영, 조합원 주거대출 지원

- 회원조합 운영지원 대출한도 1,500만원 / 주거대출 한도 350만원(지역조합 1:1매칭)
- 운영지원 대출 이율 없음 / 주거대출 이율 연 2%

2

공동체대출

자활기업, 사회적경제기업 등 운영지원

- 대출한도 2,000만원
- 이율 연 3%

4

사업대출

연합회 운영

- 대출한도 3,000만원
- 이율 없으나, 연대 모두 상환

3

안전대출

회원조합이 불의의 사고로 자금이 필요할 때

- 대출한도 1,000만원
- 이율 연 2.5%

5

특별대출

한국협회와 지부 운영

- 대출한도 2,000만원
- 이율 없으나 연대 모두 상환

PART 3

출자금 운용-신용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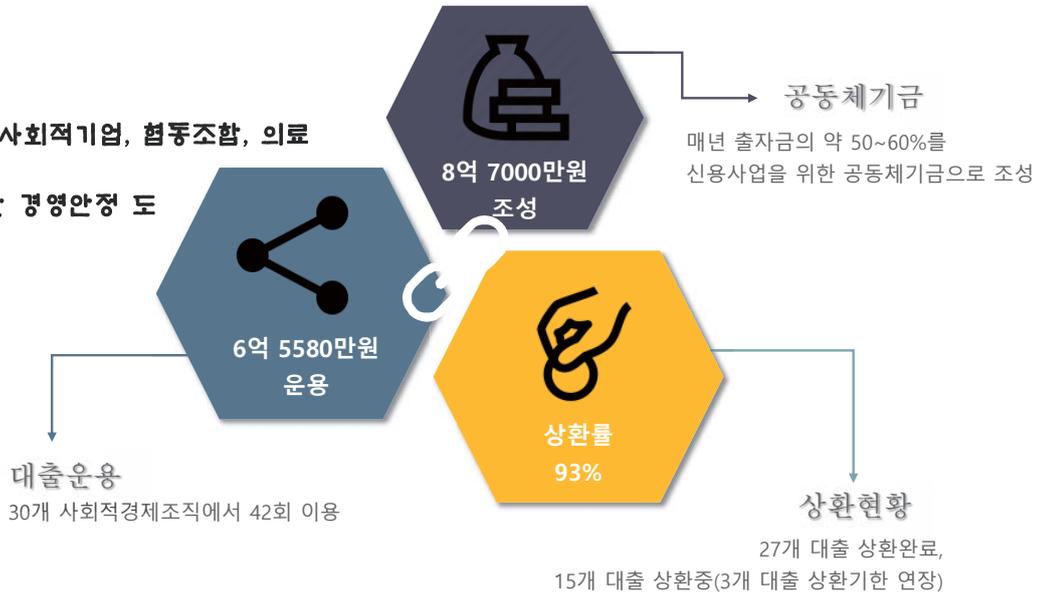
조합원 모두가 공적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용하는 협동기금

- 기금지원 개시일**
- 대상**
- 목적**

2013년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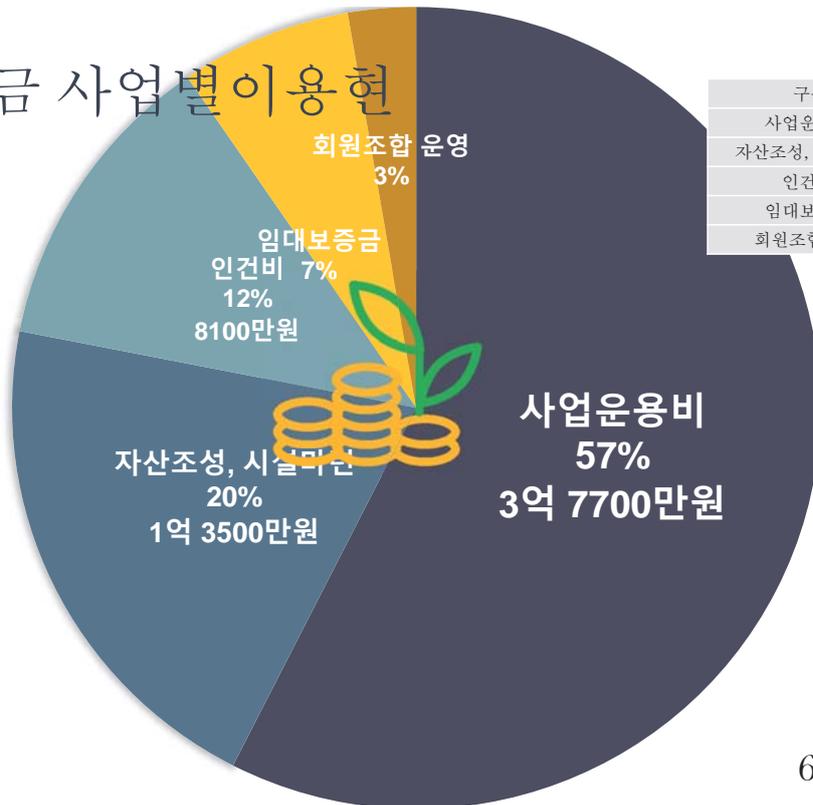
사회적경제조직
(회원조합,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의료

사협)
긴급자금 지원을 통한 경영안정 도
모



PART 3

공동체기금 사업별이용현황



5년간
6억5,580만원 운용!!

PART 3 기금심사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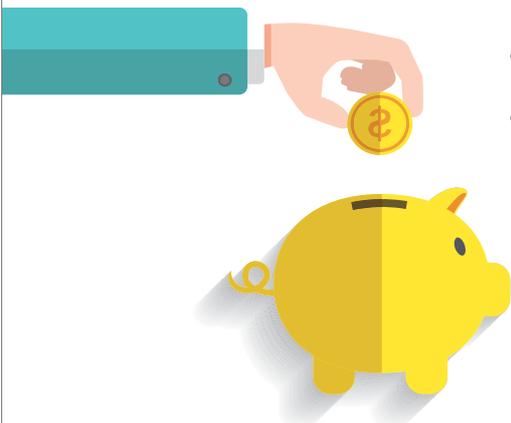
협동으로 운영되는 대출기금



PART 3 기금운영 리스크 관리

상환 불이행 및 연체해결

- '협동기금(관계금융지향)' 운영 : 구체적 리스크 관리 어려움
- 상환요청 공문
- 재정위원회 회의를 통한 개인면담
- 회원조합 출자금에서 우선변제 (논의중)
- 대출기금 이자수입을 통한 '대손충당금' 적립



PART 3

출자금 적립 및 배당

출자금은 '이야기가 있는 돈'이다.



소모성 회비가 아닌

원금이 보존되는 기금

-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
- 대손기금 적립
- 재정위원회를 통한 기금활용 논의
- 이사회 의결을 통한 추진
- 신용사업을 통한 이익금은 배당

PART 3

가치투자를 통한 우리터전 마련

출자금은 '사업 밀착'으로 내는 돈을 뜻한다



대기업 불리는 예적금 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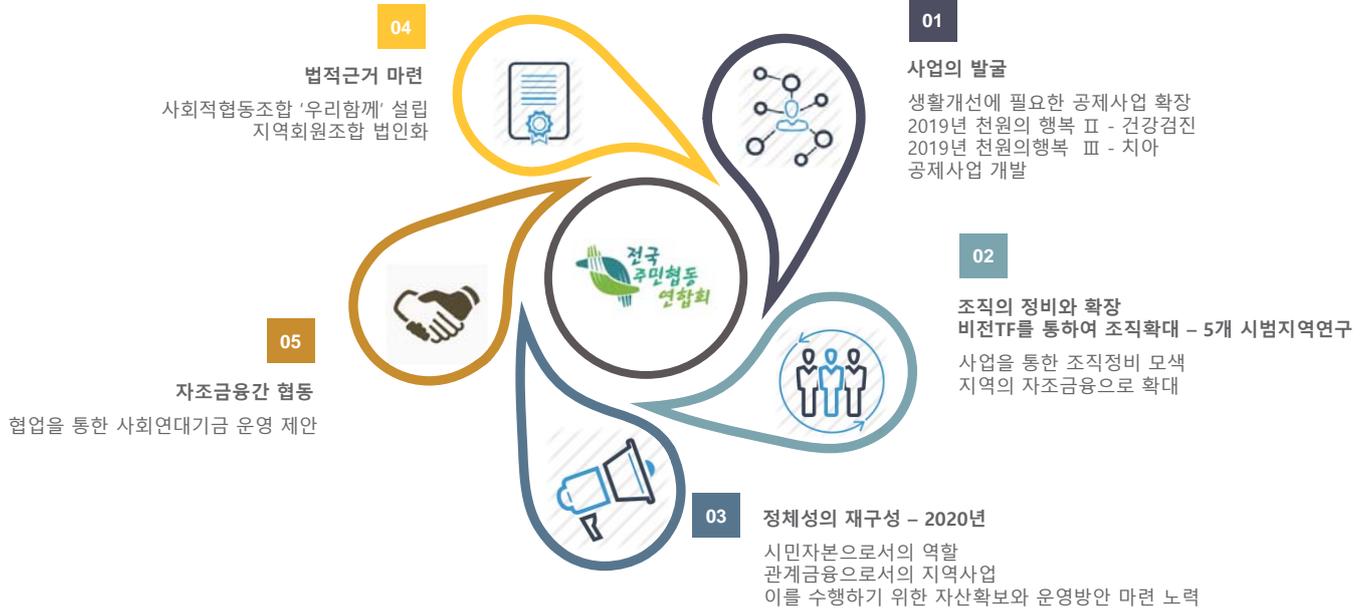
우리의 자조금융에 출자하기

- 예적금을 모아 가치있는 투자처에 출자
- 뉴스앤조이 건물구입에 출자
- 연 4%의 이익배당(조합3%, 연합회1%)

PART 3

지속가능한 자조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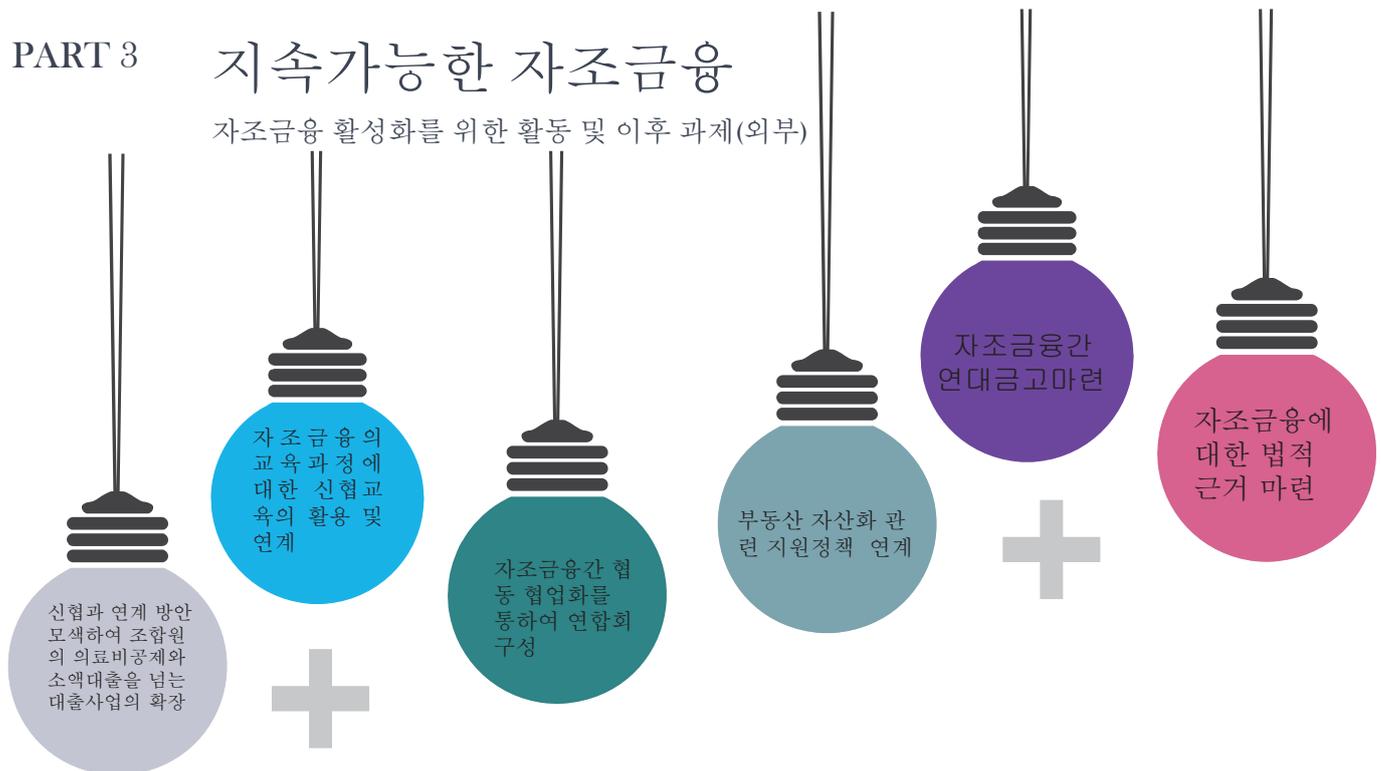
자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활동 및 이후 과제(내부)



PART 3

지속가능한 자조금융

자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활동 및 이후 과제(외부)



조합원이 주인입니다.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을 합니다.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로 나아갑니다.

신협의 사회적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정복수

1. 신협과 사회적경제 · 사회적금융

▫ 사회적경제란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을 위하는 경제조직 및 경제활동을 말하며, 사회적 금융(Social Finance)은 민간투자·국가재정활동에 의하여 금전적·재무적 이익과 함께 사회적 목적 달성 등 비재무적 수익까지 고려하는 금융 활동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로서,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투자·융자를 함으로써 사회문제의 해결과 동시에 투자자의 수익 보장을 추구하는 금융 등을 들 수 있다.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 지원, 법률체계 등 인프라 구축, 사회적금융 육성, 전문인력 양성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경제활성화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금융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똑같이 요구되는 바,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한 다양한 수요와 공급을 원활하게 연결시켜 줄수 있는 사회적금융 중개기관과 효율적인 금융 지원시스템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발전이 정부주도로 추진되어 왔고 현재의 사회적경제도 정부주도로 추진되는 경향이 강한데, 그간의 사회적 경험에 비춰볼 때 정부의 개입이 확대되면 민간부문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태동 단계의 사회적금융시장도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과 지원보다는 지역사회의 경제 부문에 대한 정보와 주민들과의 관계가 밀접한 신협 등을 통한 간접지원방식 혹은 사회적금융에 대한 리스크를 분담하는 보증확대 등의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 정부주도의 사회적경제활성화 지원정책이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는 하방 경직성이 강한 행정조직의 성격상 사회적 경제의 복잡성과 사회적 경제조직의 다양성을 모두 충족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신협 등 지역금융기관들은 길게는 50년이상 지역주민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지역의 각종 정보와 지역사회내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들

조직을 통한 지원이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신협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협은 태생적으로 조합원의 사회적 지위 향상이라는 사회적 가치와 지역사회 공헌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여 왔다. 따라서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이념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고 경제적 조직으로써 사업성도 확보하고 있으므로 사회적경제 지원 조직으로써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현재 전국의 사회적 경제 조직 수는 17,000여 개로 파악되는데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은 총 14,939개이며 이를 신협중 지역사회에 뿌리를 둔 지역신협으로 배분하면 1 지역신협 당 약 17개 조직에 해당한다.

<신협 및 일반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역별 현황>

기준년월 : 2018-09

(단위 : 개)

지역별	신용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사회적기업			1지역신협당 사회경제조직수	
	소계	지역	직장	단체	소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서울	120	59	43	18	3,414	3,051	363	58	서울
부산경남	111	70	22	19	1,694	1,424	270	89	부산경남
대구경북	103	83	10	10	1,349	1,156	193	32	대구경북
인천경기	142	109	20	13	3,020	2,556	464	48	인천경기
광주전남	90	70	9	11	1,587	1,380	207	48	광주전남
대전충남	102	84	15	3	1,277	1,114	163	49	대전충남
강원	39	32	6	1	827	715	112	26	강원
충북	81	71	5	5	501	414	87	7	충북
전북	71	59	7	5	999	876	123	17	전북
제주	30	29	-	1	271	223	48	9	제주
합계	889	666	137	86	14,939	12,909	2,030	17	

2. 신협의 사회적경제 참여 및 사회적금융 지원 사례

- 동작신협 사회적경제 융자사업.

2013년 서울시와 신협간 협동조합 활성화 협약 체결 이후 2014년 서울

시 사회투자기금 운영기관 선정을 시작으로 사회적경제조직들에 대한 대출을 시행한 이래 2018년 3월 현재 총 81건 70억원의 대출(누계)을 실행하고 있다. 동작신협이 취급한 사회적경제 분야는 사회주택보급, 육아·노인돌봄 등 사회서비스분야, 일반협동조합, 햇빛발전소 시설자금 지원, 대학생 공제조합 지원, 그리고 상생협력대출 이다.

또한 금융지원 뿐만이 아니라 청년부채 제로캠페인을 통한 경제적 자립 및 지역사회 협동조합운동의 리더 양성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 북서울신협 가치지향금융

클라우드펀딩 대회 개최를 개최하여 19백만원의 펀딩을 조성하여 조합의 자금과 매칭하여 대출을 실행하였고, 한양대 등 4개 대학교에 키다리은행을 결성하여 대학생들이 자조기금을 조성토록 지원하고 있으며, 공동육아 대출 및 주택협동조합에 금융 지원을 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문화예술동아리 운영등 지역사회 관계망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 주민신협과 지역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주민신협의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금융지원은 사회적경제조직간 네트워크 형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민신협이 직접 참여하고 의료생활협동조합 등 일반협동조합을 만들고 이들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조합원 출자배당금의 약 1%씩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협동조합 상생대출 및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맞춤형 지원대출을 실행하고 있다.

3. 신협이 사회적 금융기관으로써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회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 신협의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금융 지원 강화

신협은 신용대출 및 지역금융 확대를 통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신협의 신용대출 비율은 1997년도 이전에는 50%를 넘을 때가 있었으나 IMF 이후 정부 규제강화 등으로 신용대출이 급속히 감소하였지만 단지 외부적인 요인 만이 아니라 신협 이념 부재에 따른 수익추구 지향의 결과 신용대출에 대하여 소홀했던 점도 없지 않다.

(동작신협. 북서울신협 사례)

▣ 신협의 사회적경제 플랫폼 역할 수행

신협은 사회적금융 지원기관의 기능에서 더 나아가 사회적금융 및 사회적경제 플랫폼의 역할도 수행하여야 한다. 신협은 해당 지역내 정보 보유와 관계망 구축이라는 잇점을 살려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정보와 자원을 공유하고 활용함으로써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허브역할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협력공간을 제공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경영컨설팅 등 경영능력 제고를 통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이 자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주민신협. 동작신협 사례)

▣ 신협과 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들과의 네트워크 구축

사회적경제 조직은 신협을 통하여 금융지원 뿐만 아니라 지원 신협의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판로 개척 및 마케팅 기회를 갖음으로써 경영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고, 신협 또한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활성화됨에 따라 조합원 충성도를 높이고 지역사회 밀착를 공고히 할 수 있음으로 상호간 윈-윈 할 수 있을 것이다.

신협과 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간 네트워크 구축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최근 시작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시사점이 매우 크다.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 효과의 지속성을 위한 유지·관리 시스템으로 마을관리협동조합을 명문화하면서 운영지원 전문기관으로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여부는 마을관리협동조합의 운영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협동조합은 거버넌스가 다양하고 복잡하여 실제 지속적인 사업성을 구축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협동조합 운영의 노하우가 있는 신협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끝.

신용협동조합 사회적금융 추진 계획 및 거점신협의 역할

1. 추진 배경 및 목적

-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안정화, 정부 복지정책 보완, 각종 사회문제 해결 등 사회적가치 창출에 기여
- 사회적경제조직의 일원이자 금융협동조합으로서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 요구에 부응

2. 사회적금융 추진 계획

- **(장기짜리의 인내자본 공급)** 지속 가능한 수준에서 장기짜리의 인내자본 공급
- **(연간 1천억원 이상의 사회적금융 공급)**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대출, 출자 및 투자 등 연간 1천억원 이상의 금융 공급
 - 담보대출 3.0% 내외, 신용대출 3.5% 내외
 - 출자의 경우 신탁법 개정 전제
- **(협동조합 창업 지원 사업)** 신탁의 물적,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협동조합 창업 지원 사업 추진
 - 공간, 교육, 금융, 컨설팅, 판로 등 필요한 지원을 설계하여 제공
 - 인큐베이팅, 창업준비자금대출 병행
- **(세무 회계 프로그램 및 교육 지원)** 사회적경제기업의 세무회계 지원 프로그램(CU비즈쿵) 고도화 및 교육과정 정례화
-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원형) 내 마을관리협동조합 지원사업 추진

3. 사회적금융 거점신협 지정, 육성

□ 금융 공급, 네트워크 참여 등을 통해 사회적금융 평판 형성, 사회적경제기업과 동반성장을 통해 사회적금융을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화

- **(사회적금융 거점신협 지정 & 육성)** 사회적금융을 적극적으로 사업 모델화하고 지역 내 사회적경제 네트워크에 주도적으로 참여
 - 초기 136개 신협 지정, 향후 추진 실적과 활동 내역을 토대로 100개 내외로 안착
 - 연대와 협력 관점에서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과 동반성장 추구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대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출 취급
 - 사회적경제기업 여신심사가이드라인(별도 제정 예정)에 따라 사회적가치 평가를 반영하고, 유사한 조건으로 대출 취급
-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참여)** 사회적경제 관련 지역별 협의체,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민관 협의체 등에 참여
 - 사회적경제 권역별 통합지원기관과 파트너십 구축

4. 기타 고려 사항

- 신협이 사회적경제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금리 수준을 제시할 수 있는지?
 - 신협이 제시하는 금리수준은 정책자금, 지자체기금 등 시혜적 성격의 금융과 동일할 수 없음
 - 사회적경제 내에서 실행하는 대출은 그 자체로서 지속가능해야 함
- 사업 초기 혼선 우려
 - 사회적금융 거점신협 사업이 안착될 때까지 대출조건, 심사기준 등의 차이로 일부 혼선 우려
- 금리상승기 도래
 - 초장기간의 저금리 시대가 종료하고 본격적인 금리 상승국면 진입

서울 사회적경제 & 상호부조형 공유기금 공동조성 계획¹⁾

(서울시사회적경제네트워크,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1. 지난 6년간의 서울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전략에 대한 성찰적 평가 필요

① 부족한 시민자본과 사회적경제의 공유자본이 확충되도록 서울시(공공)의 마중물적인 자원투입을 추진하고, 우호적 생태계 조성에 유리하도록 지원정책을 혁신함

- 사회적경제 관련한 중앙부처들의 관행과 전임 서울시장 재임기의 정책기조를 변화시켜, '시민의 주도적이고 민주적인 참여와 사회·경제·문화적 수요에 기반해 설립·운영되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을 통하여 사회문제의 혁신적 해결과 지역순환경제가 정착되도록(목적) 다양한 사회주체 간에 연대와 공동책임 하에(원리) 경제민주화의 지평을 넓혀나가는 사회적경제의 생태계를 조성(과제)'하는 정책기조를 제창함
- 아울러 이러한 기조를 실현할 효과적인 지원수단들을 개발하여, 서울시 조직들 간에 '4대 공유자원망(공동사업망, 인재양성, 사회적금융, 판로) 구축·기초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지역화 전략·민관협치를 위한 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 굿거버넌스 조성'에 선도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음
- 이는 중앙정부의 정책 주도성이 큰 우리사회에서 매우 의미있는 자치분권적 성과이자 서울시와 사회적경제 리딩그룹 간의 협치의 성과임

② 서울 사회적경제의 연대로 구축한 자주적 공유자원망과 사회적자본의 확충 정도는 걸음마 수준이어서 보다 능동적인 실천전략 요구됨

- 서울시의 정책혁신을 활용한 서울 사회적경제의 문제해결력의 제고나 시민 체감도의 제고는 미흡한 형편이며, 신생 조직들의 '커뮤니티 관계망과 분리된 개별 창업'이 양적 확충을 주도
- 또한 공공의 재정지원이 마중물로써 기능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내부에서 자주적 공유자원망(기금·공간·사업연합 or 업종플랫폼 등)을 확충했어야 하나,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비전과 리스크를 공유하며 공동투자한 연대의 성과물은 미미한 상황임
- 서울사회적경제정책협의회 및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를 표방

1) 본 발표문은 지난 9월 18일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와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서울시 사회적경제 기업들에게 '상호부조형 공유기금 공동조성'을 제안할 목적으로 작성된 제안문을 일부 수정한 것입니다.

하나, 당사자협의체들의 조직화율이 30% 수준이고 회비에 근거한 자립적 조직운영이 어려움. 민민연대를 강화할 자체사업을 구상하나 아직까지 공공 지원인프라의 위탁운영체나 교섭협의체 활동에 주력하고 있어 이를 극복하는 계기를 함께 마련해야 함

2. 서울 사회적경제 공동실천 전략 제안

본 제안은 사회적경제의 공유자원망 구축시 우선과제로 공감된 내용이자, 지난 2015년 사회적경제주간에 서울시 사회적경제 4대 부문협의체가 공동실천을 결의하였던 내용의 실재화를 촉구하는 내용임

서울시 사회적경제 4대 부문협의체 연대 결의 (2015.7.1 사회적경제한마당)

1. 우리는 사회적경제 각 부문에 대한 상호이해 및 연대의식을 강화하여 서울 사회적경제의 통합적 리더십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우리는 민간 인증제도 도입과 사회적경제 윤리강령 제정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사회적 가치 창출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3. 우리는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담은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대표적인 상품을 발굴, 집중 육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4. 우리는 연대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경제 상호간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상호거래의 실질적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적극 협력한다.
5. 우리는 공공과 협력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공공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제도개선 및 인식개선 등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6. 우리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성장을 위한 안정적인 금융지원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자금조성 촉진을 위해 노력한다.
7. 우리는 서울시 뿐만 아니라 자치구 및 생활공간으로서의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8. 우리는 지속적인 일자리의 창출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9. 우리는 개별 사회적경제 기업의 소비자를 연결하여 사회의 변화와 사회적경제에 적극적인 새로운 윤리적 소비자 그룹을 조직하기 위해 노력한다.
10. 우리는 사회의 최우선 가치로서 시민의 물리적/사회적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동시에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사회구성원과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을 결의한다.

1

서울 사회적경제 자조기금 조성

- 사회적금융의 운용방식은 보조금(grant), 부채(debt), 인내자본(patient capital), 준지분(quasi equity), 지분(equity) 등으로 다양함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은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금융으로서 의의가 크나, ‘민관 매칭도에 따른 시예산의 전입형태로 재원조달의 불안정성이 존재’하고 ‘구성된 기금의 운용에서도 용자 중심으로 투자에 제한적’이라는 제도적 불합리성이 존재하여 계속 개선중임

- 서울시의 사회적경제 재정 지원금(grant)은 연평균 350억원 규모인데, 이중 40%는 개별기업 직접지원(인건비, 사업비, 혁신형 사업비 등)이고, 26%는 자치구 생태계 지원(네트워크, 기초센터, 특구, 활성화사업, 클러스터 조성), 22%가 광역 지원센터 2개소의 운영비 및 협동화 지원사업비, 12%는 부서 집행사업(국제사업, SIB, 공정무역 등) 사업비임.
- 2012년 초, 서울시 사회적경제 민관 정책기획단에서 ‘공공의 마중물 지원효과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에서 매년 사업비를 현금 지원하는 비중을 차츰 줄이고, 전체 지원재정의 30% 이상을 민간의 공유자산 형성에 지원할 수 있도록 의회와 여론을 설득하자’고 협의했으나 현실화 하기 어려웠음.
- 현재 광진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례와 같이 사회적경제 및 지역조직들의 공유자산 확보 노력이 가시화되고, 사회주택 확대를 통한 커뮤니티 · 상가 공유화나 업종별 협업클러스터 조성 움직임도 확대 전망임

광진구 협동경제네트워크 시민자산화 사례

- 소재지: 광진구 증곡동 (지하1층, 지상4층)
- 매입비용: 36억원 (10억원 자기조달, 사투기금 2억원 등)
- 입주기관: 광진주민연대, 행복중심 광진생협, 주거복지센터, 더불어내과의원, 사회적기업 도우누리, 자활기업 카페 15개 단체 입주
- 임대료: 주변 시세의 40% 수준
- 효과
 - ‘지역돌봄 사회적경제 특구’ 사업을 추진중인 바, 지역자산화 공간을 거점으로 돌봄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하고 지역내 생애주기별 복합돌봄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며 지역혁신바우처 등 견인 구상
 - 매년 1~2개 지역자산화 추가 추진 결의함. 사회투자기금 통한 장기고액 용자 기대



- 반면 이러한 시민자산화를 도전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금융의 규모있는 장기저리의 투융자 자금운용은 미미한 상태임
- 문재인정부에서는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자금의 사회적경제 용자 할당제 도입, 임팩트 투자 확대와 더불어 도매기금으로서 민간 주도의 ‘사회가치연대기금’ 설립을 지원 중이나 기금의 조성 규모와 운영의 혁신성을 아직 구체적으로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에 공공의 사회적경제 자본조달 지원 방안들의 한계를 보완하며 사회적경제 내부의 상호부조성을 높일 자조기금의 조성 과 다양한 용도로의 기금운용을 제안함
 - 목적: 서울 소재 사회적경제의 협동과 연대의 실천력 쌓고, 자조적 안전망을 구축,

공공 주도형 사회적금융의 한계에 도전하여 리스크를 공유하고 확장 견인, 사회적경제의 업종별·지역별 자립 가능한 지원체계 기반 공동조성

- 기금 모집 제안 조직: 서울시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기금 조성 주체: 서울 소재 사회적경제 기업, 중간지원조직, 협의체 등
- 기금 조성 방식: 서울소재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분담금 비상환 적립, 기부금, 정책자금 위탁운영
- 기금 운용 대상: 사회적경제 업종별 지역별 시민자산화 추진시 자부담분 공동투자, 사회적경제 조직 대표/직원 비보장/보충 사회보험(퇴직연금, 실업급여, 산재 사망급여 등), 사회적경제 업종별 사업연합 플랫폼 설치운영비 지원, 기타 출자자 총회 통해 승인된 사업

2 서울 시민공제조합 설립

○ 해외 현황

- 서구는 19세기 중반부터 공제조합상호보험회사 등을 바탕으로 민간 중심 사회적금융이 발전하면서 제3섹터 성장의 기반 마련
- 2007년 이후 세계 보험시장이 13% 성장할 때 공제조합과 상호보험회사는 31%의 성장률 기록(고용직원 110만명 이상, 수혜자수 9억2천만명)하며 사회적 효과를 입증

프랑스 사회적금융을 대표하는 공제조합/상호보험회사

- 19세기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자들이 공제조합을 개설, 손해보험·의료보험 등 여러 분야로 발전
- 상호보험회사의 경우 2008년 세계금융위기에서도 중장기적 시각을 갖고 대응. 현재 자동차 및 주택 보험시장의 50% 점유, 손해보험 분야에서 약 180억유로의 매출달성, 조합원수 2,600만명('14년 말)
- 상호보험회사의 성장 비결은 주주이익 실현이 아닌 조합원 중심의 지배구조, 보험중개인이 없는 직접 판매방식 등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많은 보장**을 해주기 때문. 또한 재정적자로 사회보장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면서도 디지털기술을 활용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구 고령화에 따른 신규 수요에 부응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발함으로써** 입지 강화

○ 국내 현황

- 현재까지 사회적기업공제기금(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누계액 40억원), 사회혁신기금(사회혁신금융), 자활공제(전국주민협동연합회), 서울시협동조합 협동기금(서울협동조합협의회), 동행(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 조성, 운영중임
- 사회적기업공제기금은 인증 및 예비 사회적기업 중심으로 전국 160여개 기업이 참여해 연간 10억원 정도를 저축성으로 납입한 후 불입액의 3배 범위로 긴급유자를 실시함. 사회혁신금융도 사회적기업 공제조합원들이 중복 참여하나 규모가 작음. 자활공제의 역사가 가장 오래되었고 자활기업의 조직수요 보다는 종사자 긴급의료비 용자 등 인적공제 성격임

- 상기한 공제사업들의 성장이 매우 고무적이거나 몇 가지 한계를 얘기하자면,
 - i) 부문간 공제기금 조성 기여 역량과 기금 수요에 편차가 존재하나, 분절적인 조성
과 운영 중이며, ii)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등 최근 협동조합으로 조직화 수요가 높
은 비조직 노동자들을 포괄하지 못하고, iii) 핵심기능이 기업 대상의 용자사업 중심이
어서 조직 구성원에 대한 보호기능이 미약하고, iv) 공제기금으로서 용자사업 결손발
생 등 리스크 관리에 대한 조합원 공동책임이 부족하며, v) 사회적경제 및 소셜벤처,
비영리 창업체들의 잠재수요를 고려한 보험·보증 상품 다각화를 다루지 못하고 있음
 - ※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소셜벤처의 경우 '기업운영실패=대표자 인생실패=종사자 고용불안
정'이라는 리스크가 발생하므로 사업몰입과 재기기반이 될 펀드 조성 필요

○ 이에 제3섹터 조직의 지속가능한 사업 기반 마련 및 종사자들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공제기금 활성화·다각화·통합 운용 모델 필요



**‘(가칭)범제3섹터 시민공제조합’의 설립을 통해 기업/단체와 개인 보험 수요 해
결, 사회안전망 보완재 역할, 영세 공제조합간 연계·협력을 통한 규모화, 공제
사업의 다각화 등을 도모함으로써 민간 자조금융 성장 기반 마련**

○ 추진방향

- 민간 주도 전문 공제조합 설립을 통한 자조적인 노력 지원
 - .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선순환 및 자립 가능한 구조를
통해 범제3섹터 기업/단체 비용(이행지급 보증 등)과 창업가의 사회안전망 확충
 - . 제3섹터 종사자 및 플랫폼노동자 등의 노동취약층(대리운전자, IT기술자, 봉제인 등)
등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개인공제 시행
- 공제조합 설립 및 운영의 공공성과 안정성 및 지속성 확보
 - . 「(가칭)범제3섹터 공제조합」 설립 및 지원 조례 제정 등 제반 법·제도적 여건 마
련을 통해 초기 인프라 구축 및 운영비 등 재정 지원 근거 확보
 - ※ **참고:**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는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설립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
설치·운영, 사단법인 강원도 일자리공제조합은 ‘강원도 일자리공제조합 설립 및 지
원조례’를 통해 정책성공제 연동해 설치
 - . 소셜벤처 지원사업, 사회적경제 고용안정기금사업 등 신규 정책사업 설계 및 사업 위
수탁을 통해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지원방안 모색
- 가입 대상 : 기업·단체(사회적경제 조직/비영리민간단체/소셜벤처 등) 및 개인(종사자/
프리랜서 등)

<서울시 범 제3섹터 시민공제조합 대상 예시>

구분	사회적경제 기업	비영리민간단체	소셜벤처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기업수	3,512개	2,098개	250개	-
종사자수	19,769명	16,000명	3,000명	70,000명
목표	2022년 조합원 2,000개 기업/단체, 종사자 5만 명			

* 출처: 사회적경제 기업('17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성과보고서) / 소셜벤처(성동구청 및 중소기업벤처부) / 비영리민간단체('17 한국 비영리민간단체 기초통계조사), 프리랜서('18 서울시 프리랜서 실태조사)

- 주요 사업

. 공제상품 개발 및 판매 : 단체형 · 개인형 맞춤형 상품 개발·운영

※ 공제의 종류: 보험형 공제(보험과 유사한 역할), 상호부조형 공제(특정 산업별로 종사자들이 복지나 퇴직금 등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 정책성 공제(노란우산공제회 등)

. 서울시 조달 및 민간위탁시 이행보증보험

. 퇴직연금, 실업보험 등 공제적립금 확대 사업

. 상해, 재해 등 회원대상 복지사업 등

- 운영 재원 : 공제 운영 수익금, 회원 출자금/조합비, 보조금

. 기업 출자금 및 조합비 :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된 수익/급여 총액 등 기준에 근거해 비율제/등급제 등에 따른 기업/단체 및 종사자의 분담금 납부

. 이행보증보험 가입비 : 사회적경제 이행보증보험료는 연간 약 5.6억 원 추정

※ 우리은행·서울보증보험이 독점 취급하나 건설공제·전기공제 등 약 30개 공제조합이 독자 상품 취급 중

. 정책자금 연계 : 사회적경제 정책지원금, '사회가치연대기금'과 연계 등 운용 다각화

현장보고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중간점검, 현장이 말한다

- 안인숙 집행위원장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중간점검, 현장이 말하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안인숙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의 수립경과 및 주요 정책 현황

- [사회적경제 정책제안]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2017.4
- [더불어민주당, (구)바른정당, 정의당] 사회적경제 정책협약 2017.4
-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 관계부처합동 2017.10
- [사회적금융 활성화방안] 관계부처합동 2018.2
- [사회적경제 인재양성방안] 관계부처 합동 2018.6
- 이외 2018년 6월까지 수립, 추진된 정부 각 부처/정부기관의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시책 추진현황 (2018년 6월 말까지의 추진현황)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의 중간 점검평가계획(안) _ 반영평가

반영평가 (정성/정량평가)

목적

- 2017년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제안한 사회적경제 정책제안은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에 어떻게, 얼마나 반영되었는가?
- 당초 민간의 의도와 구상, 제안이 충실하게 반영되었는가?

방법

- 연대회의 정책제안을 기초로 정책제안의 반영여부 및 반영정도를 평가
- 반영여부에 대한 평가와 함께 연대회의 정책제안의 의도, 구상이 반영되었는지를 점검/평가
- 연대회의 정책위원으로 평가작업반(3~4인)을 구성하여 1차 평가작업 진행 (7~8월)
- 연대회의 회원단체에 회람하여 1차 평가 보완 (8월~9월)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의 중간 점검평가계획(안) _ 이행평가

이행평가 (정성/정량평가)

목적

- 2017년 10월 발표된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 및 후속 정책의 방향 및 세부 과제별 이행수준은 어떠한가?
- 이행이 안되었거나 지연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의 문제인가? 국회의 문제인가? 민간의 문제인가?

방법

- 국회와 협력하여 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 : 활성화방안에 따른 부처별 이행계획 및 추진결과
- 연대회의 정책위원으로 평가작업반(3~4인)을 구성하여 1차 팩트 중심 (정량)평가 후 정성적 진단평가 및 제안/과제 작성 (7~8월)
- 연대회의 회원단체에 회람하여 1차 평가 보완 (8월~9월)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의 중간 점검평가계획(안) _ 당사자 평가

당사자평가 (설문조사 + 평가집담회)

목적

-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정책의 적합성에 대한 현장의 평가는 어떠한가? 활성화정책은 현장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인식되고 있는가?
- 현장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촉진, 이끌어내고 있는가? 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는가? 성과와 한계, 과제는 무엇인가?
- 새로운 정치, 정책환경에서 사회적경제 당사자, 민간의 도전, 성과, 한계, 과제는 무엇인가?

방법

- 지역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정책위원회가 지원
- 설문조사 및 평가집담회(워크숍)를 통해 정량/정성적 평가 진행
- 당사자 조직 및 지역 중간지원기관 등 지역별로 평가단 구성 : 총 인원 500명 규모
- 설문지(초안) 작성 후 30케이스 파일럿 조사 후 수정보완 및 확정 후 본 조사 진행 (8월)
- 분석/보고서 작성 및 연대회의 회원단체/평가단에 조사결과 회람하여 수정보완 (9월)
- 비교 : 지역별 평가집담회(워크숍) 개최에 대한 지원방안(예산) 강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의 중간 점검평가계획(안) _ 전문가 평가

전문가평가 (설문조사)

목적

-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의 방향과 구체내용 및 집행과정과 정책효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방법

- 전국의 사회적경제 유관 연구자, 전공과정 개설대학 교수진, 교육자 등 최소 50명 이상 참여
- 사회적경제 분야 전문가 평가단 리스트업 및 전문가 평가를 위한 평가지(초안) 작성 (7월)
- 평가지 확정 후 전문가에게 발송 및 취합, 분석작업 진행 (8월)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의 중간 점검평가계획(안) _ 평가결과의 활용

평가결과의 활용방안

- 평가결과를 종합한 보고서는 정부 및 국회 등에 제출하고
-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의 보완 및 추가과제의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

이를 통해

- 정부 사회적경제 정책의 기조와 세부 정책의 보완사항에 대한 민간의 의견을 제출하여 정책의 적합성을 제고하도록 함.
- 향후 사회적경제 정책추진에 있어서의 우선과제에 대한 민간의 의견을 제출하여 정부, 국회와의 협력 강화에 활용하도록 함.
- 향후 사회적경제 정책의 형성과 수립과정에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관의 공동정책 생산체계의 강화에 활용하도록 함.

아울러

- 정부정책의 점검, 평가에만 그치지 않고 **사회적경제 당사자의 도전, 성과, 한계, 해결과제를 진단, 도출하여 새로운 정치, 정책환경에서 사회적경제 민간 당사자의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한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함. (당사자 설문조사 및 집담회의 주요 의제로 채택하여 진행)

1. 추진 과정

- ① 연대회의 정책위원회 가동 : 7월~
- ② 설문조사 및 지역 집담회 : 8월 28일~ 9월
- ③ 추가 설문조사 예정 중

2. 설문작업 중간 보고

1) 참여자

		%
시 도	서울	1
	대구	9
	광주	12
	경기	1
	충북	1
	충남	20
	전북	14
	전남	35
	경남	4
	제주	2
	합계	100
응 답 자 특 성	사회적경제 조직(1차 조직)	39
	사회적경제 연합회/네트워크 (2차 또는 3차 조직)	12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권역별지원기관, 광역/기초 지원센터)	40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기관 및 유관 지원조직등	3
	무응답	5
	합계	100

2) 정책 일반 (10점 척도)

정책일반	정책일반 전체	6.32
	정책에 대한 공감 정도	7.39
	정책의 구체성 정도	6.09
	정책의 실제 효과성	5.48
사회적경제 역량	사회적경제 역량 전체	5.32
	현장의 정책역량	5.20
	현장의 사업기획역량	5.53
	현장의 연대와 협업역량	5.23

3) 정책별 중요도

① 분야 통합

분야	우선순위 비중(%)
통합 지원체계 구축 (2개 과제)	43
금융접근성 제고 (13개 과제)	5
판로확대 지원 (12개 과제)	28
인력양성 체계 강화 (19개 과제)	24

② 분야별

	중요도	체감도(7점 척도)
금융접근성제고	2.82	4.37
소셜벤처분야	2.77	4.55
프랜차이즈분야	2.72	4.92
인력양성체계강화	2.68	4.32
지역기반연계분야	2.68	4.51
주거환경분야	2.66	4.45
판로확대지원	2.61	4.27
사회서비스분야	2.6	4.45
문화예술분야	2.55	4.47
통합지원체계	2.41	4.12

※ 중요도 : 1에 가까울수록 중요함

3. 최종 보고를 앞두고

1) 사회적경제, 무엇을 할 때인가?

○ 한국사회의 변화를 만드는 대안적 실천이 필요한 때

경제적 격차 확대(지역불균형 발전, 세대간 격차, 빈곤의 여성화 등), 사회 안전망 약화(고독사, 관계 단절), 시민의 정치참여 시스템 부재, 고령화와 돌봄 서비

스 부족, 에너지 빈곤 등

- 자생적으로 생겨나 성장해 온 사회적경제, 공정경제 민간 부문 정책에 초대된 이상 대안 세력으로서의 사명을 사회적으로 선언할 때

2) 어디까지 왔나? 진단과 전망

- 자생적으로 생겨났으나, 제도적으로 관리되는 사회적경제
- 관리되는 민주주의와 패를 같이 함. 사회혁신도 정부가 판을 벌이는 형편임을 직시해야 함.
- 정부의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우리의 자원은 공유된 적 없음.
- 사회적경제의 연대와 사회적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지 않는 그간의 법체계와 정책. 공유하고 연대하는 경험이 부족했고 연대경제로서의 정체성은 발현되기 전.
- 인프라 조성, 성장단계별 지원, 진출 분야 확대를 위한 정책 시행 중이지만, 한국 사회의 경제패러다임과 시스템 변화라는 차원에서의 급진적 기획은 상상되지 못함.

3) 정책으로서의 사회적경제

- 제도, 제도의 규정이 현장의 필요와 상상력을 제한하고 있음
- 발언권,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정책 제안하는 거버넌스 구조 허약
- 주체, 현장의 필요와 필요가 조직되는 방식을 주장하고 실현할 주체의 조직화 요청됨.
- 전략, 부문과 지역의 실천이 향하는 그곳, 경제에 대한 개입의 타격 지점 불명확

4) 비전과 전망

- 대안을 요구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온라인/오프라인에 존재
- 대안 실천주체의 협력과 조직화를 통해 변화 에너지를 증폭시켜 갈 실험 요구됨.
- 노동의 사회연대, 시민사회의 확장전략과 만나는 접점은 어디에

5) 연대의 실험이 필요한 때

- 연대의 부재로 발생하는 비용

- **자원의 낭비**, 인재양성, 커뮤니티에 기반한 비즈니스 발굴이 지체되고, 규모화를 위한 전략적 집중이 요구됨.

6) 현장이 진단하는 정부정책

- 기대는 높고 체감은 멀고, 정부교체 2년 안에 만들어 내야할 최소한의 조치가 무엇일까
- **전환의 시나리오**, 사회와 경제 시스템의 패러다임 전환의 방향이 불분명함.
- **전환의 수단**, 공정경제로 이행하는 데에 있어 사회적경제의 쓰임은 부수적임
- **전달체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의 정책 실현이 지체되고 있음. 지자체의 의지와 이해 부족
- **하향식**, 정책의 설계와 실행과정에 있어서의 거버넌스 부재
- 민간 역량을 활용하기 위한 정책은 부재, 연대를 촉진하는 정책 부재
- **중간지원조직**, 행정의 필요가 아닌 현장의 필요를 해결하는 기능으로 전환해야
- **판로지원**, 실효성과 접근성 제고해야
- **인식개선**, 사회적경제의 사회적가치에 대한 대국민 인식 증진 필요

7) 현장이 현장에게

- 상호 존중과 이해의 부족
- 연대 전략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재
- **연대의 실험과 도전**, 할 수 있는 것부터

[참조]

2018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지역별 사회적경제 활성화정책 집담회 보고서

2018년 11월 중으로 종합 발표할 예정
(전문가 & 당사자 설문/ 집담회/ 정책 반영평가/ 정책 이행평가 포함)

지역별 정책 집담회는 8월 28일 전남을 시작으로 9월12일 광주까지 총 10차례¹⁾ 진행되었다. 권역 지원기관 및 연대회의 지역협의회가 자리를 마련하여 사회적경제 조직과 협의체 및 지원기관 종사자가 참여하여 중앙정부의 활성화 정책 전달 및 실행과정 에 대한 지역의 구체적인 상황을 수집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에 대해 현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과연 이전 정부와의 차이를 느끼고 있을까? 정책이 실행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그리고 당사자의 과제는 무엇일까? 를 중심으로 진행된 현장의 의견을 아래와 같이 종합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전반에 대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 표명에 대해선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발표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사회적경제를 단순히 일자리창출의 수단으로만 보던 관점의 변화를 느끼고 있다는 곳도 있었다.

다만, ① 문재인 정부가 어떤 전망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는지 경제정책 일반의 철학이 드러나지 않는다, ② 여전히 협의구조가 아닌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③ 진행되는 속도와 쏟아지는 양 때문에 70년대 경제개발 정책처럼 진행된다, ④ 통합기조를 지향한다고 하나, 분절적으로 사업이 기획되고 실행되고 있다, ⑤ 당사자들의 연대와 협동을 지원하는 정책은 드러나지 않는다는 공통적인 의견이 나왔다.

정부 경제정책 기조 내에서(예를 들면, 소득주도성장)사회적경제를 어떤 위치에 두고 있는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접목할 것인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획기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의문스러워했다. 사회적경제를 시장자본주의가 초래하는 불평등과 사회안전망을 보완하는 보조적 역할로 쓸 것인지, 공공성 확대를 위해 사적소유를 제한하는 등의 과감한 조치까지 나아가는 것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지가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

1) 8월28일 전남, 8월30일 대구, 9월3일 제주, 9월4일 부산, 9월7일 충남/경남, 9월11일 서울/충북, 9월12일 전북/광주 진행

정책 설계단계에서 민간의 참여가 미비한 상황에서, 많은 양의 정책 사업들이 빠르게 실행되고 있어 여전히 탑다운 방식, 개발 사업처럼 진행되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통합기조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나 부처간, 부문간 분절적으로 실행되고 있으며, 협의체나 네트워크 등을 육성하여 연대와 협동을 지원하는 정책이 부재한 것으로 보았다.

부처별 사업이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지역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가기 위해서는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데, 지원기관이나 당사자 협의체가 참여 주체를 조직하고 실행 프로세스를 만들어 갈 시간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각 사업이 종합되고, 결과적으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역량이 강화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낼 민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정책이 보완되어야 하고, 이들에게 정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2.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과 지역의 시선

현장의 문제의식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중앙과의 격차를 들었다. 격차라는 표현은 다양한 의미로 설명되었다. 지역에서는 정책이 어떻게 설계되고 있는지, 어떤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인지, 어느 단위에서 추진되고 실행되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없다. 정책 홍보가 잘 되지 않고 있으며, 정보가 전달되는 통로가 구조화되어 있지 않다. 더불어, 사회적경제에 투입되는 예산의 규모 차이, 중앙에서의 결정이 수도권에서는 이미 실행되고 있으나 지방에서는 더디게 실행되는 시간 차이가 그것이다.

이런 격차로 인해 정책 파악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정책이 추진되니 따르라'는 식의 불합리함이 온다고 보았다. 정책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지역 단위 협의체, 네트워크 등이 참여하도록 조직하고, 정보가 공유되는 구조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이를 개선해야한다고 보았다. 또한 지방분권이 이뤄지고 지역 사회적경제 의제를 민간에서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보완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두 번째, 현장에서의 적용이다. 희망고문처럼, 발표된 내용은 기대감을 안겨주지만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발표된 실행 정책이 관련 법률이나 규제에 묶여 진행되지 못한다거나, 담당자의 인식 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한다거나 하는 상황이었다. 예를 들어 수익계약을 5천만 원으로 확대하였지만 담당자는 감사가 무서워 어렵다는 소리만 한다거나, 일자리창출사업 예산이 부족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다거나 하는 상황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었다.

또한, 지자체 장의 의지에 따라 정책기조의 변화가 심하다거나 담당자가 수시로 교체되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정부에서 발표된 정책이 타 지자체에서는 추진

되고 있으나, 우리 지자체에선 의지 부족으로 예산에서부터 책정되지 않아 아예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경우가 있었다. 사회적경제라는 것은 단기간에 드러나는 성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수시로 교체되는 바람에 매년 제자리에 머무는, 정책과제를 추진할 시간에 사회적경제가 무엇인지 재차 설명해야만 하는 소모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부처간, 부문간의 칸막이는 특히나 마을기업, 자활기업 영역에서 더 체감하고 있었다. 마을기업에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이 상당수 생소하다고 느꼈으며 실질적인 필요성 차원에서 동떨어져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자활기업에서는 사회적경제 타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식이 더 부족한 상황이라고 보며 복지영역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편입된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였다.

사회적경제 정책이 실행단계로 들어갈 때 충돌될 수 있는 관련 법률이나 규제가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 개정하고 치밀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되었다. 사회적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필수적으로 진행하여 실행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보았다.

세 번째,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다. 사회적경제 현장의 성장을 위해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대체로 동의하였다. 하지만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시스템(예산 부족)은 전문성 부족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또한, 사업내용이 단계적으로 당사자가 필요한 것이어야 하나 파편적이고 단편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현장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간지원조직의 성장할 수 있는 적정한 예산의 책정이 필요하며, (사업설계가 현장의 요구를 반영된 것이어야 하나) 중앙 정책의 행정적 전달 역할에 많은 부분 투여되고 있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다.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이며 그것에 맞춰 과업을 조정해야 하는 등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중간지원조직 역할 수행에 따른 지역의 기득권 유지 문제와 당사자 조직이 자기 역량을 강화하고 성장하기 위한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네 번째, 판로지원이다. 판로지원은 당사자 조직에게 가장 시급하고 당면한 문제이다. 공공구매를 확대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초기 진입 장벽이 높다고 느끼고 있었다. 초기 진입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컨소시엄을 맺기도 하지만 경험이 없는 한 기업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제외되는 현실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었다. 한 예로, 집수리 자활기

업들은 도시재생 사업이 발표될 때 기대가 컸다고 한다. 지역의 상황은 현장조직들이 가장 잘 알지만 영세하다고 배제되고 타 지역 기업이 들어와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지역마다 진행되는 판로지원 사업의 차이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도 하였다.

컨소시엄의 작은 성공 경험이 큰 성공 경험을 가져올 것을 기대하며 활성화 정책 중에 가능성 있는 분야를 우선 집중 진입시켜 본다거나, 시행령이나 조례를 통해 강제성을 부여한다거나 하는 안정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효과 있는 판로지원 사업은 전국 공통적으로 시행한다거나, 스타트업은 스타트업에 맞는, 인증기업은 인증기업에 맞는 단계별 공공시장 진출 전략을 마련하여 도와야한다고 보았다.

그 외 사회적경제조직은 경제적인 위험을 감수하고 다양한 시도를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시도를 위한 투자 개념의 지원이 필요하다, 구매로 이어지기 위한 시민 인식 개선 활동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조직의 비영리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다섯 번째,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이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법 제정은 필수적이며 빠른 제정을 요구했다. 시스템이나 제도를 통해 시민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3. 당사자가 당사자에 대해

대체로 상황을 돌아보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반복적인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피로감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왜 그럴까?

첫 번째,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우리 스스로 관계를 강화시켜 가야하는데 사업으로만 만나고 구속되어 일상적인 연대와 협력이 어렵다고 하였다. 조직 간의 경계를 허무는 방식이 작동해야 하는데 사업적 논의만 이뤄지다 보니 노하우를 공유한다거나, 문제를 드러내거나 인정하려 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협업의 이익이 있지만 협업 과정에 드는 추가 비용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비용에 대한 보상이 곧바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주저하게 된다. 협업을 촉진하고 보상하는 체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 정책 의존도가 높아져 동등한 거버넌스 구조가 되지 않다보니 정부가 주도성을 가져가고 그것이 다시 정책 의존도로 돌아오는 구조가 되었다는 것이다.

네 번째, 연대와 협력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연하다는 것이다.

무엇을 가지고 네트워크할 것인지 무엇을 교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진행하고, 아주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연대의 성공경험을 하나씩 발굴해내야

한다고 보았다. 정부정책이 아니라 지역을 말하는데 집중하면 연대의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경제에 새로 진입한 조직들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4. 그 외 과제에 대해

1. 사회적금융

금융 정책을 통해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사회적경제 성과가 드러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현재 자금의 장점(이자율 등), 신용보증기금이나 신협이 중요성이 지방에선 체감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인재양성을 위한 자조기금을 만들어 스스로 역량을 키우자는 의견도 있었다.

2. 사회적가치평가

사회적경제 조직이 창출하는 사회적가치에 대한 평가지표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나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 그리고 사회적금융의 용자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개발되고 있다. 외부 투자자들의 판단을 돕는 기준을 제공할 목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당사자 스스로 정의해 낼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경제의 내적원리에 기초한 가치 지표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사회적가치라는 것이 업종별, 유형별로 다양하게 드러나기 마련이니, 지표은행 방식으로 지표를 개발한다면 당사자들에게는 적용의 수월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3. 교육

지역별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역량은 분명 축적되어 가고 있다고 보며, 그것을 더욱 강화하는 방식이 필요한데 지역의 역량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거나, 인재양성과 관련한 자원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았다.

당사자 스스로 소셜미션을 정립하기 쉽지 않으니 본인들이 가진 가치를 드러내고 표현하도록 도와주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협동조합교육원 같은 국가차원의 교육기관이 필요하다, 민간 스스로 역량을 계발하고 인정받는 방법으로써 자격증 과정을 개설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4.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 공단과 사회적경제 영역이 어떻게 공생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어떻

게 사업을 유지해야 하는지 고민보다 어떻게 하면 사회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사회적경제가 지역 복지를 책임져야 한다고 보며 제한적인 바우처 이용자의 범위를 넓혀 이용자가 많아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5.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연대회의 역할과 비전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2018년 통합박람회에서 제출된 사회적경제 보고서에서는 사업을 중심으로 한 연대가 제안되었다. 만일 사업연합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 그 모델을 합의해내고 그 모델 자체가 성과지표가 되어야 하고 성과지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까지도 제안되어야 한다. 사업연합을 말하면서 프로세스는 제안하지 않고 당위적으로 진행한다면 견인력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치밀하고 정밀하게 로드맵을 꾸리고 실행력을 가져가야 한다고 보았다.

부록

- 2018 사회적경제 보고서 (대구 사회적경제 박람회 추진위원회)
- 2018 사회적경제 활동가 인재상 정립을 위한 설문조사

사회적경제 보고서

한국 사회적경제의 현주소와 과제
대구사회적경제통합박람회 민간추진위원회

- 보고서를 제출하기 까지
 - 5월 1일, 박람회 추진위원회에서 선언문을 작성하기로 결정
 - 6월 3일, 강현구 민간추진단장, 선언문의 근거 자료가 되는 보고서 작성을 신명호 사회투자지원재단 사회적경제연구센터 소장에게 의뢰함
 - 6월 8일 ~ 15일, 추진위원회 참여 조직에서 추천한 총 19명과 통합박람회 역사관 기획위원 2인에 대한 인터뷰 진행
 - 6월 30일, 보고서 초안 작성
 - 7월 14일, 수정작업을 거쳐 최종 제출

- 인터뷰 참여자
 - 오인숙 (한국자활기업협회 회장)
 - 박기홍 (한국자활기업협회 사무국장)
 - 이문수 (지역자활센터협회 사무총장)
 - 이병학 (중앙자활센터 원장)
 - 한희주 (경기마을기업협회 회장)
 - 방태형 (경기마을기업협회 이사)
 - 구영민 (경남마을기업협회 회장)
 - 민동세 (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 감사)
 - 이동현 (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 공동대표)
 - 심옥빈 (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 이사)
 - 송인창 (HBM 소장)
 - 주영덕 (전국협동조합협의회(준) 사무총장)
 - 최민경 (전국협동조합협의회(준) 사무처장)
 - 김정원 (사회적협동조합 너머 연구위원)
 - 김아영 (아이쿱조합원활동연합회 회장)
 - 김성기 (두레생협연합회 전무이사)
 - 윤형근 (한살림연합 상무이사)
 - 이현배 (성남주민신협 상임이사)
 - 문보경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운영위원)
 - 임종한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상임대표)

1. 사회적경제, 우리의 오래된 미래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 한국인의 삶에도 사회적경제가 있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이 생기기 수백 년 전에도 우리 생활 속에는 호혜와 협동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었다. 전통적 협동조직인 계(契)의 시원은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농촌 사람들은 농사일의 효율적 협업을 위해 농계와 두레를 조직했고, 자녀의 혼례를 치르거나 죽은 사람을 장사지내는 비용이 부담스러웠던 서민들은 혼상계(婚喪契)를 운영했다.

사회적경제는 사회의 원리로 경제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사상이며 또한 실천 활동이다. 사회의 원리란 함께 무리 짓고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인간이, 상생을 위해서 지켜온 가치들— 상대방에게 베풀기, 서로 돕고 협력하기, 약자를 보살피고 배려하기, 공정하게 분배하기 등 —이다. 이것은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숙명과도 같은 ‘함께 살기’를 위해서 결코 저버릴 수 없었던 필연의 규칙들이다. 그래서 어떤 경제사학자의 말처럼 이 같은 사회의 원리는 애초부터 인간의 디엔에이(DNA) 속에 깃들어 있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일찍이 한국인의 역사에서 사회적경제의 모습들이 발견되는 것은 별반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람들은 인생 어딘가에 잠복해 있는 위험과 위기를 더불어 이겨내기 위해서, 혹은 함께 당면하고 있는 목전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힘을 모으고 하잘 것 없는 자원이거나 각자 염출하였다.

이들이 어떤 문제 앞에서, 혹은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조직을 만들고 십시일반의 부조에 나섰던 것은 그것을 해결해줄 수 있는 이가 오직 같은 처지의 자신들 뿐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어떠한 법이나 제도도, 국가도, 시장도, 정치지도자도 그들의 문제에 관심 갖고 귀 기울이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스스로 단합해서 해결책을 궁리했다. 자조, 자립, 자발성의 원칙은 바로 이 같은 조건에서 유래한다.

혼자가 아닌 여럿이서 푼돈을 모아 자본을 마련했으므로 그것은 어떤 개인의 소유도 아닌 공동의 소유가 되는 게 마땅했다. 공동소유의 자본이니만큼 모든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해서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 또한 너무도 당연한 이치였다. 누군가가 돈을 많이 출자했다는 이유로 권력을 과점하려 들 때 그것을 경계하고 견제하는 것은 인 지상정이었다.

이렇듯 오늘날 사회적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운영의 핵심원리들은 매우 자연스럽게 자연발생적인 방식들이다. 특별한 누군가가 어렵사리 고안해서 남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해준 무엇이 아니었다. 차라리 민중들의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편이 더 정확하다.

그리하여 20세기가 저물 때까지 한국사회에는 미처 ‘사회적경제’라는 이름표는 달

지 않았으며, 사회적경제의 원리와 방식으로 추동되는 무수한 시도들이 있었다. 자연 재해를 딛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경제사업을 일으키려니 자금이 필요했고 그런 절실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 신용협동조합(신협)을 조직했다. 농업용품과 생필품의 저렴한 구매를 갈망하던 사람들은 소비조합을 만들었고, 그것은 다시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욕구, 생산자와의 상생이라는 가치와 만나 오늘날의 소비자생협으로 발전했다.

치료비가 부담스러워 병원 문턱을 넘을 수 없었던 서울 낙골의 산동네 주민들은 1976년, 「난곡희망의료협동조합」을 설립했다. 국민의료보험제도가 전국화되기 전까지 이 조합은 12년간 가난한 서민들의 건강을 지켰다.

재개발사업으로 살 곳을 잃게 된 서울 양평동의 철거민들은 경기도 시흥군으로 집단 이주해서 「복음자리」라는 공동체 마을을 일구었다. 이들은 수년에 걸쳐 건축비와 땅값을 주택조합에 상환하고 자기 소유의 집 한 채씩을 마련했다.

서울 하월곡동의 일용건축노동자들은 불규칙한 노동과 저임금에 지친 나머지 「건축일꾼 두레」라는 생산공동체를 결성했다. 일하는 이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운영하는 일종의 노동자소유기업이었다. 그게 1990년의 일이다.

한결같이, 이런 조직들의 근거가 되는 법이나 제도가 없던 시절이었다. 정부가 이런 조직을 정책적으로 육성·지원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시대였다. 하지만 이들에게 법이나 지원 제도가 없다는 사실은 하등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이들에게는 눈앞의 문제, 충족해야 할 필요가 무엇보다 절실했기 때문이고, 자신들 말고는 기댈 곳이 없음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원래 사회적경제의 본성이 그러하듯이 한국의 사회적경제를 낳은 것 역시, 정부의 법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절실한 필요와 갈망이었다. 인간답게 살려면 꼭 필요했던 것, 삶이 한 발짝 나아가기 위해 간절히 요구됐던 것— 현실이 그런 것들을 허용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스스로 나서서 자신을 돕고, 없던 길을 새로 만들어나갔다.

2. 왜 사회적경제인가?

왜 한국 정부는 2000년대에 들어 새삼 사회적경제에 눈을 돌리고 지원하는 법이며 제도를 만들었을까?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60여 년간 오로지 국가 주도의 경제 성장, 수출 증대 전략에만 매달려왔다. 고도성장의 시대에는 이 전략이 주효한 듯했으나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양상이 달라졌다. 경제성장률이 꺾이면서 저성장의 시대가

찾아왔고 장기실업과 고용불안이 일상화되었다. 여기에 저출산 . 고령화 현상이 겹치면서 국가 재정의 불균형은 더 심해졌다.

성장 전략의 낙수효과는 자취를 감추었고 처음에는 일시적 현상처럼 보였던 실업과 계층 양극화가 어느새 우리 사회에 단단히 뿌리를 틀었다. 만인이 정치적으로는 점점 더 평등해지는데 날이 갈수록 경제적으로는 더욱 불평등해지고 있었다.

또한 고도성장 시대의 부작용들이 사회문제로 등장했다. 환경파괴와 환경오염, 세계 최장시간의 노동, 지역공동체와 가족의 해체, 교육의 상업화, 자살률의 증가 등등은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설상가상의 요인이었다.

무엇보다 사람 사이의 관계 단절이 심각했다. 예전에 혈연이나 지연으로 유지되던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각자도생, 개별화의 경향이 만연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 들려오던 무연사회(無緣社會)에 대한 고민- 연고 없는 사람들의 고독사 문제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코앞에 다가왔다.

이러한 사회문제들의 등장은 결국 시장자본주의와 성장주의 발전전략이 마침내 한계에 도달했다는 징후였다. 실은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 민중들이 시도했던 수많은 사회적경제의 원형(原形)들도 성장주의 정책이 가하는 위협에 대한 나름의 대응이자 자기방어의 몸부림이었다.

점차 저성장과 저고용, 빈부격차와 고령화는 더 이상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 박정희식 근대화 전략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게 분명해졌다. 그리하여 유럽 국가들이 실업과 사회적 배제, 커뮤니티의 쇠락 등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던 끝에 사회적경제 부흥정책이라는 칼을 빼들었듯이, 한국 정부 역시 앞서의 문제들에 대한 해결 희망을 사회적경제에서 구하기 시작했다. 제도화의 시초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자활공동체(현재의 자활기업)의 육성을 명시한 것이었다.

이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의 관련법이 제정되고 마을기업과 농어촌공동체회사지원정책이 확대되면서, 성격이 비슷비슷한 모두를 묶어서 '사회적경제'로 통칭하는 관습이 생겼다. 유럽에서 사용하던 용어(Social Economy)를 들여와서 부처별로 관리하던 조직유형들을 한 바구니에 담기 시작했다.

그러나 앞서도 강조했거니와, 사회적경제는 단순히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의 합집합이 아니다. 정부 제도가 규정한 이들 조직유형을 포함하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훨씬 넓은 범주를 아우르는 것이다.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목표하고 사회적경제의 핵심원리를 따르는 모든 자발적 결사체를 일컫는 개념이어야 한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 교환 . 분배 . 소비하는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조직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실업과 빈곤과 양극화의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가? 정부 통계상 사회적경제기업의 종사자가 모두 36만여 명이라고 하니 그 수만큼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내려갔다거나 실업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실업이나 빈곤의 규모는 거시적 경제·사회 구조의 변동에 의해서, 복합적 요인들의 작용으로 결정되므로, 작은 규모로 아주 천천히 생성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일자리가 그 모든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믿기는 어렵다. 사회적경제를 오래 연구해온 학자들 가운데도 “사회적경제 조직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간접적인 것이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편적 정책수단은 아니”¹⁾라거나 “사회적경제가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그것의 임무가 실업이나 그 밖의 시장경제의 실패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²⁾라고 지적하는 이들이 있다.

하지만 위의 주장이 사회적경제 정책의 가치나 잠재력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사회적경제 정책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대안적 이념인 사회적경제를 단지 고용정책의 수단으로 도구화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이다.

여기서 하나의 국가 정책이 어떤 문제의 해결을 지향하고 목표한다는 것(담론의 차원)과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효능을 갖는다는 것(과학적 사실의 차원)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정부의 정책결정자가 이 두 가지 차원을 혼동하게 되면 사회적경제의 진정한 의미와 가능성을 간과한 채, ‘몇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는지, 소득을 얼마나 끌어올렸는지’만으로 모든 걸 평가함으로써 사회적경제를 수단화해버리는 우를 범하기 쉽다.

사회적경제는 우리 사회의 운영 원리를 경쟁과 승자독식의 자본주의로부터 새로운 패러다임—공생과 호혜 및 협동의 가치체계—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사상이고, 동시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활동이다. 달리 말하면, 자본이 아닌 인간을 중심에 두는 살림살이의 경제로 나아가겠다는 가치 지향이다. 그런 한에서 실업, 빈곤 및 불평등의 해소는 사회적경제가 신자유주의 너머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다른 정책들과 함께 부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결과 영역일 뿐이다. 아마도 공생의 관계 회복, 포용과 배려의 정신, 그리고 생활 속의 민주주의가 살아나지 않는 속에서는 설사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한들 현재의 우리 삶이 더 나아진다고 장담하기 어려우리라.

1) Westlund, Hans (2003), “Social Economy and Employment—the Case of Sweden”, *Review of Social Economy* LXI(2), p. 180.
 2) Laville, Jean-Louis (2003), “A New European Socioeconomic Perspective”, *Review of Social Economy* LXI(3), p. 389.

3. 사회적경제의 성과와 문제점

지난 10여 년 사이에 한국에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빠르게 늘어난 것은 분명 긍정적인 변화다. 당사자인 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적경제기업과 그들 간 네트워크의 숫자가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하면 괄목상대할 수준으로 증가했다. 필요를 가진 당사자들이 자립적으로 해결하고자 경제공동체를 만드는 움직임이 그만큼 확산됐다는 증거다.

또한 경제활동의 주체도 다양해졌다. 자활공동체 시절에는 주로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한정돼 있던 참여자들이 이제는 일반기업의 퇴직자나 청년, 주부 등으로 다채로워졌다. 무엇보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이 기업의 소유자 내지 경영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됐다. 단지 일거리를 찾아 사회적경제기업에 발을 들여놓았던 참여자들 가운데는 역량이 자라서 조직의 지도자로 성장한 사람들도 생겨났다.

민간 네트워크들이 조직되면서 지역 단위에서 민과 관이 함께 협의하는 회의체도 상설화되었다. 당사자 조직들의 네트워크 활동이 활발한 곳에서는 지자체가 그들의 존재를 의식하고 민관거버넌스 구성에 적극 나서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시민들의 인식도 변했다. 이제까지와는 다른 방식의 경제, 다른 방식의 삶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다. 작게나마 사회적경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정과 공감대가 자리 잡게 되었다. 또한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노동시장 진입 장벽이 조금 낮아지는 효과도 나타났다. 사회복지체계가 사회적경제를 통해서 혁신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한 사람들도 생겼다.

이런 변화들이 나타난 데는 법을 제정하고 지원제도를 운영해온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컸다. 국민 인식의 변화도 전국으로 뻗은 제도화의 경로를 타고 좀 더 수월하게 일어난 면이 있다. 사회적경제가 정부 국정과제의 하나로 다루어지면서 관련 정책들이 국민생활에 미친 파급 효과는 제도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했다.

물론 사회적경제기업을 꾸려가는 당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이 같은 성과를 낳은 1차 원동력이었음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절실한 필요를 해결하려는 본인들의 자구적(自救的) 열정이야말로 자동차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엔진의 힘과 같기 때문이다. 이상이 한국의 사회적경제 부문이 지금까지 이룩한 성과라면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나 어려움은 없을까?

첫째, 민간 당사자 조직들의 주체성이 약한 반면, 정부의 주도성이 너무 강하다는 문제가 있다. 앞에서 사회적경제의 저변이 단시간 내에 확대될 수 있었던 데는 지원

에 적극적이었던 정부의 공이 크다고 했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정부가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자주성을 약화시켰다는 비판도 가능케 한다. 여기서 ‘당사자 조직의 주체성이 약하다’는 문제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 가지 모습의 현상들로 나타나는데, 이를 테면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다.

- i) 당사자 조직들이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조건 없이 따른다. 사회적경제의 기본정신과 원칙에 입각해서 정부와 대화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순응하는 경향이 있다. 이때 정부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를 가리키는데, 대개는 민관협의기구의 감투와 돈(지원 예산)이라는 권력을 가진 정부관계자와 갈등을 빚지 않으려는 심리가 작용한 결과이다.
- ii) 당사자 조직들의 연합체 차원에서 필요한 법제와 정책을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판단해서 먼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늘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 원만히 실행되도록 협조하는 데 급급하다.
- iii) 개별 당사자 조직들은 시장에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혁신적으로 사고하며 새로운 전략을 고민하기보다는 정부 보조금 등에 의지해서 근근이 꾸려나가려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경제 차원의 큰 활로를 모색하기보다는 자기 조직의 경영에 매몰되어 각개약진 하는 성향을 보인다.
- iv) 사회적 가치, 창립 당시 설정했던 미션과 목적 등에 비추어 자기 기업이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서의 본분을 다 하고 있는지 성찰하지 않고 재무적 성과를 내는 데만 골몰한다. 사회적경제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망각한 채 비즈니스 조직으로서 생존하는 데만 힘쓰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진행 과정을 보면 우리나라 당사자 조직의 처지가 얼마나 허약한지가 단적으로 드러난다. 2013년, 19대 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들은 ‘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해야 하는가’에 관해서 한 번도 골똘히 생각해본 적이 없다. 제대로 고민해볼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정치인들은 기본법의 제정을 일찌감치 기정사실화 해놓고 있었다.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한결같이 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려놓고 자신들의 안(案)에서 혹시 빠진 내용이 없는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에 뒤늦게 물어왔다. 결국 기본법 제정에 대해 한 번도 ‘왜’라는 관점에서 생각해본 적 없

는 연대회의는 정치인들의 일정에 맞춰 ‘어떻게’를 채워나갈 수밖에 없었다. 당시 연대회의 임원들 입장에서는 ‘법 우선주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달리 대응할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법 제정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몇몇 연구자들이 ‘부처 간 칸막이 행정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통합지원관리를 하기 위함’이라는 명분을 이미 제공해놓고 있던 터였다. 당사자끼리의 충분한 숙의 과정이 없는 졸속함을 문제 삼거나 ‘법이 제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를 따지던 소수의 사람들은 점차 입을 다물었다. 좋은 취지를 일부러 외면한 채 반대를 위해 반대하는 사람으로 찍히기 십상인 분위기 때문이었다.

현장의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들 사이에는 ‘뭔지 몰라도 법이 제정되면 하나라도 좋아지는 게 있겠지’하는 기대와 ‘법이 만들어져도 우리에게 달라질 것은 하나 없다’는 냉소가 교차했다. 그래서 기본법 제정은 정치권력에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는 ‘절실한 필요’였지만, 현장 조직들은 아무도 그것이 ‘우리를 위한, 우리의 법’이라고 느끼지 않았다. 이렇게 제출된 법안은 여전히 국회의 정치판도 변화에 운명을 맡긴 채 속절없이 세월을 보내고 있다. 처음의 입법 취지조차 무망한 채로.

이것을 이탈리아 사회적협동조합법의 제정 과정과 비교해보면 주체성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탈리아의 사회운동가들은 1970년대 말부터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책임지는 협동조합의 새로운 법구조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확대된 공익성’을 담기 위해서는 다중이해관계자 구조의 새로운 협동조합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실제로 전국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해나갔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회적협동조합의 수가 1985년 전국 집회 때는 550개에 이르렀고, 이런 추세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에 앞서 사회적협동조합을 위한 제도들을 마련했다. 그리고 당사자 조직들의 줄기찬 요구에 의해서 정식으로 사회적협동조합법이 제정된 것은 1991년이였다.

정부와 당사자 조직 모두가 우리와는 사뭇 다른 태도로 다르게 행동했다. 그야말로 밑에서부터 위로, 철저히 상향식의 경로를 따랐다. 한 가지 서글픈 것은 이런 차이를 두고 우리나라의 일부 논자들이 ‘한국적 특수성’을 거론하면서 하향식 법제화를 당연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족: 혹여라도 이상의 논의가 기왕에 발의된 기본법 안조차 통과되면 안 된다는 뜻으로 오해되지 않기를 바란다)

현실이 이러하므로 (중앙 또는 지방) 정부와 민간의 당사자 조직이 대등한 위치에서 진정한 의미의 민관거버넌스를 이루지 못한다는 두 번째 문제가 대두된다. 형식적으로는 전국에 수십 개의 사회적경제 민관협의기구가 존재하지만 양자 간에 실질적 협의가 이루어지는 곳은 잘 찾아볼 수 없다. 요식행위처럼 이따금씩 회의가 개최되고, 그나마도 정부가 이미 확정된 계획을 알리고 협조를 구하거나 결과에 대한 정보

를 공유하는 차원의 회의가 대부분이다. 정부기관이 당사자 조직들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실행의 책임을 분담하는 식의 민관파트너십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기관 공무원들의 태도의 기저에는 민간부문 관계자를 함께 일을 도모하는 동반자라기보다 자신들이 주관하는 업무를 보조하는 자, 자신들이 기획한 것을 실행하는 자 정도로 여기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담당 공무원들에게서는, 예외적 일부를 제외하면, 사회적경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좀처럼 발견하기 어렵다.

사회적경제를 기존 정책의 도구로만 여기는 정부기관의 협소한 관점은 그들로 하여금 늘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게 만든다. 그들은 보다 민주적인 미래 사회를 향한 큰 그림 속에서의 종합적 평가보다는 당장의 가시적 성과, 전시효과에만 관심 있어 한다. 자연히 미래를 위한 장기적 투자는 일어나지 않는다.

세 번째로, 자기 성장과 혁신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당사자 조직들의 문제도 결코 가볍지 않다. 정부가 배분하는 자원을 쫓는 데 열심인 반면, 타성을 벗기 위한 자기 성장에는 소홀하다. 사회적경제의 핵심요소인 자발성과 자주성이 약한 조직들이 자주 발견되고 이에 대한 당사자들의 위기의식도 옅은 편이다. 제도화되기 이전에 있었던 성향—스스로를 돕고자 전심전력하는 태도의 중요성은 퇴색하는 분위기이고, 사회적경제 1세대 중에는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그리고 자기 조직에만 몰입하는 경향은 연대와 협동을 어렵게 한다. 실제로 사회적경제 조직들 사이의 연대와 협력이 잘 안 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자기조직 이기주의가 그 하나라면, 조직 간의 다름을 존중하거나 갈등을 원만하게 풀어본 경험이 없다는 것 또한 다른 이유다. 연대를 위한 그간의 모임들이 시간만 축내며 별 소득 없이 끝났다는 부정적인 기억도 협동의 기운을 떨어뜨리는 세 번째 이유다. 그래서 협동과 연대를 생명으로 여겨야 하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현실에서는 서로 힘과 뜻을 모으는 데 매우 소극적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의 발전 정도와 정책적 환경에서도 지역 간의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다. 지방이 침체되는 것을 막아야 할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또 한 번 자원의 접근성과 기회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의 생태계에서도 수도권 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4. 오래된 미래를 향한 우리의 과제

1) 정부는

사회적경제가 단지 일자리 정책의 한 수단이 아니라 인간관계가 복원되는 새로운

사회의 운영원리가 되어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에만 매달리지 말고, 미래사회에 대한 발전전략으로서 사회적경제의 장기적 비전과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와 민간의 당사자 조직이 대등한 동반자로서 실질적 의미의 협치가 일어날 수 있는 민관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겉치레에 불과한, 그리고 민간 참여자가 정부관계자의 보조자 내지 협력자에 머무는 작금의 구조는 개혁돼야 마땅하다. 만약 (청와대부터 지자체에 이르기까지) 사회적경제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모든 단위에서 민간의 의견과 실천의지가 충분히 반영된다면 지금의 많은 문제들이 풀리고 진척 속도도 빨라질 것이다.

정부 공무원들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깊어진다면 역시 많은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공무원에 대한 효과적인 사회적경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타율적이고 형식적인 집체교육은 교육 참여자의 인식 변화를 전혀 가져오지 못한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생각과 태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지속적이고 심도 깊은 교육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

사회적경제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인사 제도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순환근무제에 따른 잦은 인사이동으로 사회적경제 담당자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지속적으로 축적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지자체와 사회적경제기업들 간의 관계가 수년 씩 제자리에서 맴도는 경우들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관 제도나 개방직 공무원 채용제도의 적용을 고려해볼직하다.

2) 민간의 당사자 조직은

자신들의 힘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여기서 힘이란 자신의 도덕적 정당성에서 오는 권위와 조직의 세력이란 차원을 모두 포함한다. 오늘날 사회적경제의 기본정신과 철학을 잇고 관성에 젖어있는 조직들이 적잖게 생겨난다. 협동과 연대의 원칙은 아랑곳없이 영리기업처럼 행동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사회적경제의 근본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성찰과 자정(自淨)의 움직임이 절실히 필요하다. 자기 정체성을 상실한 조직은 도덕적 정당성을 갖기 어렵고 결국 정부와의 협상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성찰과 자정의 운동은 누군가가 다중을 향해 잣대를 들이대며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려는 방식이 아니라, 필요에 공감하는 당사자 그룹이 자발적으로 조용히 실천해나감으로써 눈덩이 커지듯 서서히 확산되는 운동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을 구체적인 실천지침-가령, 해야 할 것과 하

지 말아야 할 것 5가지—으로 정리하고, 이것을 공유하며, 이를 실천하는 조직들은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는 관계의 네트워크로 모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동의 실천지침들 가운데 하나로서 자기 조직의 사회적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해서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포함하는 것도 방법이다. 하나의 평가도구를 정해 놓고 그것을 이용해 자기 조직의 미션과 목적 등에 비추어 어떤 내용의 사회적 가치를 얼마만큼 산출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자기 의무화 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정부의 실천 과제는 민간이 아무리 말로 설득하고 촉구해도 그것만으로는 정부를 변화시킬 수 없다. 당사자 조직들이 실제로 힘을 갖고 힘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협력과 연대를 실천하는 관행을 만들어내야 한다.

첫째, 지역에서 유의미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성공적인 모델 혹은 사례를 사회적경제 조직들끼리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확산해야 한다. 성공사례를 발표하고 분석하는 워크숍은 연대의 당위성 때문에 목적의식적으로 조직돼온 종래의 회의체들에 비해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연대는 사업을 매개로 이루어져야 한다. 일정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키워야 한다. 이러한 사업 연합체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동종업체끼리 모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하나의 큰 사업(예컨대, 공공재정 사업)을 함께 수행하기 위해서 다양한 업종의 사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 같은 인접한 영역과의 협력사업 또한 적극 모색하고 개발함으로써 사업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 사업을 매개로 한 네트워크 역시 참여 기업들이 연대의 효용을 직접 체감하게 돼있으므로 비교적 안정적인 유지가 가능할 것이다.

셋째, 이상의 연대는 조직유형 간의 경계를 허무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사회적기업들끼리, 혹은 협동조합들끼리의 연대가 아니라, 조직유형이나 소관부처에 상관없이, 오로지 사업적 필요성에 의해서 결합되는 관계여야 한다. 물론, 같은 조직유형들의 협의체도 필요하긴 하지만, 협력의 대상을 사회적경제 조직 전체로 열어놓을 때 비즈니스 측면의 실질적 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지역에 사회적 금융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도 앞으로 민간에서 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정부가 계획 중인 전국 차원의 금융 전달체계만 바라보지 말고, 기존의 금융기관들 가운데 각 지역에서 사회적 금융의 중심 노릇을 할 곳을 찾아서 지역의 독자적인 자조기금 체계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3) 중간지원기관은

자기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원체계를 재편해야 한다. 정부 재정으로 운영되는 중간 지원기관들은 매우 다양한 종류의 업무를 이것저것 다 하고 있지만, 현장 조직의 실질적 필요와 요구에 얼마만큼 부응하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는 개선해야 할 여지가 많다.

중간지원기관의 기능 중에는 행정기관이 해도 좋을 직한 단순 업무부터 지자체 주관 행사의 대행 내지 보조에 이르기까지 당사자 조직들에 대한 실질적 도움과는 거리가 있는 잡다한 일들이 포함돼 있다. 컨설팅이나 네트워크 지원 같이 정작 사회적 경제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을 하기에는 구성원들의 수준이 기대에 못 미칠 뿐 아니라 많은 업무량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갖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역할에서의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하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당사자 조직들의 사업 네트워크 조직화를 지원하는 일이다. 사업 연합체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일은 당사자 조직들만의 역량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사업에 관련된 정보와 아이디어를 찾고 개발하는 데는 시간과 전문지식이 요구될 것이다. 또한 흩어져 있는 당사자 조직들을 모으고 연결하는 데도 신뢰의 관계를 구축해가는 지속적 접촉이 필요하다.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일터로서 중간지원기관이 다시 자리매김 되어야 할 것이다.

5. 맺으면서

외국에서 사회적경제라는 이름을 수입해오기 전부터 우리에게서 그것의 본질을 실행해온 전통이 있다. 우리는 그 전통이 지녔던 건강함을 거울삼아 현재의 우리 모습을 비쳐보아야 한다. 그 건강함의 문화 속에는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올바른 방침이 들어있다.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은 그간 소홀했던 협동과 연대의 원칙을 되살려내야 한다.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작은 협동들을 실천하면서 큰 연대의 경험을 쌓아올려야 한다. 그리하여 언젠가 민간부문의 연합체는 정부의 피동적 대화상대에 머물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고 요구하며 관리하고 배분하는 책임 있는 실체로 성장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협동조합 운동의 발원지 가운데 하나인 원주에서는 이런 제안이 들린다: 과거 시대에 혈연, 지연, 학연이 기능하던 자리에 이제는 협연(協緣)-협동으로 맺어진 인연-을 채워 넣으면 어떻겠느냐고. 불평등과 차별의 칼바람이 자꾸 거세지는 세상에서 인간답게 사는 길은 사람 관계의 끈을 열심히 이어서 민주주의의 집을 짓는 것일지도 모른다.

2018 사회적경제 활동가 인재상 정립을 위한 설문조사

<조사표 번호>

--	--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교육위원회는 하반기 사업으로 사회적경제 인재상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2018년 7월부터 '사회적경제 활동가 인재상 정립을 위한 "활동가 100인에게 묻다" 기초 설문 조사를 통해 아래와 같은 키워드가 도출되었습니다.

각 키워드 중 어느 것이 우선되어야 할까요? 보다 많은 활동가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 인재상을 수립해 가는 과정자체가 보다 근원적인 질문, 우리가 바라는 사회와 사람에 대한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사담당 :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교육위원회

이 메 일 : ksen121121@gmail.com

문 의 : 02-6715-9145

1. 사회적경제 활동가가 갖추어야할 '핵심가치'는 무엇입니까?(우선순위 5가지만 선택해주시오)

연대		협동		사람중심	
민주성		혁신		도전	
공동체		지역중심		존중	
사회정의		균형감		이타심	
공공성		상생		도덕성	
생태주의		창의성		사명	
호혜성		공유		책임감	
공정성		협치		주체성	
관계성		신뢰		미래지향	
자립		인내		포용	
공감		긍정성			

2. 사회적경제 활동가가 갖추어야할 '핵심역량'은 무엇입니까?(우선순위 5가지만 선택해주시오)

의사소통		네트워킹		통찰력	
학습능력		기획력		추진력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		정보 및 도구 활용		의제 발굴	
민주적 리더십		분석력		협상	
성찰		갈등관리		촉진	

